

제391회국회
(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조세소위원회)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1년11월17일(수)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262)
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465)
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116)
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690)
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797)
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850)
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401)
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04)
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60)
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661)
1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549)
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559)
1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300)
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074)
1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259)
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720)
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910)
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851)
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264)
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361)
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077)
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127)
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503)
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370)
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818)
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862)
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900)
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407)
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529)
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701)
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32)
3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402)
3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3038)

3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362)
3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402)
3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536)
3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677)
3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945)
3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807)
4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153)
4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519)
4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471)
4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588)
4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175)
4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390)
4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468)
4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748)
4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811)
4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893)
5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314)
5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393)
5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431)
5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62)
5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531)
55.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61)
56.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929)
5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287)
5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490)
5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396)
6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589)
6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163)
6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583)
6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369)
6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808)
6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826)
6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230)
6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396)
6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06)
69.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072)
70.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617)
71.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339)
72.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542)
73.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178)
74.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674)
75.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019)
76.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785)
77.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408)

78.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294)
79.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470)
80.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410)
81.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662)
82.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405)
83.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536)
84.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386)
85.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395)
86.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074)
87.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404)
88.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571)
8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398)
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073)
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091)
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197)
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460)
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385)
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1480)
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011)
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025)
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669)
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869)
1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457)
1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537)
1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877)
1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3927)
1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726)
1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325)
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452)
1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631)
1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900)
1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752)
1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900)
1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837)
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911)
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028)
1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148)
1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150)
1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193)
1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243)
1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427)
1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537)
1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544)
1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552)

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594)
1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599)
1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653)
1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881)
1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992)
1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023)
1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071)
1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167)
1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245)
1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301)
1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362)
1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405)
1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449)
1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468)
1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503)
1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505)
1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509)
1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584)
1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637)
1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652)
1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675)
1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725)
1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794)
1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941)
1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960)
1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036)
1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084)
1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111)
1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133)
1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141)
1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174)
1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178)
1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219)
1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393)
1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409)
1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435)
1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487)
1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683)
1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750)
1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797)
1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910)
1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973)
1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077)
1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139)

1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376)
1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378)
1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546)
1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565)
1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700)
1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729)
1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772)
1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825)
1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827)
1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829)
1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882)
1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901)
1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905)
1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030)
1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031)
1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101)
1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124)
1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145)
1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281)
1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339)
1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385)
1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406)
1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517)
1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532)
1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538)
1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561)
1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598)
1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599)
1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605)
1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636)
1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648)
1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694)
1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715)
1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729)
2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755)
2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759)
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766)
2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773)
2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776)
2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09)
2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21)
2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47)
2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50)
2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55)

2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64)
2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79)
2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87)
2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95)
2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932)
2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944)
2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946)
2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965)
2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3060)
21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449)
22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124)
22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344)
22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177)
22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352)
22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535)
22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056)
22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409)
22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66)
228.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371)
229.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399)
230.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852)
231.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943)
232.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394)
233.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83)
234.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824)
235. 청년세법안(의안번호 2108287)
236. 탄소세법안(의안번호 2108732)
237.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2411)

상정된 안건

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62) 12
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65) 12
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16) 12
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90) 12
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97) 12
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50) 12
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401) 12
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04) 12
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60) 12
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연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61) 12
1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549) 12
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59) 12
1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00) 12
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74) 12

1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59)	12
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20)	12
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10)	12
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51)	12
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64)	12
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61)	12
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77)	12
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27)	12
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03)	12
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70)	12
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18)	12
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62)	12
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00)	12
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407)	12
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29)	12
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01)	12
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32)	12
3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402)	12
3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38)	12
3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362)	12
3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02)	12
3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36)	12
3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677)	13
3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945)	13
3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07)	13
4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53)	13
4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19)	13
4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71)	13
4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88)	13
4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75)	13
4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90)	13
4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68)	13
4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48)	13
4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11)	13
4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93)	13
5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14)	13
5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393)	13
5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31)	13
5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62)	13
5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31)	13
55.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61)	13
56.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29)	13
5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287)	13
5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490)	13

5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96)	13
6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89)	13
6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63)	13
6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83)	13
6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69)	13
6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08)	13
6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26)	13
6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30)	13
6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396)	13
6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06)	13
69.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072)	13
70.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17)	13
71.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39)	13
72.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42)	13
73.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78)	13
74.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74)	13
75.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19)	13
76.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85)	13
77.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408)	13
78.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294)	13
79.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전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70)	13
80.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410)	13
81.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62)	13
82.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405)	14
83.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36)	14
84.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86)	14
85.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395)	14
86.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74)	14
87.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404)	14
88.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71)	14
8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398)	14
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073)	14
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091)	14
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197)	14
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60)	14
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85)	14
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480)	14
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011)	14
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025)	14
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669)	14
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869)	14
1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457)	14
1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537)	14
1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77)	14

1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927)	14
1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26)	14
1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25)	14
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52)	14
1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31)	14
1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00)	14
1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52)	14
1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00)	14
1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37)	14
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11)	14
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28)	14
1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48)	14
1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50)	14
1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93)	14
1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43)	14
1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27)	14
1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37)	14
1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44)	14
1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52)	14
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94)	14
1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99)	14
1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53)	14
1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81)	14
1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92)	14
1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23)	15
1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71)	15
1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67)	15
1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45)	15
1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01)	15
1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62)	15
1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05)	15
1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49)	15
1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68)	15
1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03)	15
1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05)	15
1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09)	15
1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84)	15
1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37)	15
1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52)	15
1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75)	15
1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25)	15
1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94)	15
1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41)	15
1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60)	15

1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36)	15
1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84)	15
1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11)	15
1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33)	15
1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41)	15
1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74)	15
1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78)	15
1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19)	15
1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93)	15
1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09)	15
1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35)	15
1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87)	15
1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83)	15
1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50)	15
1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97)	15
1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10)	15
1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73)	15
1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77)	15
1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39)	15
1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76)	15
1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78)	15
1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46)	15
1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65)	15
1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00)	15
1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29)	15
1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72)	16
1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25)	16
1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27)	16
1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29)	16
1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82)	16
1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01)	16
1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05)	16
1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30)	16
1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31)	16
1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01)	16
1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24)	16
1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45)	16
1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81)	16
1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39)	16
1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85)	16
1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406)	16
1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17)	16
1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32)	16
1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38)	16

1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61)	16
1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98)	16
1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99)	16
1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05)	16
1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36)	16
1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48)	16
1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94)	16
1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15)	16
1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29)	16
2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55)	16
2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59)	16
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66)	16
2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73)	16
2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76)	16
2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09)	16
2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21)	16
2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47)	16
2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50)	16
2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55)	16
2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64)	16
2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79)	16
2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87)	16
2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95)	16
2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32)	16
2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44)	16
2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46)	16
2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65)	17
2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60)	17
21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49)	17
22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24)	17
22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44)	17
22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77)	17
22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52)	17
22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35)	17
22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56)	17
22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409)	17
22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66)	17
228.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71)	17
229.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399) ..	17
230.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52)	17
231.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43)	17
232.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394)	17
233.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83)	17

234.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24)	17
235. 청년세법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87)	17
236. 탄소세법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32)	17
237.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411)	17

(10시47분 개의)

○소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국회(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조세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62)
2.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65)
3.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16)
4.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90)
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97)
6.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50)
7.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401)
8.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04)
9.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60)
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661)
1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549)
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59)
1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00)
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74)
1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59)
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20)

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10)
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51)
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64)
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61)
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77)
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정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27)
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03)
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70)
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18)
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62)
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00)
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407)
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29)
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01)
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32)
3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402)
3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38)
3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362)
3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02)
3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536)

3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677)
3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945)
3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07)
4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53)
4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19)
4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71)
4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88)
4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75)
4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90)
4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68)
4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48)
4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11)
4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93)
5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14)
5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393)
5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431)
5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62)
54.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31)
55.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61)
56.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29)
5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287)
5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490)
5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96)
60.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89)
61.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63)
62.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83)
6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69)
64.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08)
65.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26)
66.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30)
67.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396)
68.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06)
69.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채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072)
70.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617)
71.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39)
72.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42)
73.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178)
74.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74)
75.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19)
76.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85)
77.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408)
78.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294)
79.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전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70)
80.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410)
81.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62)

82.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405)
83. 인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108536)
84.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86)
85.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395)
86. 국제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74)
87. 국제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404)
88.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71)
8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398)
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073)
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091)
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197)
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60)
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385)
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1480)
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011)
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025)
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669)
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869)
1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457)
1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537)
1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77)
1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927)
1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726)
1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25)
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52)
1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31)
1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900)
1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52)
1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동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900)
1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37)
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11)
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028)
1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48)
1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50)
1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93)
1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43)
1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27)
1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37)
1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44)
1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52)
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94)
1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99)
1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53)
1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81)
1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92)

1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23)
1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71)
1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67)
1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45)
1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01)
1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62)
1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05)
1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49)
1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468)
1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03)
1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05)
1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09)
1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84)
1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37)
1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52)
1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675)
1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25)
1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794)
1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41)
1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60)
1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36)
1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084)
1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11)
1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33)
1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41)
1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74)
1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78)
1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219)
1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93)
1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09)
1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35)
1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87)
1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주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83)
1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50)
1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97)
1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10)
1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73)
1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77)
1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39)
1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76)
1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찬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78)
1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해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46)
1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65)
1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00)
1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29)

1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72)
1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25)
1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27)
1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29)
1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82)
1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01)
1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05)
1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30)
1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31)
1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01)
1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24)
1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145)
1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281)
1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39)
1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385)
1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406)
1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17)
1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32)
1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38)
1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61)
1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98)
1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599)
1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05)
1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36)
1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48)
1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694)
1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15)
1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29)
2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55)
2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59)
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66)
2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73)
2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776)
2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09)
2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21)
2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47)
2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50)
2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55)
2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64)
2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79)
2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87)
2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95)
2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32)
2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44)
2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46)

2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965)
2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3060)
21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449)
22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124)
22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344)
22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177)
22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352)
22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35)
22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056)
22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409)
22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66)
228.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71)
229.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399)
230.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852)
231.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943)
232.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394)
233.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83)
234.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2824)
235. 청년세법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87)
236. 탄소세법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32)
237.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2411)

○소위원장 김영진 의사일정 제1항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37항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237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전차 회의에서 저희들이 논의를 했고요. 132페이지 11항부터 전문위원님께서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정부 측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호 전문위원께서 11항부터 순서대로 소위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걸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김영진 예.

○류성걸 위원 조세소위도 기획재정위원회의 소위고 그래서 법안 설명하시기 전에 초과세수 관련해서 차관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초과세수 관련해서는 현재 예결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국민적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고 또 정치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그런 부분인데요.

제가 예결위에서 장관께 얼마 정도 되느냐고 물었을 때 답변이 없어서 10조 정도 되느냐 하니까 그것보다는 조금 더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직후에도 기재부가 10조라고 사실상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이 발표하고 난 며칠 뒤에, 얼마 뒤에 19조라는 금액이 갑자기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본 위원이 그전부터, 지난 19대 때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세수 실명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할 정도로, 도대체 세수추계가 이렇게 널뛰기를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이 지금 의혹의 눈길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세소위에서 당연히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고,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 이게 전체가 다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 하고 또 세수추계에 조세 탄성치(elasticity) 관련해서 뭐를 기준으로 했는지 그리고 오늘이 11월 17일이기 때문에 실제로 앞으로 한 달 반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초과세수 관련해서 아직까지 이렇게 숫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정말로 기획재정부의 세수추계를 믿을 수 없다,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의 눈길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차관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차관님께서 간략하게 해 주

시고요.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도 정일영 위원님, 발언 한 분씩 하고 이 논의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조정소위가, 소소위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논의를 더 심도 있게 진행할 것 같습니다.

차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먼저 세수 예측을 정확하게 하지 못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다만 일각에서 말씀 주시는 의도적인 세수 과소추계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다는 점을 명료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일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고 이 논의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유경준 위원** 저도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제가 보기에는…… 한 분씩만 하겠습니다. 조세소위 때 한 분씩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유경준 위원** 아니, 질의를 왜 이렇게 못 하게 해요?

○**정일영 위원** 제 발언 순서니까……

○**소위원장 김영진** 한 분씩 하겠습니다.

○**유경준 위원** 저도 하겠습니다.

○**정일영 위원** 세수추계는 언론 통해서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요. 지난번 전체회의 또 국감 때도 얘기가 나왔는데 기재부에서 오히려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 기억에 언론에 10조 나오다가 19조인가로 또 바뀌었지요? 그래 가지고 이게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국민들 관심이 제일 많은 중요한 양도소득세 논의를 하는 자리에서 세수추계 가지고 오랫동안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는 않은 것 같고요.

차라리 이게 정말 문제가 된다면 여야 간사님들이 합의를 하셔서 전체회의를 한번 열어서 논의를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또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으니까 그때 집중적으로 하든지 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준 위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은 장내 정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준 위원** 아니, 질의 좀 하고 해요. 위원장 너무 하시네, 진짜.

○**소위원장 김영진** 행정실장님, 장내 정리…… 한 분씩 하기로 했잖아요.

○**유경준 위원** 질의하겠다는데 왜 못 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소위원장 김영진** 장내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준 위원** 아니, 질의하겠다는데 왜 못 하게 하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독단적으로 하지 마세요.

○**소위원장 김영진** 아니, 정확한 기회를 드렸잖아요.

○**유경준 위원** 아니, 추가질의하겠다는데 뭘 정확한 기회를 줘요?

○**소위원장 김영진** 법안소위 논의할 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경준 위원** 위원장이 왜 간단하게 논의하고 복잡하게 논의하고 그것을 혼자 다 정합니까? 추가질의가 있다는데.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 이것 제가 한 분씩 발언 기회를 드리고 진행을 했잖아요.

○**유경준 위원** 아니, 한 분이 하든 두 분이 하든 질의가 있어서 중요한 질의를 하겠다는데 그러세요?

○**소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제안설명하고서 그에 따라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회에서는 소위 자료를 설명해 주시고, 그에 따라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준 위원** 아니요, 질의하겠어요. 질의하게 해 줘요! 왜 질의를 못 하게 해요, 왜?

○**소위원장 김영진** 아니, 제안설명을 한 다음에 질의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유경준 위원** 공개 석상에서 질의하는 것을 왜 못 하게 해요, 질의하겠다는데.

○**소위원장 김영진** 아니, 법안소위의 안전이 아니지 않습니까.

○**유경준 위원** 안전이 아니라도 안전과 관계있는 것은 차관한테 질의할 수 있잖아요!

○**소위원장 김영진** 아니, 그래서 한 분씩 정확하게 기회를 줬기 때문에……

○**유경준 위원** 그러면 두 명씩 해요.

○**소위원장 김영진** 질의하고서 하세요.

○유경준 위원 질의할 사람이 있으면 해야지 왜 그렇게 막으세요?

○소위원장 김영진 아니요, 제안설명하고 질의를 해 주세요.

○유경준 위원 지금 할래요. 왜요?

○소위원장 김영진 형식과 절차에 맞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의 의견을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유경준 위원 자꾸 그렇게 독단적으로 하지 마세요.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게 해 줘요!

○소위원장 김영진 전문위원은 소위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준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게 해 주세요!

○고용진 위원 전체회의에서 하시거나 예결위에서 하세요. 지금 법안소위잖아요.

○소위원장 김영진 아니,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유경준 위원 지금 관계되는 얘기가 나와서 질의하겠다는데 왜 못 하게 하는 거예요?

○고용진 위원 문제 제기 서로 하셨으니까…… 이것 하다가 날 새요, 오늘.

○유경준 위원 뭘 날을 새요,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다는데.

○고용진 위원 오늘은 법안소위 때문에 저도 앉아 있고, 위원들이 다들 바쁜 것 아닙니까. 이것 언제 합니까?

○유경준 위원 시간 많아요, 아홉 번 중에 한번 했어요.

○고용진 위원 이 논의가 어디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아니, 류성걸 위원님 예결위 하고 계시잖아요.

○유경준 위원 아니, 질의를 못하게……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정말.

○소위원장 김영진 그러니까 위원님, 제안설명을 하고 그에 따라서 질의해 주세요.

○유경준 위원 질의를 하는 중에 질의를 하겠다는데 왜 못 하게 하는 거예요. 질의 좀 하게 해 줘요!

○소위원장 김영진 전문위원께서는 소위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준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독단적 운영 하지 마세요, 소위원장님.

○소위원장 김영진 아니, 유경준 위원님, 독단적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정확하게 잘 조정을 했지 않습니까.

○유경준 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어요? 내가 말하니까 한 명 한 명 하겠다고 했지.

○소위원장 김영진 아니, 류성걸 위원님 하였고, 정일영 위원님이 의사 표현했기 때문에……

○유경준 위원 아니, 추가로 하겠다는데…… 추가로 하겠다는 것 하고 민주당도 추가로 하겠다면 하면 되잖아요.

○소위원장 김영진 한 분 한 분 질문하기로 한 부분들을……

○유경준 위원 어제부터 자꾸 말을 자르고 독단적으로 운영해서 그래요!

○소위원장 김영진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의 발언이 독단적이세요.

○유경준 위원 발언하겠다는 게 뭐 독단적이에요?

○소위원장 김영진 아니, 제안설명을 하고 그에 따라서 발언을 하세요.

○유경준 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게 해 줘요. 왜 질의를 못 하게 해!

○소위원장 김영진 그렇게 제안했으니까 전문위원은 제안설명해 주세요.

○전문위원 정명호 자료 132페이지……

○유경준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게 해 주세요!

○소위원장 김영진 제안설명하고 질의하세요.

○전문위원 정명호 자료 13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단기보유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관련 강병원 의원안과 양경숙 의원안입니다.

133페이지 개정안의 주요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병원 의원안은 단기보유 부동산 등의 양도시 양도소득세율을 인상하는 한편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세율을 90%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양경숙 의원안은 단기보유 부동산 등의 양도시 양도소득세율을 인상하는 한편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을 인상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려는 것입니다.

134페이지는 현행 소득세법 내용입니다.

136페이지 이 부분은 지난 3월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과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137페이지는 지난 6월 임시회에서 대체토론한 내용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기보유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인상하려는 개정안은 토지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주택과 토지·비주택건물 사이의 세율 일관성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는 측면이 있고, 개정안이 입법화될 경우 인상된 양도소득세 세율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개정안 시행 이전에 단기보유 토지 등을 양도할 유인이 발생하여 이론적으로는 일시적·단기적인 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39페이지입니다.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첫째, 일부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투기적 토지거래의 기대수익 축소를 위하여 비주택 부동산 전체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 변경에 대해서는 신중한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개정안의 대상인 비주택 부동산은 토지뿐만 아니라 상가·공장 등 건물도 함께 세율을 올린다는 점, 양도소득세율 인상은 거래비용을 높여 매물잠김 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율 인상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관련입니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강화하여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주택과 토지 사이의 세율 일관성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는 측면이 있지만 일부 공공기관 임직원의 내부정보 활용을 통한 부동산 투기행위 예방을 위하여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세율 구조를 변경하는 것이 타당한지,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자산의 원본에 대해 과세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영되는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취지를 감안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세율을 90%로 인상하는 개정안은 양도소득세 부과를 통해 사실상 양도차익을 전액 환수하려는 것으로 과세표준의 양성화, 부동산 시장 안정 등 공익적 목적과 양도차익의 환수로 인한 재산권 제한 사이에 적절한 비교형량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 토론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주택은 이미 양도소득세율을 올렸고요. 이것은 1년이나 2년 단기보유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인상하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주택은 이미 단기보유 같은 경우는 중과하고 있는데 그 세율을 더 높였습니다. 1년 미만은 50%에서 70%, 2년 미만은 40%에서 60%로 올렸는데 토지도 이것에 맞게 세율을 단기보유 양도소득세를 올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주택과 마찬가지로 50%에서 70%, 그다음에 40%에서 60% 이렇게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보면 주택개발이라든지 택지개발 이런 과정에서 이미 여러 차례 토지 투기세력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했었고요. 앞으로 공급 확대 과정에서 택지개발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단기로 보유해서 투기 이런 것들을 의도를 갖고 하는 투기수요를 억제해서 시장의 안정, 예방 이런 차원에서는 필요성이 크다고 하겠고요.

그다음에 강병원 의원님께서 주신 안은 10%p 더 높은 80%인데 이것은 주택과의 형평성을 볼 때 저희들은 양경숙 의원안 70% 여기에 맞추는 게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준 위원 먼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예.

○유경준 위원 위원이 정당한 질의를 하겠다는데 소위원장께서 그렇게 독단적으로 막으시는지는 모르겠고.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다 공개회의인 줄 알았는데 ‘전후로 해서 비공개회의 때 발언을 하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 생각해 봤더니, 지금 이게 비공개회의입니까? 왜 소위가 비공개회의예요? 소위를 비공개회의로 한다고 언제 누가 결정했어요?

○소위원장 김영진 1차 회의에서 그 방침대로 기재위원회의 조세소위원회·경제재정소위원회는……

○유경준 위원 아니, 공개……

○소위원장 김영진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전체회의 협의에 따라서 초기에 스케치하고 논의가 시작되면 비공개를 원칙으로 쪽 회의를 진행해 왔기 때문에, 이번 회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회의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니다.

○**유경준 위원** 제가 알기에는 공개를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비공개로 한다는 걸 저는 오늘 지금 처음 알았습니다.

앞으로 공개회의로 전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시 우리 간사하고 양쪽 간사님이 합의하셨다면 전체를 공개회의로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이고요.

○**소위원장 김영진** 그러니까 뭐냐 하면 동일하게 전체적으로 다……

○**유경준 위원** 아니, 공개가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소위원장 김영진** 아니, 그러니까 발언이 다 공개됩니다.

○**유경준 위원** 발언이 공개되는 것하고 공개회의 하는 것하고는 다르지요.

○**소위원장 김영진** 속기록에 다 발언이 공개돼요.

○**유경준 위원** 그것하고는 다른 얘기이고……

○**소위원장 김영진** 그것은 위원님의 의견이지 않아요.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으시니까……

○**유경준 위원** 공개회의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간사끼리 다시 합의해서 가지고 공개회의가 원칙이니까 원칙대로 공개회의로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사님, 비공개회의로 한다고 이렇게 합의하셨어요, 언제?

○**류성걸 위원** 회의 방식에 관련해서 이제까지 ‘비공개’라고 표현한 것은 오늘 소위원장님이 처음 하셨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도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깐 시간을 가지자, 거기에 따라서 장내 정리만 했을 뿐이지 비공개라고 공식적으로 말씀하신 건 오늘 처음입니다.

다만 이제 이 회의가 언론인들도 포함해서 다른 외부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면 충분하게 논의가 안 되는 그런 차원에서의 장내 정리를 위한 것이지 비공개라고 합의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내용은 전부 다 속기가 되면서 바로 공개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유경준 위원** 공개 안 할 이유가 없고요. 공개가 원칙이고 필요시에 비공개로 합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합의가 안 됐으면 공개회의였기 때문에 지금 소위원장님께서 진행을 잘못하신 겁니다, 그러면.

○**소위원장 김영진** 김수홍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준 위원** 아니, 진행을 잘못하셨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 순서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준 위원** 아니, 진행을 잘못하신 것에 대해서 항의하고 있잖아요, 지금.

○**소위원장 김영진** 김수홍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홍 위원**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요 국회법에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데 그동안 국회가 소위 같은 경우는 관행적으로 전부 다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면서 하는 이유는, 저는 상대방의 말꼬리를 잡는다거나 중복 발언을 하려는 취지는 전혀 없습니다.

그동안의 관행은 혹시 위원님들이 자기의 의사를 표현한다든가 입장을 발표한다든가 주장을 할 때 공개했을 경우, 그랬을 경우 발언의 제약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자율적인 토론을 제약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많아서 그동안 소위는 전반적으로 비공개로 하되 속기록은 빨리 공개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게 국회의 전반적인 관행이라면 관행이고 그동안에 그렇게 내려왔던 하나의 상황입니다.

○**유경준 위원** 제가 아는 관행과 사실은……

○**김수홍 위원** 제가 말꼬리 잡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유경준 위원** 예.

○**소위원장 김영진** 상호 토론하지 마시고요. 말씀해 주십시오.

○**유경준 위원** 저도 말꼬리 잡으려고 한 게 아니고 공개가 원칙이고 필요시에 비공개로 합의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위원장께서 반대로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 우리 간사께서도 그런 합의를 한 적이 없다고 하는 것 보면 이것은 공개회의인 거예요, 출발이.

○**소위원장 김영진** 회의는 다 속기록에 돼서 바로바로 공개됩니다.

○**유경준 위원** 아니, 그것하고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자꾸 속기록……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취지를 그렇게 왜곡해서 말씀하시면, 위원회 진행을 유경준 위원님 말씀대로만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유경준 위원** 공개회의가 원칙이라고 얘기하는

데 뭐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개회의가 원칙인 것을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소위원장 김영진 왜냐하면 그동안에 소위에서 논의를 진행해 왔던 전례와 관행 그리고 긴밀한 논의를 위해서 진행해 왔던 것을 지금 유경준 위원님이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유경준 위원 그것은 비공개로 하는 것을 합의하고 했겠지요, 처음부터.

○소위원장 김영진 조금 더 숙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경준 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류성걸 위원 위원장님, 회의 진행 관련해서는 다시 이따 논의를 하도록 하고 또 아까……

○유경준 위원 정회하고 다시 합의하시지요, 그 부분은.

○류성걸 위원 유경준 위원님이 세수 관련된 사항 질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행을 하도록 하시고 오후부터 협의해서 하도록 합시다.

○소위원장 김영진 말씀해 주세요.

○유경준 위원 아까 질의하려고 했던 게, 이것 세수추계가 계속 틀리고 해 가지고 사과도 하시고 하는데 추계는 항상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도하게 틀리고 이게 중요한 시점에서 차이가 두 배가 나고 하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11월 중순경인데 기재부에서는 이것을 인지한 시점이, 이렇게 10조에서 19조로 인지한 시점이 언제이고 그것을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보고나 확인을 했고 그리고 세목별로 세수추계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추계라는 게 결국은 추계니까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상황 변동에 따라서 계속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저희들이 세수가 집계되는 부분도 있고 경제 상황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계속 보면서 그때그때 업데이트하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경준 위원 10조에서 19조로 바뀐 것을 인지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저희들이 10조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유경준 위원 10조라고 언론에 보도되고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말씀하고 19조라고 최근에 확인된 것이고.

그것을 인지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제가 알기로는 10조라고 딱 찍어서 말씀드린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경준 위원 그러면 올해 19조로 확인된 시점은 언제입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부총리께서 예결위 답변 과정에서 10조대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때는 10월 달이기 때문에 8월 세수 실적까지 저희가 보고 전망을 작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확실하지 않았던 상태고요.

저희가 9월 실적까지 집계를 국세청에서 받아가지고 한 게 지난주쯤 해 가지고 재전망을 해 보니 그런 정도 된다고 해서……

○유경준 위원 9월 시점으로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예, 9월 실적.

○유경준 위원 9월 시점으로 해서 봤을 때 19조 정도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예.

○유경준 위원 그런데 처음에 10조대라고 한 것은 사람들이 듣기에는 10조나 10조 초반으로 인지를 하기 때문에……

○류성걸 위원 10조대라고 한 적이 없어. 10조보다 조금 더라고 했지, 10조대라고 한 적이 없어.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아까 차관 말씀드렸다고 이제 전망이라서……

○유경준 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떤 절차를 통해서, 정부하고 당정 협의나 이런 것으로 언제 확인한 겁니까, 그 부분은? 대통령께 보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던데.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이번 주 월요일 날 당에서 설명 요청이 있어 가지고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경준 위원 그러면 종목별로 가장 큰 세수추계 차이가 나는 게 어느 쪽입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제가 정확히는 기억은 못 하는데……

○유경준 위원 이것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예, 알겠습니다.

○유경준 위원 오후 시작하기 전까지 확인시켜 주시면…… 가능하시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19조라고 확실하게 안 게 언제라고요? 기재부에서 파악한 게 언제라고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확정된 건 아니구요. 지난주에 다시 전망을 해 보니 그런 정도 나 온다라고 전망을 내부적으로 해 본 겁니다.

○**류성걸 위원** 차관님, 지금 여기 국정감사가 아니니까 증인으로서의 허위 또는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사항은 아닌데, 차관님 명확하게 하십시오. 속기록이 다 돼 있고, 제가 예결위에서 ‘초과세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라고 하는데 답변이 없어서 ‘10조 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깐 ‘그것보다 조금 더’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10조 원대’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고 난 뒤 그 직후에 또다시 외부에서 10조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보도 참고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조금 전에 세제실장 말씀은, 뭐 시점이 다를 수는 있겠지요. 5월 달 또는 9월 달, 10월 달 이렇게 하는데 제가 부총리께 여쭙어봤던 게 지난주 예결위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내 왔잖아요. 온 국민한테 전부 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참고자료를 다 뿌렸잖아요. 그래서 부총리가 저한테 답변했던 그 시점은 어느 시점으로 계산을 한 것이고 또 이렇게 냈던 근거는 어느 시점의 근거인지를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정치권에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국정조사까지 하자라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예요. 왜? 이것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하고 또 어떻게 보면 기재부를, 세제실을 못 믿겠다는 것하고 마찬가지로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관련되는 두 시점, 이삼일 차이밖에 없어요, 이렇게 낸 것은. 그 이삼일이 이렇게 ‘10조 원보다도 조금 더’에서 ‘19조’가 된 그 이유, 관련되는 세수추계 모형 그리고 세수추계 이렇게 했던 근거 자료 전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영 위원님.

○**정일영 위원** 아까 정부 측 의견이 보유기간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양경숙 의원님 70%,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은 60%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신다고 그랬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예.

○**정일영 위원** 비사업용 토지 기본세율 +20%p 하고 비사업용 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 제외, 이것은 의견이 어떠십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이것도 양경숙 의원에 동의합니다.

○**정일영 위원** 동의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예.

○**정일영 위원** 그런데 이게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고 그런데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 갑자기 20%p를 추가하는 게 이게 현실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주차장 관련되는 부속 토지 그런 경우도 이런 경우에 해당되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예, 이것은 10%p 더 올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보유세가 아니라 양도소득세이기 때문에 갖고 계시다가 1년, 2년 단기로 거래하지 마시고 오랫동안 갖고 계신 사 하는 거고.

그다음에 비사업용 토지를 주된 사업용 토지로 바꾸시면 이것과 다른 적용을 받기 때문이에요 비사업용을 주로 단기로 거래하시면서 토지 투기 목적 이런 걸로 하는 걸 배제하려는 것이지 원칙적으로 그런 걸 차단하거나 거기 보유하고 있는데 중과하거나 그런 것과 약간 다릅니다.

○**정일영 위원** 지난번의 LH 사태 그런 것처럼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내부정보 활용하고 그런 것하고 좀 연결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두 가지입니다. 말씀하신 그 사태가 있고 또 그걸 계기로 해서 토지 분야도 계속해서 아마 투기나 이런 쪽에 더 불붙기 때문에 예방적인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차원이 같이 있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렇긴 한데, 내부정보 활용하는 건 엄단은 해야지요,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일부 그런 것 때문에 전국에 있는 모든 선량한 국민들한테 너무 부담을 주거나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다만 그 부분이 보유하고 있는 데 대해서 중과를 한다면 괜찮은데 1년 2년, 자기들이 자꾸 그걸 갖고 바꾸거나 투기 목적으로 할 때 양도에서 나오는 차익 그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것이지 갖고 계신데 저희들이 갑자기……

○**정일영 위원** 그건 알아요, 양도소득세니까 그건 알고 있고요.

그런데 기본세율 +20%p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까지 지금 제외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예, 그렇습니다.

○정일영 위원 선량한 전 국민들 중에 해당되는 분들한테 이게 너무 갑작스럽게 피해를 주는 것 같아서 저는 좀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박형수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수 위원 법안에 대한 논의를 하기 전에 회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한 말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초과세수 문제를 갑자기, 지금 단기 부동산의 양도소득세율 인상을 설명하고 제안설명하고 뭐 하고 하다가 초과세수 문제를 묻는 것 이상하잖아요. 이걸 앞에 먼저 얘기했어야 됩니다. 유경준 위원이 그것을 발언하겠다고 했을 때 위원장이 꼭 이걸 설명하고 하자고 그렇게 고집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좀 유연하게 합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든 야든 조정해서 한 사람씩 더 합시다 아니면 두 사람 합시다 이렇게 하고 그걸 끝내고 이 법안 논의를 해야 되지, 지금 법안 설명을 다 하고 한참 하다가 갑자기 초과세수로 갔다가 이것 또 설명하고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유연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안이라든지 제도를 고치려고 할 때는 어떤 부작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주택에서 양도세율을 높이고 이렇게 한 것은 지금 급격하게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아파트 가격이 오르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안정시킬 수 있을까 그런 입법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걸 했어요. 물론 그것이 효과적인지 아닌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저는 그것이 효과적이지 않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매물잠김 현상을 초래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법을 발의한 분은 그런 목적하에서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지금 주택 이외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단기적으로 소유를 해 가지고 투기적 수요가 생겨 갖고 이런 부작용이 있더라,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그 근거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해서 입법 목적을 달성하자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단순히 주택 가격을 이렇게 올렸으니까 이것도 똑같이 해 갖고 같이 올리자 이것은 저는 입법정책적으

로 굉장히 옳지 않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추후 논의되는 것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유경준 위원님.

유경준 위원님 다음에 류성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유경준 위원 저도 말꼬리 잡고 토 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국회법이 2019년 7월 17일에 개정이 돼 가지고 ‘소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소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장께서 지금 잘못 알고 잘못 진행하신 겁니다. 그 부분을 확인하시고 오후 회의부터는 정상 진행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류성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걸 위원 지금 회의 진행 관련해서는 오후에 회의 전에 간사 간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행정부에서 주택에 대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맞춰야 된다 이런 취지의 뜻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주택하고 주택 이외 이렇게 분리할 필요도 없어요. 지난번에 논의를 할 때에 통쳐서 부동산 이렇게 하고, 이것을 뭐 때문에 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이렇게 하겠어요? 그냥 통쳐서 ‘주택 포함한, 토지 포함한 전부 다 통’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관련되는 사항은 아주…… 세제 관련된, 영향을 받는 분들이 한두 분도 아니고 아주 세밀하고 또 정치하게 세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답변 관련해서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주택 이외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특성이 전부 다 있습니다. 부동산이라는 특성 속에서 보면 주택을 단기 또는 여러 보유기간, 자산종류별로, 지금 주택 경우에도 단독주택 또 공동주택 포함해서 분양권, 조합원분양권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결국은 그때 그렇게 했을 때하고 하기 전하고의 효과를 한번 분석해야 돼요.

만약에 아까 차관님 말씀하신 그 논리를 그대로 한다면 그렇게 했더니만 어떤 효과가 나와서 주택 이외의 부동산에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러면 이런 정도의 효과가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주택에 관련된 양도소득세율을 조정하고 난 때부터 시작해서 아직까지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에 대해서 안 했더니만 지금 그게 무슨 난리를 칠 정도로 문제가 생겨 갖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그때 그런 문제가 생겼으면 아마 그때 논의가 돼서 했을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첫째로 정책효과, 정책목표가 뭔지를 분명히 답변해 주시고요. 첫 번째, 정책목표, 이걸 뭐 때문에 이렇게 하는지하고 이렇게 했을 때 정책 관련되는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되 토지의 특성 관련된 부분하고 주택의 특성하고 차이가 뭔지에 대해서도 같이 구별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일단 그것까지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계속 논의하겠습니다.

○**김수흥 위원** 저도 비슷한 취지인데요, 제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소위원장 김영진** 하시고 같이 합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수흥 위원** 정부가 양경숙 의원안을 받아들인다는 취지는 단기적인 불로소득이라든가 투기적 수요를 환수하겠다는 의지로 판단하신 거지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투기수익률 좀 떨어뜨려 갖고……

○**김수흥 위원** 그런데 우리가 시계를 작년 8월로 한번 돌려 봅시다. 그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2년 미만 보유주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율을 30% 인상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6월 1일 날 시행을 했는데 그동안의 서울의 주택거래량을 보니까 자녀 증여가 15%를 차지했어요. 자녀 증여가 배도 더 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이 됐느냐 하면 부동산 가격은 작년에 비해서 한 1년 사이에 한 15%, 20% 이상 올랐습니다.

물론 아까 박형수 위원님이나 류성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단기적으로 대응적인 측면에서 하고 부동산 투기를 막는 효과를 내세워서 그 취지를 얘기하면 어느 누구도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시장에 미치는 효과라든지 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정부가 전체적으로 수용하고 만약에 한다면 그것에 대한 충분한 논리나 자료 제시나 이런 게 있어야 전체적으로 국민들도 설득이 되고 당사자들도 설득이 될 것 같

아요.

그리고 저는 그렇습니다. 단기보유로 인해서 운이 좋아서 조금 수익이 날 수 있는데 그런 게 다 투기적 수요고 보유로 보면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모든 눈은 전부 다 투기로 보는 겁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종합해서 정부 측 답변……

○**박형수 위원** 하나만 더 묻고 같이 대답……

○**소위원장 김영진** 예, 박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수 위원** 아까 차관님 대답하실 때 양경숙 의원안을 정부가 수용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80%하고 70% 중에서 굳이 한다면 70% 양경숙 안을 받아들인다 이런 취지로 얘기한 것 같은데 그 부분도 같이 좀 추가를 해서, 전체적으로 양경숙 의원안을 수용한다는 취지인지 아니면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양경숙 안의 70%가 타당하다 이 의미인지 같이 한번 대답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경숙 의원안 전체를 동의합니다.

○**박형수 위원** 전체를 동의한다는 취지라고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예, 그렇습니다.

○**류성걸 위원** 답변해 주세요. 아까 제가 한……

○**소위원장 김영진** 류성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아까 박형수 위원님이 이렇게 하는 필요성, 계기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이게 지난 LH 사태 때 촉발이 돼서 부동산 투기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서 중간결과를 발표했는데 내부개발정보 이용 등으로 529명 검찰 송치하고 20명 구속했습니다. 그 구속된 20명 중에 공무원, 지방의회 의원, 공공기관 임직원, 공직자 친인척과 지인, 이런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어 갖고 공직자 부동산 투기가 실제로, 공직자와 공직자하고 연관돼 있는 분들의 투기가 실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투기적 토지거래의 기대수익을 축소해서 투기를 예방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고요.

그리고 조사가 또 한 번 있었는데 국토부에서 공공택지후보지에 대한 토지거래동향조사를 했었습니다, 4월 달에. 그런데 거기 조사 결과를 보면 토지거래량, 외지인 거래비중, 지가변동률 이런 것들이 과도하게 높아지는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답변을 갈음드리고요.

그다음에 류성걸 위원님께서 주택 중과 조치의

효과를 분석한 다음에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주택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수급이라든가 또 향후 기대 또 금융적인 요인, 금리나 대출,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이게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것을 구분해서 분석하는 데는 꽤 장기적인 시간이 소요가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시간이 흘렀지만 LH 사태 때문에 국민적 공분이 있었고 빨리 이런 토지에 대한 투기도 막는 장치를 마련하라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그런 분석 이전에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구요.

정책목표는 토지 단기보유 또 비사업용 토지 이런 데 대한 수익률을 떨어뜨려서 투기적인 의도를 줄여 나가고자 하는 그런 것입니다.

○류성걸 위원 지금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할 것 같으면 차관님 조금 전에 답변하시는 것하고 결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양경숙 의원안을 전적으로 전부 다 찬성을 한다고 하면서 실장님 말씀은 주택 이외에 토지 관련되는 사항은 주택에 관련되는 사항을 효과 분석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리기 때문에 하고 난 뒤에 하자, 완전히 결이 다른 이야기 아닙니까?

도대체 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태주 이게 좀 시급한 사항이란 걸 말씀드리는데……

○류성걸 위원 그러면 다시 하나씩 하나씩 묻겠습니다. 일문일답해 주세요.

정책목표가 뭐지요, 차관님? 양경숙 의원안에 대해서 찬성을 한는데 정책목표가 뭐예요? 이게 속기가 되고 전부 다 공개가 될 겁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투기 근절입니다.

○류성걸 위원 투기 근절이예요?

그러면 이것 이렇게 하면 투기 근절이 됩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예방적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류성걸 위원 어떤 정도, 어느 정도 있어요?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어느 정도라고 구체적으로 숫자를 말씀하시면 숫자를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류성걸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석도 안 하면서 무슨……

어느 정도라고 하는 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결국은 시계를 돌

려 보면 그때……

○류성걸 위원 일문일답할 거니까……

투기 근절이 됩니까? 될 걸로 생각이 돼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류성걸 위원 그거야 당연한 거지요,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그러면 부동산 관련해서 아까 전체 중에서 지금 주택 관련해서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상하니 투기가 또 주택가격이 안정됐나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글썽요, 주택가격 안정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거고요.

○류성걸 위원 ‘글썽요’ 하지 말고 됐는지 안 됐는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그다음에 실제로 지금 이것 한 게 주택 같은 경우는 시행이 6월 1일부터였습니다.

○류성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그리고 단기 거래는 저희들이 보기에 조금은 줄어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류성걸 위원 그러면 결국 뭐냐 하면 락 인 이펙트(lock-in effect, 잠금효과)하고 그게 또 우회로 해서, 아까 김수홍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게 거래가 돼서 주택 가격이 안정이 되고 할 것 같으면 매물이 많이 나와야 되잖아요. 공급은 줄어들었어요. 그 공급이라는 게 매매의 공급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증여가 되었기 때문에.

증여 통계 한번 보세요. 여기 분석한 통계가 있는데……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지금 단기 주택에 대한 것은 단기 주택을 가진 사람보고 매물을……

○류성걸 위원 차관님, 그런 두루뭉술한 이야기를 하실 게 아니라 제가 아까도 이야기를 했듯이 이 세법 개정이 됨으로 해서 분석을 아주 미시적으로 정치하고 세밀하게 해 줘야 됩니다.

아니, 지금 현재 정책목표라는 것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조건은 하면 할수록 있어요. 왜? 전부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필요조건은 전부 다 되는 겁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목표달성을 위해서 뭐 잡을 때 뭐 쓴다고 어떤 목표달성을 위해서 해야 될 수단과 그다음에 그 효과의 분석을 정치하게 해야 하는 게 행정부의 임무 중의 한 개입니다.

그런데 ‘하면 좋지요.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런 이야기 누가 못하겠어요?

그러면 또 다시 묻겠습니다. 지난번 LH 부동산 투기 관련해서 그때 당시에 LH 투기 관련해서 문제됐던 분, 아까 얼마를 어떻게 처리를 하고 어떻게 했는데 그렇게 됨으로 해서 LH 투기 관련된 사항 전부 다 해결이 됐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당연히 그분들 같은 처벌을 해야 되고 부당이득이 있으면 환수를 해야 되고……

○류성걸 위원 그러니까 해결이 되었느냐고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그다음에 필요하면 예방도 해야 되고 적발도 해야 되고.

사실 돌아보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계를 조금만 돌려서 보면 그 당시에 얼마나 공분이 컸었고 이 부분을 해야 된다고 했었던 거랑……

○류성걸 위원 공분이 큰 것하고요 제도적으로 법적인 장치 마련하는 건 다른 겁니다. 그럴 것 같으면 전부 다 해 가지고……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앞으로도 공급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류성걸 위원 뭐 때문에 퍼센트를 이렇게 합니까? 100% 전부 다 환수해 버리지요. 그게 가장 확실한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아니, 그건 아니지요. 100% 환수할 수는 없지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류성걸 위원 그래서 그런 비례의 원칙과 그다음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또 한 가지는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그때 당시에 그런 공분 또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주택분에 관련해서는 양도소득세가 조정이 됐는데 그렇게 안 돼 가지고 지금까지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안 했음으로 해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사이예요?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크게 문제가 안 생겼다는 그 말 그대로 봐도 지금 현재 상태로 유지가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추가적으로 더 악화가 됐든지 문제가 더 커졌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그 부분도 말씀하신 대로 장담할 수가 없는 거고요.

○류성걸 위원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앞으로 택지 개발

은 더 늘어날 거고요, 지금까지 계속해 왔는데 과연 이 토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류성걸 위원 차관님, 그렇게 이야기 두루뭉술하게 하지 마시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저 두루뭉술하게 말씀드린 것 아닙니다.

○류성걸 위원 그때 당시에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에, 지금 이런 조치를 한 그사이에 추가적으로 문제가 더 악화가 됐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분명히 알겠고요. 그 정책효과를 더 엄밀하게 하라는 말씀은 제가 충분히 새기겠지만 그게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류성걸 위원 아니면 그때 상황에서 조치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악화됐든지 또는 더 문제가 생기지 않았으면 가만히 놔둬도 괜찮다는 그런 이야기나 마찬가지로잖아요, 역으로 이야기하면.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지금도 이런 개발이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시장에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또 그 상황 상황에서 다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소위원장 김영진 추후에 또, 돌아가면서 질의 하시겠습니다.

정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영 위원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또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등등 종합해 보면 디테일한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리고 LH 관련해서도 LH가 촉발시킨 걸로다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LH에 대해서 LH 조직 개편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아직도 미흡하고 또 투기한 사람들에 대한 조치도 아직도 부족하고, 그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전 국민이 공분을 했던 것도 사실이고.

그런데 이것을 그냥 무조건 다 20%p씩 올리고 또 없애고 10% 올리고 하는데 보면 LH 공분 그런 걸 계기로 해서 확 올려 버리는 게 저는 LH와 관련되는 국민들보다는 관련 안 되는 선의의 국민들이 훨씬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법안을 만들 때는 현장 현실에 맞게 좀 디테일하게 편셋으로 딱 잡아서 문제 있는 것만 해야지 이렇게 막 획일적으로 다 올려 버리면 선의의 국민

들, 전국에 있는 국민들은 또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사업용 토지 같은 경우에 기본세율 +20%p에 장특공제 없애 버리는데, 비사업용 토지가 지금 어떤 겁니까? 우리 지역에 전국에 보면 밭도 있고 논도 있고 임야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그러니까 재촌·자경하지 않는 농지 이런 것들이……

○정일영 위원 예?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재촌·자경하지 않는, 서울 사람이 어디 지방에 땅을 갖고 있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비사업용 토지가 되겠습니까.

○정일영 위원 그러니까 서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자기 고향에 임야를 갖고 있다고 쳐요. 그러면 그게 다 비사업용 토지가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그렇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분들이 그냥 쪽 가지고 있던 임야도 있고 밭도 경작하는 분도 있고, 본인이 경작하면 비사업용이 안 되고 지역에 지방에 논도 있고 밭도 있는데 본인 소유지만 남이 경작을 하면 비사업용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 박금철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정일영 위원 누가 지금 하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 박금철 재산세국장입니다.

○정일영 위원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갑자기 그냥 얘기하면 누군지 알아요?

○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 박금철 죄송합니다.

○정일영 위원 그리고 이 정도는 기본적인 질문인데 그걸 세제실장이나 차관 정도 아시고 답변해야지. 그렇게 어려운 질문도 아닌데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 엄청 과세를 하겠다는 건데 그게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올리면 어떻게 해요? 꼭 국장이 답변해야 되나요, 이 정도를? 제가 어려운 것 물었나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야 같은 경우는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지 않은 임야, 그러니까 거기 거주하지 않고 소유한 임야.

○정일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쉽게 얘기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 서울에 수도권에 있는 사람이 어디 지역에 지방에 임야가 있다고 쳐요. 그게 한 20년 전에 산 거든 상속받은 거든 뭐가 있다고 쳐. 그게 다 비사업용 토지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LH 사태하고 무슨 관련이 있냐고요. 갑자기 막 세율을 올려 버리고 장특공제를 없애 버리고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충격이잖아요. ‘왜 갑자기 세금을 이렇게 올리지? 정부가 세금이 부족한가?’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예, 맞습니다. 그분들이 결국은 이걸 해소하셔서, 다시 그 지역으로 가서서 경작을 하시면 비사업용 토지가 해소가 되는 거고요.

○정일영 위원 아니, 그게 그렇게 됩니까? 아니, 서울에서 직장 다니고 일하는데. 더 얘기가 안 돼요, 그건.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인근지역에 개발 호재가 있으니까 거기에 거주하지 않으시는 분이 임야를 샀다가 그 개발 호재를 보고, 그래서 일이 년 만에 편입이 돼서 발표가 되면 그때 차익을 누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세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정일영 위원 차관님, 제가 얘기하는 건 비사업용 토지예요. 여기 지금 보유기간 1년 어찌고 하는 그것 아니고 세 번째 비사업용 토지에 기본세율 올리고 장특공제 없애는 것 그걸 제가 지금 질문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투기하려고 갑자기 막 사 가지고 일이 년 만에 파는 게 아니라니까요. 얘기했잖아요. 그게 본인이 어떤 계기가 돼서 소유하게 됐어 또는 부모님한테 상속받았어. 그래서 10년, 20년, 5년 이렇게 임야를 보유했어. 그런 국민들이 꽤 있잖아요, 전국에. 그런데 그분들은 LH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 그냥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국민들 많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정부에서 장특공제 없애고 기본세율 막 올리고 그러면 그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이게 무슨 이유지, 왜 그러지? 세금이 남는다고 그러더니 세금이 다시 부족한가? 이 정부가 왜 그러지?’ 국민이 이해를 하겠어요? ‘LH 사태를 막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 임야가 LH하고 무슨 관련이 있지?’, 없잖아요.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내려가서 그걸 경작을 해

요? 그걸 갑자기 팔아, 어떻게 해?

그래서 저는 이것 반대고요. 너무 현실감이 없어요. 그리고 현장의 아무런 실정도 모르시는 것 같고. 저는 이것은 반대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박형수 위원님 말씀하시고, 이것은 추후 논의를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형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형수 위원 이것은 여야 위원 공히 여기에 문제 있다고 하기 때문에 논의를 좀 더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저는 정부의 인식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LH 사태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이 법안에 찬성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LH 사건이 터졌을 때 국민적인 공분이 있었던 건 누구나 다 압니다. 그리고 그 공분을 잘 대변해 줘야 되는 게 정치권이에요. 그래서 의원들이 이런 식의 법안을 발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정부는 이런 식의 법안이 나오면 이게 경제에 미칠 영향, 거래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그게 국민적 공분은 크지만 이러이러한 점에서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정부가 정책 방향을 제시를 해야 되지 오히려 그 국민적 공분이 크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마련하는 데 찬성한다 이것은 정말 저는 기본적인 인식부터가 잘못됐다……

그리고 LH 사태에 대한 그런 대응 방안은 LH 사태가 지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사람 관련된 사람들 처벌하고 또 LH 공사 직원이라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 국가공무원들이 관련 업무를 처리할 때는 신고를 하게 한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어요. 거기에 맞는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 아나, 여기 팔에 암이 생긴 것 같은데 그러면 팔을 수술해야 되는 것이지 팔에 암이 생겼으니까 온몸에 전이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온몸 전체를 다 열어서 수술을 합니까? LH 사태에 대한 그것을 다시 재발하지 않기 위한 핀셋 처방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 처방 때문에 전체를 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것은 오히려…… 아까 제가 얘기한 건 거꾸로 정부는 국민적 공분이 있어서 이러한 법률이 발의될 때 이것을 우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이러이러해서 거래질서가 문제가 있다……

그리고 한 제도나 법이 시행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아주 정치하고 촘촘한 법률관계나 거래관계

가 형성됩니다. 세금이 얼마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그걸 생각하고 취득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보유하지 않고 있는 사람도 있고 팔아야 되는 사람도 있고 이걸 계속 보유하면 이득이 될까 안 될까 다 계산해 가지고 법률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법률관계를 깨뜨릴 때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특별한 사정은 여기에는 없어 보여요. 오히려 아까 얘기한 대로 주택이나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서 국민 전체의 주거 안정에 문제가 된다 이럴 때는 그런 질서를 깨뜨릴 수가 있겠지만 이것은 지금 그런 게 나타나지도 않는데 법률로 해 가지고 LH라는 이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확대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저는 이걸 정책 당국에서 굉장히 무책임한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박형수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은 무슨 뜻인지 저희가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하나하나 법률적인 관계, 기존에 있던 부분들의 안정성 그런 것까지 다 봐야 되고, 특히 조세 같은 경우는 특히 그 부분을 더 세심하게 봐야 된다는 그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런 특정 사례 그걸 막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결국은 주택 같은 경우 공급을 확대하려면 토지가 계속해서 공급될 수밖에 없고요. 계속해서 주문 주시는 사항들이 공급 확대입니다. 공급 확대를 하려면 택지 개발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요, 택지 개발을 하는 와중에 개발 소재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서 토지 같은 경우도 부동산 가격 불안정을 굉장히 자극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고요. 어떻게 보면 이미 발생한 것에 대한 교정도 있지만 미리 그렇게 되는 부분들 같은 경우도 사전에 예방하자는 차원, 막상 그런 게 발생되고 나면 저희들한테 왜 그걸 미리 막지 못했느냐 이런 부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물론 기존의 그런 법률적인 관계 안정성 이런 것도 충분히 해야 되고요. 또 미리 보는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측면을 동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여야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다 다양하고 견해가 좀 있으셔서 이것은 계속 논

의하는 것으로, 이 안건은 계속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2쪽 12항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호 14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1세대 1주택 및 1세대 1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액기준의 상향입법 및 인상입니다.

표 좌측을 보시면 주택하고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부분 규정이 있는데요. 현행을 보면 제외대상을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 그래서 각각 시행령에서 9억 원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개정안은 직접적으로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조합원입주권으로 하자는 취지입니다.

147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은 지난 8월 대체토론 요지를 정리한 거고요.

검토의견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고가주택 기준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입법하려는 개정안에 대해서는 조세법률주의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고가주택 기준을 2008년 9억 원으로 규정한 이래 현재까지 변경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148페이지입니다.

고가주택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첫째, 2008년 이후 발생한 주택 거래가격 상승을 반영함으로써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세 부담 증가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 고가주택 금액 기준을 상향 조정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1세대 1주택 거래 전체에 대한 양도세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제도는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주거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상대적으로 투기적 수요로 보기 어려운 1세대 1주택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의 주택 거래비용을 낮춤으로써 주택 거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주택시장의 매물잠김 현상을 해소하는 데 일부 기여할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기존주택 매도 후 대체주택 매수 시 주택시장의 공급 증가 효과는 제한적일 수도 있고 현행 비과세 기준인 9억 원에 맞춰진 주택 거래가격이 12억 원으로 상향되는 키 맞추기 현상이 일부 발생할 여지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변경될 경우에는 1세대 1고가주택 양도 시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안분계산 관련 규정—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부분도 함께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익원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 9억 원 그제 08년에 개정된 이후에 13년 동안 변동사항 없이 유지되어 왔기 때문에 또 그 동안의 집값 상승 이런 현실을 반영하면 1세대 1주택자 이분들의 부담을 완화하자는 이 취지 여기에는 공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시점에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이 사실은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이 개정안이 시장에 미칠 영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최근 그래도 어렵사리 부동산 시장의 상승세가 둔화 흐름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매도 우위로 좀 전환된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실거래가격 중에 하락 사례도 나타나고 있고 좀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시장이 변화의 기로에 굉장히 중차대한 시기에 있는데 이 개정안이 자칫 그러한 움직임에 규제 완화의 시그널로 잘못 전달돼서 시장 안정을 저해하거나 시장 불안으로 이어지거나 이런 우려가 좀 크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측면에서 이 안건에 대해 사실은 매우 신중한 입장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영 위원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이건 12억

원으로 올려야 된다고,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부 측 입장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제가 전에 부총리께도 질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것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게 바람직한데 부총리께 여쭙보면 약간의 뭐 필요하다고 하면서 또 무슨 얘기 하는데 오늘 차관님도 그런 뉘앙스인데……

그러니까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동산 시장에 시그널을 잘못 줄까 봐 우려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아니면 이걸 반대한다는 얘기인가요? 정부 측 입장이 뭐예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과연 지금 이 시점에 해야 되는가 이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일영 위원** 그러니까 반대입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제가 표현을 매우 신중하다고 표현을 했는데요, 사실상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정일영 위원** 반대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요. 이게 다주택자 그동안 부동산이 좀 문제가 있었지요, 현재도 좀 그렇지만. 정부에서 여러 가지 대책, 여러 대응이 매우 미흡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어쨌든 국민들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지금 부담을 안고 있고 고생하고 어렵고 청년·무주택 전부 다 어렵잖아요. 그래서 다주택에 대해서는 엄하게 여러 가지 중과세하는 건 찬성이예요. 그런데 1주택자분들, 1세대 1주택 그분들은 사실은 갑자기 집값이 올랐는데 뭐 그것을 세금으로 중과한다, 많은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것이 사실은 억울하지요. 그러니까 2008년 이후에 이게 조정이 안 되다가 지금 이제 올라온 것 아닙니까, 2008년.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예.

○**정일영 위원** 그러니까 13년 동안 사실 주택 거래 상승도 상당히 돼 왔지만 최근 2~3년 동안 많이 올랐잖아요. 전체적으로 물가상승률이나 다 감안하면 이것은 상향되는 게 맞는 거예요. 대신 저는 주택시장에 시그널을 잘못 준다, 뭐 그것도 다소 일리는 있겠지만 우리 국민이나 주택 소유한 분들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많은 정보를 다 듣고 있고. 옛날 그런 생각은 안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 갑자기 주택을 무슨 대책을 완화시키고 강도를 낮춰 가지고 부동산 시장을 갑자기 막 붐 띄우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은 거의 없을

거예요. 당연히 이제 9억에서 이게 여러 가지 너무 세금이 강해지니까 그에 대해 부담을 하는데, 다들 그 얘기 하잖아요. 사실 뭐 여당이 얘기해서 이상하지만 어쨌든 ‘내가 집값 올렸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집값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집 팔려고 그러는데, 집 팔고 다른 데로 이사하려고 그러는데 세금 때문에 이사를 못 가는 분도 많아요. 지금 시장에서 또 여러 언론에 많이 보도되잖아요. 지금 이것 기다리고 있는 국민들도 많아요, 집 팔고 좀 규모를 줄여서 가든지 뭔가 좀 대책을 마련하려고 그러는데 부동산 시장이 하도 어려우니까. 그런데 이게 12억, 기다리고 있는……

그래 가지고 거래도 요새 좀 줄었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에 잘못 시그널을 준다 해 가지고 신중하고 반대 입장을 보이는 건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뭐 장특공제 이런 건 나중에 논의하면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12억으로 올리는 것은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김수홍 위원님 발언해 주시고 류성걸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김수홍 위원** 차관님, 국가정책이라는 것은 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되고 또 반드시 시장을 따라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얘기들을 총동원해서 하게 되면 정책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 완화시킨다 해서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한다든가, 사회의 양극화를 초래한다든가, 청년들한테 기회를 없앤다든가 이런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얘기도 있을 수 있지만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동기 부여를 해 주고 시장에 적응하면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측면도 많기 때문에 저는 시장의 흐름과 국민의 눈높이를 따라가야 돼서 반드시 이것은 해야 된다, 하나하고.

전문위원이 지적인 내용 중에 그것은 정부가 답변을 안 하더라고요. 1세대 고가주택에서 감액해서 처리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이렇게 이 내용이 반영되면 정부는 수용할 거지요?

○**기획재정부제1차장 김태주** 시행령 개정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수홍 위원** 예.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법이 바뀌면 당연히 따라서 바뀌게 되지요.

○**김수흥 위원** 정부가 법을 반대하니까 답을 안한 건데요,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류성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걸 위원** 지금 논의하고 있는 이 사항은 크게 보면 시행령에 9억 돼 있던 이 사항을 법에다가 올리는 그런 것하고 또 9억 돼 있는 이 금액을 얼마로 할 거냐 하는 것으로 크게 2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때도 같은 비슷한 사항이었습시다만 그래서 첫 번째 상향 조정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금액에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만 금액을 물가상승률 또는 중위소득 아니면 GDP, 물가상승률 속에서 소비자물가나 GDP 디플레이터도 마찬가지로 그것 그다음에 우리 1인당 국민소득 이런 여러 가지 경제지표들을 가지고 본다면 이제까지 정부가 제시했던 그런 논리적 근거가 이런 경제지표가 이렇게 많이 늘었기 때문에 또는 상승했기 때문에, 증가했기 때문에 이런 근거를 많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그런 근거에 따른다면 조정을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런데 그것을 얼마로 조정할 건가, 제가 보니까 제가 자주 쓰는 단어고 듣기는 싫겠지만 세법을 지금 완전히 누더기로 걸레처럼 만들어 놔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다음 정부가 되든지 어떤 형태든지 세제를 진짜 말하자면 종합적으로 한번 세제 개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은 또 장기적인 거고 또 앞으로 정권이 바뀌면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그러면서 지난번에 종합부동산세 할 때도 금액을 11억 할 건지 12억 할 건지에 대해서 논란하다 결국은 이제 정치적 타협에 의해서 11억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세제실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관련되는 통계, 관련된 자료 중에서 지금 현재 보통 보면 6억하고 9억하고 그다음에 12억 이렇게 돼 있는데 지난번에 이게 11억이 됐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 기준금액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 주십시오, 첫 번째.

그렇게 하고 또 뒤에 표에 이게 나오지만, 146쪽 표에 이제까지 3의 배수로 이렇게 하다 보니 3, 6, 9, 12, 15억 이런 형태로 돼 있는데 11억이 됐을 때에 어떻게 되는지를…… 이것은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아마 관련되는 자료를 공동주택 공시가격 자료 해 가지고 현실화를 계산해서 추정을 해서 자료 표를 만든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효과분석에 있어서 걱정되고 부작용 되는 부분들도 한두 건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문제를 제기를 해서 이것 때문에 안 된다 하는 이야기는 아까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런이런 효과, 필요조건에 의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것하고 또 완전히 정반대되는 논리예요.

한쪽은 보면 조금이라도 관련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부동산 관련해서 앞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에 저해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 하는 그런 부정적인 것 가지고 또 이렇게 하고, 그래서 논리적인 정치성이라든지 논리적인 정합성을 따져 보면 그렇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조정을 해서 9억에서 뭐 11억이 되든지 12억이 되든지 아니면 그보다도 더 올려서 15억이 되든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추가적으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유경준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준 위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관께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돼 가고 있다는 인식이 매우 불안해 보이고요. 그러니까 안정화되고 균형화됐다는 것은 불안정적인 균형과 안정적인 균형이 있는데 지금 설사 부동산 가격이나 이것들이 조금 안 올라간다고 해서 그게 안정적 균형이라고 잘못 보고 계신 것 같아 가지고, 그 부분은 국감 시나 질의 시간에 여러 번 말했기 때문에 더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안정이라는 인식은 좀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제일 끝에 150페이지에 유동수 의원안이 입법될 경우 주택과 달리 조합원입주권은 합계액이 될 수 없다는 말은 뭐 수궁이 되는데 그런데 조합원입주권도 토지하고 주택부수토지하고, 주택과 주택부수토지가 달리 입주권

으로 변형되는 경우도 없나요?

○전문위원 정명호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유경준 위원 하나로 합니까?

○전문위원 정명호 예.

○유경준 위원 하나로 하면 이게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2개 따로 하는 경우도 제가 본 것 같아 가지고, 조합원이긴 한데……

○전문위원 정명호 추가로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경준 위원 예, 그 부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양향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향자 위원 저는 늘 법안을 뭔가 상정을 할 때 근본적인 게 좀 궁금해지는데 여기 세제실장님, 차관님, 전문위원님, 2008년도에 9억 원을 만들 때 참여를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로직이 있을 것 아닙니까?

9억이라는 숫자가 나온 그런 로직이 있을 텐데 13년이 흐른 지금 그 로직이 제대로 정합성이 없으면 이것을 업데이트해야 되는 것이고 로직이 없었다면 새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이것을 9억에서 12억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모호한 약간 정성적 숫자라고 느껴져서 이게 2008년도에 그런 로직이 제대로 있는 건지부터가 제가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당시 로직 말씀하시는 거지요?

○양향자 위원 예, 9억을 상정했던.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그 당시 로직은 지금하고 뭐 유사했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요. 지금 그것 확인은 오래전 거라서 못 했는데 일단 그 당시에 저희가 좀 본 것은 아까 차관이 이제 조금 불안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당시 2008년 10월에 이 규정이 6억에서 9억으로 올라갔거든요.

그 당시에 1년 전후를 아파트 거래 비중을 갖다가 한번 봤었는데, 그때 2007년 10월에서 2008년 9월까지 7.9% 정도 전년 대비해 가지고 아파트 거래 비중이 있었는데 6억에서 9억으로 인상한 다음에 2008년에서 2009년 9월까지 15.4%로 이 거래 비중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조치도, 9억에서 12억으로

올리는 조치도 뭐랄까 9억에서 12억 사이에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대기수요 또 매물 이런 것들이 이 부분에 불안효과가 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또 9억에서 12억에 있는 분들이 주택을 팔면 그것도 상급지로 올라가려는 그런 수요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보다 더 높은 가격대에 또 수요로 증가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주택이라는 계급지별로 다 지금 딱 균형이 맞춰져 있는데 어디가 오르면 따라서 또 이렇게 막 키 맞추기를 해버리거든요.

‘저기가 얼마면 우리는 얼마 받아야 된다’ 막 이래 가지고 죽 해서 전반적으로 이게 불안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좀 아니다, 지금은 아니고 어느 정도 안정세가 조금 가시화될 때 그때 논의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양향자 위원 그래서 강조 드리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그냥 우리 조세소위 위원들한테 설명하시지 말고 이것을 정량적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하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납득 못할 국민들이 없지 않도록, 납득 안 하실 분이 없도록.

그런 정량적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2008년에 9억 그러면 어떤 변수가 어떤 식으로 변화돼 왔고 어떤 것들이 예측되고 그런 설명을 하면 ‘아, 12억으로 하는 게 맞겠다’라고 정말 보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 뭐 조세소위에서 싸우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항상 그게 답답합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김주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 세제실장님, 그러면 언제쯤 집값이 안정될 거라고 생각해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빨리 안정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주영 위원 그것은 희망사항이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김주영 위원 지금 KB국민은행 통계 보면 아파트 중위가격이 2008년도에 4억 8000만 원에서 올해 8월 달 기준으로 보면 10억 5000만 원 선으로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최근 부동산 오름세가 좀 꺾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매물 잠금 현상이라든지 또 앞으로 주택가격이 더 상승될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사실 거래

자체가 잘 안 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물가 상승이라든지 주택가격 인상이라든지 이런 게 이미 굉장히 올라간 상황에서 시대적 조류를 맞춰 가는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나중에 좀 안정되면 하자고 하는 것은 지금 세수 때문에 걱정을 하는 겁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세수는 아니고요, 시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주영 위원** 시장이 그러면 다른 반응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가요? 어떤 반응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제가 그렇지 않아도 전문가들도 만나 보고 타진도 해 봤는데요, 결국은 이게 혹시라도 정책이 규제 완화가 돼서 이걸 계기로 해서 뭔가 완화되는 그런 신호탄이 되는 것 아니냐, 그게 잘못 해석될 가능성들을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보면, 아주 디테일하게 보면 결국은 1세대 1주택이니까 이분들이 주택을 팔고 빠지시는 게 아니라 갈아타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결국 9억에서 12억에 계신 분들이 12억 이상으로 올라가시는 데 부담이 되니까 양도소득세가 완화되면 올라가시는 게 용이하다 이런 거가 되니까요 그 부분은 올라가는 거고. 그다음에 9억에서 12억 원은 물건이 새로 나오니까 거기서 들어가는 데, 이제 보면 12억 이상은 사실 거기가 보통 가격 상승을 촉발하는 쪽인데 거기에 수요가 들어가면서 촉발하는 요인이 하나 있을 것 같다.

그다음에 9억에서 12억 같은 경우가 가장 대기 수요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일대일로 하나가 나왔으니까 하나가 받는 게 아니라 갑자기 대기 수요들이 굉장히 밀릴 수가 있어서 수요가 굉장히 촉발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는 이게 올라가면서 그 밑으로 또 키 맞추기로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게 언제 집값이 안정될 거냐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유경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정화됐다고 저희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변화의 기로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있는데 여기에 뭔가 잘못된 자극이 들어갔을 때 이게 정작 제일 중요한 시장 안정이라는 이 목표 자체가 흔들릴까 봐 그게 저희들의 걱정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얼마냐의 논의보다도 언제 하는 게 더 나으냐 이 부분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박형수 위원님 발언해 주시고 용혜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형수 위원** 양도세 비과세 가액을 올리는 부분에는 찬성합니다. 그리고 12억 원 이상으로 올리는 것도 찬성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 우리 당이나 우리 당 의원들 전체가 계속해서 이 부분을 주장해 왔던 부분입니다. 늦었지만 여당이 여기에 부응해 준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을 하고 이것은 여야 간에 이견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논의를 계속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우려하시는 그런 것에 대한 얘기를 하자라면 아까 키 맞추기 9억, 12억 얘기를 했는데 아파트 중위가격 아까 김주영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9억 원으로 되어 있어도 중위가격이 이미 10억 5000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키 맞추기에 영향을 안 미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려는 없어 보이고.

또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되어 간다라는 그게 과연 바른 인식인지 의문도 있지만 그 부분도 만약에 지금 약간 안정화되어 간다라면 그것은 더 이상 이제는 사려고 하는, 빚을 내고 영끌이라고 이렇게 해서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여력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정부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기본적으로 급증한 것은 이게 국민들의 잘못이 아니거든요, 근본적으로 보면. 정책이 잘못되어서, 뭐 그게 공급이 부족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책이 잘못돼서 부동산 가격이 이상적으로 올라간 부분을, 그 부분의 세금은 또 국민들한테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잘못이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상향하는 부분은 여야 간에 이견이 없으니까 통과시키는 게 옳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용혜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혜인 위원** 사실 여야 간에 이견이 좀 있고요. 반대 의견을 밝히려고……

(웃음소리)

이 얘기 꼭 좀 드리고 싶은데 2008년 이후에 발생한 주택 거래가격 상승을 반영한다라는 취지인데 이렇게 따지면 사실 근로소득세나 종합소득

세 기본공제도 물가인상 반영해서 똑같이 올려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물론 저는 찬성하지 않지만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주택가격 상승으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의 양도소득세 금액이 커지는 만큼 주택 양도 차익도 크게 늘어났다는 점을 저는 동시에 감안해야 한다, 이게 그냥 세부담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난해에 집값 잡겠다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의 조치 했을 때 1주택자 양도세 완화 얘기가 없다가 대선 앞두고 1주택자 양도세 완화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정책 실효성보다는 큰 선거 앞두고 이렇게 선심성으로 정치적 세제 개편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저는 정부에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 주셔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떨어진 인기는 언젠가는 회복할 수 있지만 정책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사실 그 신뢰를 회복하는 건 참 어렵다라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에 입각했을 때 양도소득세 완화를 검토할 명분을 가지려면 보유세 강화라는 전제가 있어야 저는 양도세 완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양도세 완화 자체를 반대한다기보다는 보유세를 강화해서 보유에 따른 부담을 키우고 여기에 잠김 현상 완화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1주택자 종부세 완화까지 한 마당에 양도세마저 완화를 하면 부동산 시장에 안 좋은 시그널을 보낼 수 있다라는 정부 측 의견에 저도 동의하고요. 안 그래도 보유세든 양도세든 정권 바뀔 때까지 기다리면, 버티면 이긴다라는 확신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집값이 안 잡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시그널을 정부가 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국회도 마찬가지로 그런 시그널을 국민들에게 주는 건 아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도세 완화가 단순히 감세가 아니라 역진적 감세에 해당한다는 점도 지적하고 싶고요. 이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양도세 부과 기준을 9억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면 사실은 여기서는 9억에서 12억만 건드린다, 그리고 1주택자만 이야기한다라고 하지만 12억 원 이하 주

택 보유자뿐만 아니라 고가일수록 감면 혜택이 큰 역진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소득세 체계상 불가피하게 이렇게 정비할 수밖에 없고 이 개정안에서 끝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정부 측에서 반대 의견을 밝혀 주셔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집값 잡히고 있다는 것 ‘아니다’라는 지적을 다른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요. 최소한 지금은, 특히 선거 앞두고 이런 논의를 하는 것은 특별히 부적절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이 논의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했다가 2시부터 조금 더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했다가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득세법 유동수 의원안에 대해서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성걸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김영진 류성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걸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오전 회의 시작 때에 회의 진행 방식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고 특히 우리 당의 위원님께서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소위원장님께서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국회법에 따라서 소위원회 포함해서 상임위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공개 원칙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또 비공개로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간사 간 협의 통해서, 또 간사는 당연히 우리 위원님들께 미리 사전에 어떠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비공개로 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해서 회의 진행에 원만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특히 소위의 논의 방식은 상임위 전체보다는 조금 더 규모도 작고 하기 때문에 아주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여러 가지 사안들을 논의해야 되기 때문에 발언 관련해서는 발언을 요청하시는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발언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께 그 말씀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지금 간사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그 취지에 맞춰서 소위가 원활하고 위원님들의 자유로운 발언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원칙에 따라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준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영 위원 12항 관련해서 제가……

차관님, 논의의 진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기재부가 가액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입장입니까, 반대하시는 입장입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부동산 시장 안정 측면에서 보면 현 시기에 양도세 비과세 가액 기준을 상향하는 부분은 매우 신중해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배준영 위원 그러면 긍정보다는 부정 쪽에 가까우신 의견으로 읽혀집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예.

○배준영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유경준 위원님.

○유경준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아까 오전 회의 진행 관계로 우리 간사님께서 얘기하고 위원장께서 의견 표명을 하셨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국회법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시든지 아니면 유감 표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소위원장 김영진 여러 가지로 의견을 주셨는데요, 사실 상례에 따라서 진행을 했는데 그 문제에 관해서 위원님들께서 불편하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드렸다면 소위원장으로서 앞으로 더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유감을 표명합니다.

○유경준 위원 잠깐만, 오후 회의 때부터는 그러면 공개로 전환하는 겁니까?

○소위원장 김영진 자유롭게 누가 들어오시든지 그것은 이제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원래 서로 얘기해서 하는 거라서 그것은 자유롭습니다.

○류성걸 위원 비공개가 아니면 당연히 공개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그것은 여기서 저희들이 장

내 정리를 위해서 서로 하는 거라서 그 원칙에 따라 하고 이게 바로바로 속기록이 또 나와서, 요청하시면 나오기 때문에 실제로는 다 공개되는 겁니다, 그대로 발언에 대해서요. 그것은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유경준 위원 아니,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 회의로 전환하신다고 말씀했잖아요. 그것은 엄연히 다른 얘가지요, 그 부분은.

○소위원장 김영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유경준 위원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소위원장 김영진 그 문제에 관해서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서로 오해 없이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전 관련해서 여야 위원 전체는 아니고요 여야 위원님들 관련해서는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해서 완화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대체적인 의견을 같이했고 용혜인 위원님께서 동의하지 않는 의견을 이렇게 진행을 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논의를 진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위원님께서서는 그 취지, 완화의 방향에 대해서 대략적인 합의의 과정, 동의의 과정을 가졌고 용혜인 위원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직 동의하지 않는 입장을 표명하셨기 때문에 유지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취지가 다음에도 또 계속 연이어서 논의가 되기 때문에……

○용혜인 위원 보류하고 넘어가신다는 거지요, 위원장님?

○소위원장 김영진 예?

○용혜인 위원 형식적으로 보류하고 넘어가신다는 거지요, 당장 합의가 안 돼서?

○소위원장 김영진 그렇지요, 아직 결정한 건 아니지요.

○용혜인 위원 그렇지요, 잠정 합의가 아니라?

○소위원장 김영진 예, 지금 여기에 있는 여덟분의 위원님들은 동의하셨고 우리 용혜인 위원님은 동의하지 않는 입장을 유지하는 겁니다. 유지하고 추후에 다시 한 번 더, 11월 말 전체 조세소위 안에는 결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혜인 위원 예.

○소위원장 김영진 다음 안건 검토의견 해 주시

기 바랍니다. 13항입니다.

○전문위원 정명호 15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거주기간 산정방식 및 공제율 조정과 관련해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조정입니다.

유동수 의원안하고 태영호 의원안 2개 있는데요, 유동수 의원안은 기존의 표2를 양도차익별로 보유기간 공제를 세분화하는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태영호 의원안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공제율을 상향하는 의견입니다.

156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유동수 의원안은 1세대 1주택으로 하여금 제95조제2항의 표1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와 표2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중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표2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기간별 공제율은 현행과 동일하게 하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양도차익의 규모별로 세분화하여 누감적으로 적용하려는 것이고요.

태영호 의원안은 표2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중 10년 이상 보유 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인상하고 10년 이상 거주 시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100%가 됩니다.

다음 1세대 1주택이 아닌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각각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의 공제율을 적용받도록 하여 사실상 비과세하자는 것입니다.

157페이지 표는 유동수 의원안을 저희가 보유기간 기준으로 양도차익별로 재구성한 건데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3년 이상 4년 미만 같은 경우 현행 12%인데 오른쪽 5억 원 이상의 같은 경우는 현행과 동일하고요, 양도차익이 크면서 누감적으로 줄어드는 부분입니다.

160페이지 161페이지는 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생략하고.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유동수 의원안은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양도차익의 규모별로 세분화하여 누감적으로 적용하려는 것으로 첫째, 고액의 양도차익을 목적으로 ‘뽕뽕한 한 채’에 대한 투기 수요를 방지하려는 면에서는 긍정적인 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주 목적의 1세대 1주택 보유를 적극

적으로 유도하려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요, 양도차익이 클수록 한계공제율을 누감적으로 낮추는 개정안은 담세력에 상응하도록 과세함으로써 수직적 조세형평성을 제고할 여지가 있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고려사항입니다.

첫 번째, 양도차익이 클수록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낮게 설정하여 1세대 1주택자로 하여금 장기보유를 억제하도록 유도하는데 이는 장기보유공제의 정책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자가 자녀에게 보유주택을 증여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는 경우 유동수 의원안의 정책 효과가 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167페이지입니다.

짚은 세법 개정으로 인해 법적 안정성에 문제가 될 수 있고 공제율 계산이 복잡해져 납세자 및 시장의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태영호 의원안은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중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공제율을 각각 50%로 인상하자는 안인데요, 10년 이상 보유·거주한 주택은 주택보유 목적이 투기보다는 실거주라고 볼 수 있다는 점, 다주택자의 10년 이상 장기보유·거주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 다주택자의 주택 공급을 유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이를 상향하는 경우 고가주택 소유자에게 혜택이 부여되고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의 과세형평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시고 위원님들 하겠습니다.

정부 측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익원 지금 이 개정안은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을 전제로 장특공제 조정이 포함된 거기 때문이에요 저희들은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 안전과 패키지로 함께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정부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에 대해서 매우 신중한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이것도 패키지로 해서 저희는 매우 신중한 입장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준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배준영 위원 세제실장님, 장특공제의 목적이

됩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물가상승 등을 반영해서 장기보유한 분들한테 양도세 부담을 완화시켜 주려는 장치입니다.

○**배준영 위원** 그러면 집에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공제를 많이 받아서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게 장특공제의 원래 목적 아니겠습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그렇습니다.

○**배준영 위원** 그러면 신중한 의견이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존경하는 유동수 의원님 안하고 태영호 의원님 안이 있는데 법안만 놓고 보면 장특공제의 어떤 목적성을 살리기 위한 것에는 어느 것이 더 부합하다고 보여집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유동수 의원님 안에는 이게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1세대 1주택에 대한 비과세 기준을 올리면서 반대로 뚫뚫한 한 채에 대해서는 조금 과세를 강화하자는 것이 2개가 같은 취지가 같이 붙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준영 위원** 실장님, 그게 아니고요, 12억 올리는 것과 별개로, 패키지로 본다고 하시지만 이 안만 놓고 보면 가액을 기준으로 장특공제에 대한 공제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오래 살면 살수록 주거안정성이라든지 그런 혜택을 주는 장특공제의 목적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그런데 여기에는 좀 정책적인 요소도 가미되어 있는 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물가상승률만 따진다면 1년에 1%, 2% 이런 식으로 쭉 올라왔는데 지금 이것은 1년에 두…… 보유량 거주 시, 지금 현행 제도 자체도 8%씩 공제율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배준영 위원** 제가 그래서 이걸 보니까, 이걸로 제가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까 양도차익에 따라서 10년 이상 보유한 사람보다 5년 이상 보유한 사람이 공제율이 적어지는 역전 현상도 지금 발생하고 있거든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배준영 위원** 그리고 지금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일부 언론에서 나온 바에 의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 양도세를 내는 방법이 189가지가 더 늘어난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누더기 법안으로 만들어 갖고 지금 지탄을 받고 있는데 이래서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떤 세무사님하고 통화를 해 봤어요. 그래서 요즘 양도소득세 신고 어떻게 하시냐고 제가 여쭙보니까 본인은 양포 세무사랍니다. 양도세 하는 걸 안 받는대요. 그러면 시세는 어떻게 되느냐 했는데 예전에는 10만 원 했는데 요즘은 보통 50만 원, 좀 썩 건 30만 원 받는다는데 이렇게 양도세를 누더기로 만들어 놓고 국민들은 도대체 이해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세무사들도 포기하게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기재부에서도, 물론 패키지로 해 갖고 묶어서 한다고 그러지만 이런 법안의, 이것만 갖고도 독립적으로 의견을 내실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입법 취지가 아까 세제실장 얘기한 대로 한쪽은 완화하고 한쪽은 좀 강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입법은 좀 패키지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유정준 위원님 발언해 주시고요.

○**유정준 위원** 자꾸 패키지 패키지 하는데, 패키지로 보는 근거가 뭐예요? 지금 이 법률안 순서를 보면 12번에 아까 논의한 1세대 1주택 및 1세대 1조합원입주권 양도에 관한 비과세 가액기준 상향 법안이라는 게 따로 있고 13번은 장특보유기간·거주기간 산정방식 공제율 조정 해 가지고 가·나 함께 논의되는 게 지금 1가구 1주택 장특공제 조정안이 하나가 있고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산정방식 변경이 따로 있는데 정부가 이렇게 분리돼 있는 법안에 대해서 왜 패키지라는 주장을 하시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그게 지난번에 민주당에서 의원총회를 한 다음에……

○**유정준 위원** 그러면 패키지라면 법안이 한꺼번에 올라와야지요. 이것은 따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부가 패키지라고 주장할 이유가 없지요, 그러면.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아니, 저희가 알기로는 9억에 대해서……

○**유정준 위원** 아니, 이것은 법안 순서에 따라서 얘기하는 거고 지금 분리돼 있잖아요. 정부가 스스로 패키지라는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별도 논의하고 있고요, 지금.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법안이 한 개의 법안으로 제출이 되어 있고요.

○**유경준 위원** 별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법안이 분리돼서, 지금. 그것에 대해서 자꾸 패키지 주장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김수홍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홍 위원** 저는 유동수 의원안이 비과세 감면을 완화하는 대신에 그 12억이 넘는 사람들이 양도차익이 많이 발생을 하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과세를 좀 강화하자는 취지인데 그게 상충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합리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장특공제에 따라서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게 양도차익하고 또 보유기간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혼란을 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12억으로 감면한 효과가 이것으로 인해서 반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한번 살펴보고 다음에 회의할 때 의견을 주시고.

그다음에 태영호 의원안은 1세대 1주택자뿐만이 아니고 다주택자에 대해서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면 100% 비과세하자는 것은 저는 이게 법 적용의 어떤 대상이나 형평성이나 집행 가능성에 있어서 좀 무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다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입장을 나중에 정리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박형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형수 위원** 아까도 배준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백팔십몇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긴다는 것은…… 이 법률은 기본적으로 명확하고 단순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규범력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놔서, 이해설을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15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항에 따르고 그다음에 그 나머지는 몇 %에서 몇 % 과세, 그 나머지는 또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해 갖고 국민들이 이것 도대체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읽어 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법률의 형식으로 기본적으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것은 이게 무슨 수식 계산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기본적으로 잘못됐다, 명확하게 단순한 메시지를 주고 마찬가지로 장기보유하면 이득이다, 불리하다 이게 명확하게, 단순하게 국민들에게 메시지가 가야지. ‘그러면 한 채를 가지고

내가 오랫동안 보유하면 이득이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느 시점에 가다 보면 우연한 사정으로 주택가격이 갑자기 높아지면 어느 시점에서는 불리하게 돼 버리고 어느 시점은 유리하게 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국민들한테 주는 정책적 메시지 자체가 이미 혼란이다, 저는 그렇게 봐서 지금 이 장특공제에 대해서 양도차익별로 나누어서 과세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책목표 간에 상충되는 측면이 아주 강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여기에 대해서 면밀하게 좀 살펴서, 배준영 위원님이 아까 어느 구간에서 역전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 역전 현상이 나타나는지 이런 걸 좀 명확하게 해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일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영 위원** 우선 태영호 의원안은 10년 이상 보유·거주 공제율이 50% 50% 하면 100%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1가구 1주택자뿐만 아니라 다주택자 다 포함이지요?

기재부, 그렇게 보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예.

○**정일영 위원** 그건 좀 문제가 있고요. 상당히 문제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동수 의원안을 보면 어쨌든 지금 거주기간 공제율 40%, 보유기간 공제율 40%, 맥시멈 80%까지 받고 있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현행이 그렇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렇지요? 그게 12억으로 올라가니까 소위 똥똥한 한 채 그게 걱정이 돼 가지고 유동수 의원이 이렇게 액수가, 양도차익이 올라가면 보유기간 공제율이 떨어지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장단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떤 효과가 있을지, 몇 채나 해당이 될지 또 고가주택 한 채 매매, 일반 시가로 20억 30억 40억 하는 그런 주택들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런 걸 정부 측에서 자료가 많이 있으실 테니까 심도 있게 분석을 해서 가지고 이걸 좀 더 깊이 있게 논의해서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류성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류성걸 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기본 취지가 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고 또 거기에 따라서 행정부에서도 답변을 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기본적인 취지는 어쨌든 주택을 오래도록 보유해서 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종 공제 세부적인 내용도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게 기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유동수 의원안의 표1과 표2를 보면 조금 전에 배준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어떤 구간에는 표1이 더 유리할 그럴 경우가 생깁니다. 표1은 사실 기본이고 또 거기에 추가해서, 보유기간이나 또는 거주기간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더 공제를 해주는 취지가 이 법의 기본 취지다 그렇게 보면 표1과 표2를 분리해서 ‘맥스 얼마’ 이렇게 하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태영호 의원안의 경우에도 지금 표에서 10년 이상을 50% 50% 하니까 100%다 이러는데, 물론 10년 이상 보유하고 10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는 100%지만 그것은 맥스입니다, 최대 그렇다는 이야기고. 뒤에 전문위원께서 표를 아주 상세하게 잘해 봤는데, 그래프까지 그려서 해 봤는데 그걸 보면 최대 10년까지 안 가고 중간에 매매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결들여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취지에 맞춰서 행정부에서 검토를 해야 될 게, 지금 현재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것은 1세대 1주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으로서 장기보유를 하는 동시에 또 새로운 대체주택을 매입했을 때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면 결국은 본인이 가고 싶은 데를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투기 목적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투기라 한다면 여러 주택 경우에는,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지금 이미 양도소득세가 엄청 중과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뭐를 좀 검토를 해 주십사 하나 하면 1세대 1주택일 때 장특공제를 뛰어넘어서 납세이연에 관련된 사항들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겠지요. 뚝뚝한 한 채라고 해서, 그러면 아주 크게 해 가지고 또 넓히고 또 넓히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니까 캡을 씌워서 과세이연을 하는, 그렇게 해서 1세대 1주택은 말하여 진짜 거주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같이 논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유동수 의원안의 경우에는 너무너무 복잡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189가지라는데 실제로 이것을 현실적으로 적용하려면 전부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형태로 해서 몇백 가지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조세제도의 기본 원칙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세부담이 공평해야 되고 또 세금으로 인해서 경제 행위·행태의 왜곡을 발생시키지 않아야 된다는 큰 두 가지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조세제도가 아주 간단하고 조세협력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안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매물을 내고 매입을 하고 이 과정 속에서 너무나 큰 납세 부대비용이 들어갈 뿐더러 또 오히려 서비스가, 세무사의 경우 포기해 가지고 ‘아예 안 한다’ 이렇게 되면 진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될 수 있으면 단순하게 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기본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배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배준영 위원** 세제실장님한테 제가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패키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재부에서는 신중한 입장이다,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계시지만 그러면 위원회에서 의결이 돼서 만약에 이게 12억 원으로 확정이 된다면 말씀하신 유동수 의원님 안대로 장특공제도 이대로 시행되어야 된다는 취지로 저한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그렇습니다.

○**배준영 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기재부 세제실장님이라는 자리는 아까 존경하는 류성걸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세정의 원칙을 지키고 그것을 준수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주축이 돼서 중심을 잡으셔야 될 분인데 패키지로 들어왔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 그걸 상쇄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누더기 법안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신다 그러면……

글쎄요, 세제실장님으로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1세대 1주택에 대

해서 9억에서 12억으로 올리게 되면 과표 자체가 밑 부분이 다 같이 위로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배준영 위원 예,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그래서 전반적으로 세부담이 완화되는데 그러다 보니 너무 고액의 양도차익을 남기신 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과 양도소득 간의 과세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이 법안의 취지를 저희가 이해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배준영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법안의 취지를 그렇게 이해한다는 건 알지만 세제실장으로서 세정의 기본원칙을 그런 식으로 이해해서 그것을 프랙티스를 한다고 주장하시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장특공제를 활용해 가지고 이런 많은 이익을 남긴 사람들한테 그것을 꼭 징벌적으로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원리에 맞지 않고요. 만약에 그런 것을 다른 방법으로 보완할 방법이 있으면 장특공제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대안을 제시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세제실장님이 할 부분이지, 장특공제를 왜곡해서 복잡한 방법으로 해서 누더기를 만드는데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수용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그러니까 국민의 법감정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한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에 아주 고가의 주택들이 있습니다. 아주 고가의 주택들이 있는데 물론 1세대 1주택이기는 하지만 그런 데서 양도차익이 30억이 나고 40억이 나고 50억이 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은 혜택에서 제외시킴으로써 과세형평을 도모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준영 위원 그런데 그걸 꼭 장특공제를 활용하는 이 안에 대해서 그렇게 패키지로 묶어서 해야 된다고 동의하시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문제라 그러면 세정 원칙에 맞춰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관련해서 입장을 다 말씀하셨고요 약간 이견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부 측에서도 이견이 있으시고. 그래서 이것은 같이 계속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11월에 같이 논의하니깐요.

170페이지 나항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명호 보고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산정방식 변경 관련입니다.

현행은 장기보유특별공제 관련 보유기간 산정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개정안은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기산일을 다른 주택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175페이지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최종 1세대 1주택 기간으로 한정하려는 개정안은 첫째,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소득세 부담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시행일—현재 개정안은 2023년 1월 1일부터입니다—이 도래하기 전에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매하도록 유도하려는 것으로 다주택자로 하여금 단기적으로 주택 매매를 촉진함으로써 주택시장 공급 확대에 기여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행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유사하게 규정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사이의 정합성을 제고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입니다.

176페이지입니다.

다만 주택 처분 후 1주택자로서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기 어려워진 다주택자는 장기적으로 주택 매매 시점을 연기하거나 증여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할 수 있고 이 경우 주택시장의 공급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강화 정책의 효과성과 매물잠김 현상 등 부작용 발생 여부를 함께 고려하여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이 안도 직전 안과 동일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을 전제로 이 안도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함께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신중하기 때문에 이 안건도 저희들은 매우 신중한 입장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토론해 주시기 바

합니다.

류성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류성걸 위원** 차관님, 아까도 그런 표현을 사용하셨는데, 장특 보유기간·거주기간 산정 방식에서 ‘앞에 무엇 무엇을 전제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하시거든요. 물론 전체를 논의하는 과정 속에 유동수 의원이 발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관련되는 것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논의를 하면 앞이 해결이 안 되면 논의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계속 아까 장특 때도 전제로 해서 그렇다고 하고 그다음에 보유기간 산정에 대해서도 전제로 했다는데, 이것은 전제로 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9억에서 12억으로 올리든지 아니면 그대로 가지고 있든지 또는 15억을 하든지 그것에 관계없이 논의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최근에 국세청의 홈페이지에서 갑자기 사라진 사항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차관님?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예.

○**류성걸 위원** 이게 뭐냐 하면 국가기관, 특히 기재부와 국세청 간에도 이렇게 소통이 안 되어서 지금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그런 문자들을 엄청 많이 받았을 거예요. 결국은 기재부가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서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것 같다는 생각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본래 장특의 기간이라는 것은 처음에 보유했던 시점, 최초 취득했던 시점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게 기본입니다. 기본인데, 여기에 관련해서 이렇게 기준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제가 아니고 이것만 검토를 하신다면 기재부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제가 답변드릴까요?

○**류성걸 위원** 차관이 답변하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아까 이미 다 말씀을 드렸고요, 종합적으로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류성걸 위원** 아니, 전제를 하지 말고 이야기를 하시라고 하는데 종합적으로 같이 봐야 되겠다는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소위원장 김영진** 세제실장, 부연설명하세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장특공제 제도는

1세대 1주택자한테만 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주택자한테까지 지금은 다 해 주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과도하다는 그러한 지적도 있고요. 또 이것의 문제점은 이렇게 했을 경우에 최종 1주택이 됐을 때부터 다시 기산을 하게 되면 이분이 10년을 또 채워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과 이 제도를 이렇게 발의한 취지 두 개가 다 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류성걸 위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아까 맨 앞에 나왔던 그 안과 같이 간다면 저희는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류성걸 위원** 그러니까 12억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류성걸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보니까 예를 들어서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소득 필요경비 계산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이면 해당이 돼요, 안 돼요? 취득한 날로부터 합니까, 아니면 1주택 된 날로부터 합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취득한 날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류성걸 위원** 취득한 날로 되어 있어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류성걸 위원** 그러면 그게 만약에 여러 주택일 때는 어떻게 돼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그런데 이것은 예외적인 특례 규정이기 때문에 이 규정이 먼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성걸 위원**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취득이 맞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1세대 1주택이 중간에 무주택자가 됐다가 1주택자가 됐다가 다주택자가 됐다가 팔아 가지고 또 1주택자가 됐다 이렇게 하는 여러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취득한 날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어떤 경우는 취득한 날부터 시작하고 어떤 경우는 편의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겁니까, 투기를 막기 위한 겁니까? 어떤 게 목적이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다주택자에 대한 부담을 강화하는 측면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건 저희가 만든 법안은 아니기 때문에……

○**류성걸 위원** 그러니까 의견을 들어 보는 거잖아요. 여기 계시는 건 결국 나중에 이 법이 확정 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집행도 해야 되고 설명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쭙보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는 측면과 이렇게 됐을 경우에 기산일 이후에 이분들이 또 오랫동안 집을 들고 있어야 하는 그런 측면이 같이 있다고 봅니다.

○**류성걸 위원** 그리고 제일 마지막 178쪽을 한번 보시지요.

178쪽의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1주택자가 됐을 때의 기간인 A 구간 또 다주택자가 됐다가 1주택자가 됐을 때 그 구간은 어디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합계하는 겁니까, 아니면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지금 현재 이 법안에 따르면 최종 1주택자가 됐을 때부터 기산하는 게 맞는데요. 예를 들자면 여기 A 기간과 B 기간을 합산해서 다주택자 기간을 빼고 이것만 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류성걸 위원** 하여튼 원칙을 좀 지켜 주십사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박형수 위원님 하시고 김수홍 위원님 발언하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종전에는 자산의 취득일부부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취득일부부터 기산을 했는데 이 규정이 들어오게 되면 다주택자의 경우에 판 시점부터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종전에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불이익이 되는 거지요, 다주택자들한테. 그런데 이 불이익이 되는 것을 아무런 원칙 없이 그냥 ‘이번부터는 1주택이 된 시점부터로 하자’ 이게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처분일 수 있는데 이렇게 법을 쉽게 만들 수 있는지.

그다음에 이 법이 이렇게 나온 게 지난번에 제가 국정감사 때 질의했던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인가 그것을 이렇게 바꾸는 바람에 그것과 맞춘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시행령 때문에 종전 국세청의 해석이라든지 기재부 해석 때문에 신뢰를 가졌던 수많은 국민들이 지금 의원들한테 다 문자 보내고 억울하다고 카페도 만들고 하고 있

잖아요?

그런데 그 잘못된 시행령 규정에 맞추려고 법안을 거기다가 만든다는 건 저는 이것 앞뒤가 완전히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이 법부터 제대로 맞는 규정인지 아닌지를 해 놓고 거기에 시행령이 어긋난다면 시행령을 고쳐야 되는 부분이에요, 거꾸로. 그런데 그 소득세법 규정에다가 맞춰서 법을 규정한다는 건 순서부터가 잘못됐고.

기본적으로 다주택자가 다주택을 가짐으로 인해 가지고 받는 불이익은 뭐냐 하면 1주택 이외의 다주택을 팔았을 때 양도세를 중과받는 겁니다. 그걸로 그 사람에 대한 불이익은 실현됐어요. 법은 그걸 상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법은 뭐냐 하면 마치 약간 연좌제 비슷하게 다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팔았을 때는 그것대로 제재를 받고 나머지 1주택에 대해서도 종전에는 취득일부부터였는데 ‘이제 너희들은 1주택이 된 시점부터다’라고 여기다가 또 불이익을 주는 거예요. 이중의 불이익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법을 만들 때는 그런 원칙적인 부분도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왜 그 규정을 만들어 놔고 그 규정은 어디에 불이익을 주는 것인지, 그 불이익은 양도세 중과받는 것으로 실현이 됐어요. 그러면 나머지 한 채에 대해서는 원래대로 원칙으로 돌아가야지요. 그것도 ‘너희들은 징벌적으로 나머지 한 채 남은 것도 여기서부터 기산하니까 불이익을 또 주겠다’, 물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입법 목적상 이렇게 하면 좀 빨리 처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목적 때문에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김수홍 위원님.

○**김수홍 위원** 차관님, 차관님은 유동수 의원안에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어떠십니까? 아까 세트로 하면 찬성한다 이런 취지로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이걸 개별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수홍 위원**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예.

○**김수홍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저희 당이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을 조금 완화하면서 다주택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부담을 좀 강화하는 측

면으로 설계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보는 사람에 따라서, 전문위원도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서 했는데 이렇게 하면 다주택자로 하여금 단기적으로 주택 매매를 촉진할 수 있다고 의견을 썼는데 뒤에 가서는 또 헛갈리는 게 이게 증여 수단으로 오히려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라고 썼고, 여러 가지 대비를 해 놔는데 이게 누가 봐도 명쾌하지가 않아요. 명쾌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논리적으로 이게 옳다라고 방어를 한다든가 이걸 쭉 얘기하기가, 자료가 있다든가 시장의 상황을 안다든가 그러지 못한 상황에서 일관되게 주장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한번 전반적으로 시장의 상황을 봐서 위원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유경준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유경준 위원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이걸 바꾸는 것은 하역튼 장특공제나 이런 것을 더 혜택을 안 주겠다는 식으로 해석이 되는데 여기 예외가 있어요. 2주택 이상, 일시적 2주택자는 제외하는 게 있잖아요. 거기 내용을 보면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분양, 혼인 등 이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것도 일시적 2주택의 경우에는 엇그저께 논의하다가 분양권과 입주권의 혜택 시기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은 왜 일시적 2주택에 분양권이나 조합원입주권은 빠져 있는지, 그것도 개념상으로는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될 것 같은데 그것 관련해서 엇그저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조합원입주권 범위 정비하고 그리고 조합원입주권 보유자의 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의 조합원입주권 대상의 범위 그리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강화, 이런 계속 강화하는 쪽으로만 흘러가고 있는데 주택시장 안정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반대로 불안정이고 매물잠김 효과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분양권과 조합원입주권이 왜 이 일시적 2주택에 해당이 안 되고 있는지 그리고 강화하는 데 대한 정책 효과나 방향에 대해서 확실하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위원님, 분양권하

고 조합원입주권은 같이 주택하고 동일하게 취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유경준 위원 취급하기 때문에 그런 건 이해하는데 그러면 일시적 2주택자로 취급을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왜 빠져 있냐 하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일시적 2주택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유경준 위원 여기에는 해당 사항이 없잖아요, 여기 지금 어디에 해당되요? 다른 주택을 대체……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다른 일반 조문에 의해서……

○유경준 위원 ‘대체취득하거나’에 해당되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그런 다른 조문에 의해서 똑같이 취급이 되는 겁니다, 주택과 똑같이.

○유경준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책 효과에 대해서 이걸 주택시장 안정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주택이 매물잠김 효과가 훨씬 크겠다는 것을 쉽게 예상하고 있고 그동안 정책 효과로 그런 것들을 봐 왔잖아요, 일부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이 법안 취지를 저희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9억에서 12억으로 올라가면 양도세 부담이 완화되는데 다주택자들도……

○유경준 위원 실장님, 그것은 주택 가격 상승하고 물가 상승에 따른 자연스러운 반영으로 해석하는 게 더 상식적이에요, 오히려. 그것하고 아까 말한 다른 법안하고 정부가 자꾸 연계시킬 필요가 없어요. 법안을 발의한 쪽에서 연계시킨다면 이해를 하는데 정부가 왜 정부 입법도 아닌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한 건에 대해서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김주영 위원님 하시고 배준영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김주영 위원 차관님, 이것 조금 다른 내용이긴 한데 다주택자가 1주택으로 다 팔았을 때 수도권 수요 공급이 다 맞습니까? 수도권의 다주택자들이 1주택만 남기고 다 팔았을 때 수요 공급이 다 맞느냐고요. 세대수와 주택수가 같냐 이 말이지요, 아니면 초과되거나. 수도권의 수요 공급이 맞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일단 물량이 나오면 그건 수급에 조금 플러스 요인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런데 그때……

○**김주영 위원** 아니, 플러스 요인이 될 수가 있지만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젊은 사람들이라든지 돈이 없어서 영끌까지 해도 집을 못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전세들이 공급될 수 있나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다주택자의 다주택이 어떤 물건이 나오는지, 말씀 주신 대로 서울의 고가 아파트가 나올 건지, 아니면 다주택도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중에서 제일 싼 게 나올 건지……

○**김주영 위원** 아니, 어떻게 되든지 간에 수도권 세대의 수요 공급들이, 지금 1인 세대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수요 공급이 맞아서 전 부 집을 한 채씩 다 사서 들어갈 수 있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다 한 채씩 사서 들어가기에는 물량이……

○**김주영 위원** 그러려면 사기 전에 우선 돈을 모아서 전세를 얻고 거기에서 또 전세를 들어서 살다가 돈이 모이면 다시 집을 구입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지금 완전히 막히는 것 아니에요, 이것?

전세대란들이 일어난다고 하고 또 한쪽에서는 지금 오히려 전세가 남아돈다고 이야기하고 서로 엇갈리고 있는데, 유추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런 전세에 들어가서 다음 단계로 도약하려고 하는 전세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기회가 없어질 수도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거기까지의 어떤 직접적인 연관성은…… 전세량 매매량 어떻게 보면 대체 관계……

○**김주영 위원** 그런 것을 정책 당국에서는 사실 깊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저는 약간 차원이 다른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김주영 위원** 지금 이것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그러니까 결국 전세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주택 물량이 많이 나와야 되고요. 주택 물량이라는 것은 두 가지에서 나오는데 신축 물량이 많이 나와야 되고요.

○**김주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요·공급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공급 대책도 사실은 같이 나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전부 1주택을 가졌다고 하면 한 채만 남기고 다 팔았을 경우에 전세 살려고 하는 분들이 갈 곳이 없어진다는 거지요. 그러면 다시 외곽으로 외곽으로 밀려서 나가야 되는, 수도권에서 그런 현상들이 지금 생기고 있잖아요? 이해가 안 됩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기존에 지금 한 1800만 채 정도 있는데 거기의 800만 정도가 무주택자고요, 그다음에 한 800만 정도가 1세대 1주택자고요, 한 370만 정도가 700만 채 갖고 있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370만 정도에서 한 400만 채를 내놓으시면 사실은 무주택자 중의 한 400만 채가 갈아타실 수 있는데 그것은 그만큼 여력이 있어야 갈아타실 수가 있는 부분……

○**김주영 위원** 그렇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력이 있느냐가 문제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예, 그러니까 그것은 소득들이 있으시면서 점점, 말씀하신 대로 사다리를 올라타 가지고 가셔야 되는 거지요.

○**김주영 위원** 그러니까 다음 사다리로 갈 수 있는 여건들을 정부가 심각하게 고려를 해서 정책들을 펼쳐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들을 많이 하신 부분인데 2주택 이상자들이 자산취득일부터가 아니고 1주택이 된 날부터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것은 과도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도 공감하나요, 공감하지 않나요? 지금 이 유동수 의원님 안에 대해서 예외, ‘2주택 이상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이 조항에 대해서 너무 좀 과도한 것 아닌가요, 재산권에 대해서 침해하는 정도가?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양 측면이 다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까 박형수 위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계셨던 분들의 어떤 기득권이 나 법적 안정성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할 거냐 아니면 또 전체적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부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가져가서 기존에 주고 있는 혜택들을 어느 정도까지 경감시킬 것이냐 결국 그런 전체적인 입법 정책적인 목적에서 판단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주영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고려할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다음 배준영 위원님, 유경준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배준영 위원 차관님,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주택 정책을 꽤 많이 수정하면서 집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결론에 이른 게 주택값을 안정시키려면 결국은 주택의 공급을 늘려야 되겠다 이런 결론에 도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집을 많이 짓는 것도 한 방법이지만 기존에 갖고 있는 집을 어떻게 하면 빨리 시장에 내놔서 그것을 시장에서 말하자면 공급하고 소비하고 이런 게 중요하다 이런 결론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지요, 그런 원칙을 갖고 있다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정책이라는 게 있으면 그 메시지는 단순하고 명료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퇴로를 만들어서 주택을 팔게 해서 공급을 늘리겠다는 원칙이 있다고 그러면 그 방법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유동수 의원님의 안을 패키지로 보신다고 그랬는데—패키지로 본다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이것은 12억으로 가액을 올려서 공급을 늘리는 듯하다가 장특 공제를 해서 다시 공급을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송한 말씀이지만 하나 마나 한 법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속기와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정책이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패키지로 보고 하면, 이게 돼야 된다고 그러면 정말 입법 파잉 시대에 사는 우리들이 ‘이런 것을 하려면 굳이 뭘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의 공급을 늘려서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원칙이 있다고 그러면 정부는 그 원칙대로 밀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익원 사실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공급, 기본적으로는 구조적으로 공급이 확대가 돼야 되고요.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는 또 수요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이런 심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김주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수요라는 게 청년층, 신혼부부 하면 30만 세대입니다, 30만 세대. 그런데 이게 1년 차, 2년 차, 3년 차…… 한 8년 차까지 있으면 보통 8년 정도에 구매가 이루어지는데 만약에 여기서 불안하면, 30만 곱하기 8 하면 240만이 다 같이 한꺼번에 불안해서 나오면

시장이 감당을 해낼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책들을 다 해야 되고……

말씀 주신 중에 공급 같은 경우도 신규 주택 공급도 중요하고 재고 주택의 원활한 수급 같은 것도 당연히 중요한데 지금 여기서는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를 양도세를 완화하는, 초기에 그것이 풀린 다음의 얘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신중하다고 입장이 있기 때문에 앞부분 어떻게 할까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앞부분도 1세대 1주택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물량이 더 많이 늘어난다기보다는 결국은 1세대 1주택이 팔고 또 새로운 주택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플러스마이너스 하면 제로가 되는 겁니다. 결국 거기서 누군가의 바꿈이 일어나는 거지 그게 새로운 물량이 더 터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 와중에 거기서 막 서로 바꾸면서 가격이 올라가면 거기에 또 아까 말씀드린 대기 수요들이 갑자기 올라타기 시작하고 추격 매수가 일어나면 시장이 더 불안해질 수 있어서 그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런 것들은 판단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배준영 위원 차관님, 제가 좀 사족 같지만 ‘플러스마이너스해서 제로’라고 말씀하셨는데 글썄,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정책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이루어 나갈지는 저도 궁금한데…… 저도 좀 고민을 할 텐데요, 기재부에서도 좀 더 고민을 하셔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익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유경준 위원님 그다음에 정일영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유경준 위원 이게 좀 헷갈리고 복잡해서 그런데 어제 관련되는 법이 있어서 그때부터 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170페이지, 현재 논의하고 있는 1가구 1주택…… 일시적 2주택 제외에 분양권하고 아파트 조합원입주권도 제외 사례에 포함된다고 했고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

지금 다시 어제 논의한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12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120페이지에는 1세대 1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강화라고 그래서 기존의 1조합원입주권 이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는 비과세한다고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빼고 있어요. 물론 아파트 입주권과 주택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금 1가구 일시적 2주택에는 둘 다 똑같이 해당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입주권을 중심으로 보든지 주택을 중심으로 보든지 간에. 그러면 두 개가 지금 안 맞아요. 두 개가 만약에 일시적 2주택 요건에 분양권과 조합원입주권을 포함시킨다면 주택을 먼저 하든지 조합원입주권을 먼저 하든지 간에 이것은 동일하게 취급돼야지요.

세제실장님.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위원님, 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보유기간 재기산 조항에서 일시적 2주택에는 입주권하고 분양권이 주택처럼 다 포함이 되어 있고요.

○**유경준 위원** 예,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렇게 이해했는데, 그러면 120페이지에 있는 것으로 가서 주택을 우선 팔든지 아파트 입주권을 먼저 처분하든지 간에 1세대 1조합원입주권에 대해서는 똑같이 비과세 요건으로 해당을 해야지 하나는 왜 빼냐 하는 거예요.

122페이지입니다.

거기에는 1세대 1조합원입주권 양도소득세 비과세 강화를 해서 주택의 분양권이나 조합원이 있는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빼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유경준 위원** 그러면 두 가지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은 주택을 새로 마련하기 위해서 일시적인 거라고 동일하게 봐야지요. 그러면 하나는 빼고 하나는 안 빼고 하는 것은 안 맞잖아요. 주택을 기준으로 하면 빠지고 조합원입주권을 기준으로 해서 주택을 먼저 팔면 안 된다고 그러고……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나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질문 취지를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 했는데요.

○**유경준 위원** 답변하실 분, 과장님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해하고 계신 분 있으면 답변해 주시지요.

두 개가 앞뒤가 안 맞다고 저는 판단했는데 이따 확인하시고 한 번 더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경준 위원** 두 개가 똑같은데, 일시적으로

주택을 먼저 하든 입주권을 먼저 하든 그런데 주택을 먼저 팔면 이것은 인정을 안 해 주겠다는 거예요, 입주권이 있고. 그 부분을 확인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소위원장 김영진** 정일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지요.

○**정일영 위원** 차관님께 이것에 대한 정부 측 의견을 좀 애매하게 들었는데 그것은 묻지 않고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하고 정부 측하고 좀 비교를 해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동수 의원안에 보면 집이 두 채 있는데 하나는 10년 하나는 5년. 그런데 10년짜리를 먼저 팔았어. 그러면 1주택 되는 시점이 전에는 5년이었는데 판 시점으로부터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해가 되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예.

○**정일영 위원** 그런데 여기 단서조항에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분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외’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물론 유동수 의원안이 정부안이 아닌 것은 알아요. 그렇지만 정부에서 검토를 했으니까 이해를 하셨을 것 아니에요, 또 전문가시니까. 이 얘기는 그렇게 두 채인 경우에 한 채를 팔았어. 예를 들어서 10년 팔고 5년짜리는 그냥 보유하고 있어. 그런데 갑자기 상속을 받게 됐어. 그런 경우는 그 시점이 아니라 5년을 인정해 준다 그런 거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그렇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 말이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정일영 위원** 그래서 이것을 대통령령에 넣는다면 아까 분양권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예를 들어서 새로 이렇게 하는 것…… 이렇게 되면 대통령령에서 그 기간을 정하나요, 3년이면 3년 이렇게? 상속 이런 경우는 정하지 않겠지. 그냥 바로……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이 조문은 최종 1주택부터 기산하는 게 아니고 원래 취득일부터 계산을 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정일영 위원** 취득일로부터 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계산이 분양권……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는 경우, 그러니까 집을 한 채 팔았잖아요. 한

체가 됐잖아. 그런데 다시 분양권을 취득했잖아. 그래서 집은 아파트 건설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단순히 그런 경우는 3년 동안 1주택으로 해 가지고 세금이 좀 감면되잖아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1세대 1주택으로, 일시적으로……

○정일영 위원 똑같이 이것도 이렇게 한다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정일영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확인할 게 정부 측에서는 이 유동수 의원안의 보유기간 원칙, 양도일로 바꾼 것의 취지, 효과 뭘로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한 이유가?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1세대 1주택이 현재 기준으로 9억까지는 비과세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일영 위원 차관님, 왜 유동수 의원이 이렇게 이것을 발의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유?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기본적으로 다주택에 대한…… 일단 사람들이 처음으로 다주택을 가질 거나 말 거나 의사결정을 할 때 다주택을 갖는 게 부담스럽다, 첫 번째는 그게 되겠지요, 밖에 있는 분이 다주택이 되려고 그러면. 왜냐하면 이런 조치들 때문에 다주택으로 가는 게……

○정일영 위원 제가 말하는 게 빠르겠어요.

핵심은 이게 법이 통과돼서 시행은 2023년 1월 1일이잖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예.

○정일영 위원 그러니까 2022년, 내년 1년 동안 매물을 유도한다는 데 효과가 있겠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다주택자들은 말씀하신 대로 매물 효과가 있고……

○정일영 위원 그러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또 안 파신 분들은 더 부담이 있고 그다음에 새로 들어오시는 분은 차단하고……

○정일영 위원 아니, 이 법안의 취지는 내년 1년 동안은 현재같이 취득일로부터 그 계산이 카운팅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년 1년 안에 팔면 현재의 규정대로 감면받을 수가 있고 내년 못 팔고 2023년부터 되면 1주택 시점이 확 줄어들리니까 감면 폭이 주니까 내년에 매도 물량을 시장에 내놓게 하자 그 취지가 가장 큰 거 아니에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예.

○정일영 위원 그것 아니에요. 왜 정부 측이 시원하게 지금 답변을 못 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정일영 위원 아니, 여러 가지가 아니라……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제일 직접적인 것은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을 생각하니까 그렇지 또 중장기적으로 보면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을 막는 효과도 꽤 있습니다.

○정일영 위원 아니, 그것은 그다음 문제고.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그 효과가 저는 크다고 봅니다.

○정일영 위원 아니, 이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리고 자꾸 인상 쓰면서 얘기하지 말고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죄송합니다.

○정일영 위원 뭐 그렇게 인상을 쓰고 얘기해요, 국회에서 좀 편하게 얘기하지.

(웃음소리)

인상은 국회의원이 써야지 왜 차관이 인상을 쓰고 있어. 이상해, 오늘 보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죄송합니다.

○정일영 위원 참 이상하네. 왜 차관이 자꾸 인상을 써요. 내가 뭐 차관을 겁박했나? 묻잖아요. 자꾸 너무 주장만 하지 말고.

○박형수 위원 모르는데 자꾸 물으니까 그렇지.

○정일영 위원 아, 그래서 그런가?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유동수 의원이 이렇게 발의했지만 정부 측에서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내년에 물량이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나올 것 같다 또는 안 나올 것 같다, 또 2023년 이후에도 우리 전문위원은 매물잠김 현상이 나올 게 우려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현상도 있을 수가 있어요, 매물이 더 빨리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첫째, 그런 좀 객관적인 수치를 가지고 효과 이런 것을 분석했느냐, 그것을 가지고 이 법안이 그런대로 타당성이 있는 것 같다 없는 것 같다, 그냥 막연한 일반적인 얘기를 하지 말고 객관적인 분석과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고.

두 번째, 이것도 필요한 것도 같은데 그런데 문제는 세제실장이고 기획재정부에서 어느 정도 법령을 다 총괄을 하시니까, 법제처인가 거기 물

어보시든지 해서 이런 입법례가 또 다른 법령에 있는지 없는지, 더 나아가다면 외국에서는 부동산 관련되는 이런 것이—주식도 그렇고—이런 시점 계산에 관한 외국의 예는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면 그것을 분석을 하셔서 위원님들한테 객관적으로 뭐를 좀 설명을 해 주셔야지, 일반적인 그냥 부동산 정책 얘기 계속 그런 얘기보다는.

안 그래요? 분석을 해 보거나 조사를 해 보셨어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입법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례는 바로 이 소득세법에 있고요. 지금 9억까지 비과세되지 않습니까?

○정일영 위원 아니, 입법례가……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1세대 1주택……

○정일영 위원 지금 유동수 안처럼 그 시점 카운팅하는 그런 입법례가, 팔았을 때 그때부터 카운팅되는 다른 법의 예가 있어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정일영 위원 무슨 법이에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다주택자가 집을 다 팔고 한 채가 남았을 때 9억 이하의 비과세되지 않습니까? 그 비과세 시점을 처분 시점, 그러니까 최종 1주택이 된 시점부터 하게 돼 있는 것에 맞춰서 이 법안도 나왔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것은 좀 다른 얘기 같은데.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그러니까 비과세는 최종 1주택부터 해 주는데 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처음부터 다 인정을 해 주느냐 그런 문제의식에서 이 법안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입법례는 있는 겁니다. 이것은 거기에 형평을 맞춰 주기 위한 그런 차원이고요.

두 번째, 이것을 가지고 얼마나 매물이 나올 것이냐 하는 객관적 수치 분석은 여기 위원님들 많이 계시지만 기재부가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모든 데이터를 갖고 전지전능해서 이것을 다 할 수 있었으면 좋은데요 사실은 그게 좀 어렵고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내년, 2023년 1월 1일부터 다주택자는 최종 1주택서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다 그러면 일정 부분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미리 매물을 파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이 기간이 도과를 하게 되면 너무 세금이 과해지니까 안 팔겠다 또는 1주택이 되더라도 오래 들고 있어야 되거든

요, 이 사람이, 10년 채워야 되기 때문에, 비과세를 받으려면, 장특공제를 많이 받으려면. 그다음에는 매물잠김 현상이 있을 수도 있고.

그것은 상식적으로 이 법 시행 전에는 매물유도 효과는 있는 것이고요, 끝나고 나면 매물잠김 효과 쪽으로 바뀌게 되고 그렇습니다.

○정일영 위원 잠김 효과가 더 크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논의된 게 벌써 몇 달 됐잖아요. 한 6개월 정도 됐나. 그래서 기재부에서 나름대로, 부동산특별위원회에서도 논의도 되고 그랬으니까 실무적으로는…… 정확한 게 어떻게 이게 카운팅이 되겠어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는 분석·검토를 했나 안 했나 그래서 물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나와야 이 조문이 뭔가 효과가 있고 국민들한테 어필하는 게 있어야 이게 통과가 되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재부, 정부 당국의 검토의견을 물어본 건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저도 간략하게 질의를 하면 178쪽을 보면 그림 표 있지 않습니까. 그림이 그 예를 주택 A·B, 처음에 한 채가 있다가 중간에 2채가 됐고 한 채를 팔아서 한 채가 돼서 기산시점을 1주택자 B, 한 채로 됐을 때부터 한다 이게 이 법 취지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전자에 1주택을 취득했던 시기에, 그제한 5년이었다, 이게 이제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1가구 1주택에 관한 시점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봤을 때, 그러면 아까 약간 언급을 했었는데 1주택 기간을 A 구간과 B 구간을 플러스해서—약간 융합이지요—조합하는 형태는 현재 법체계상이나 현장에서 적용할 때 문제가 되나요, 세제실장님?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오히려 지금 현재 법안은 주택2를 양도한 시점부터 되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주택 A 기간까지 합치는 그 부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소위원장 김영진 그렇지요. 1주택 기간이지요, 그러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통산해서 1주택 기간.

○소위원장 김영진 총 1주택 기간.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소위원장 김영진 뒤에 말씀해 주세요, 국장님.

○기획재정부재정소비세정책관 박금철 재산소비세국장이 잠깐 설명드리면 지금 현재 법안 자체

에는 이 내용이 없는데 전문위원실에서 만약 이게 입법화된다면 이렇게 하는 것도 검토를 해 봐야 된다 이런 취지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아까 세제실장이 설명했던 재기산할 때, 거기에는 지금 어떻게 돼 있냐 하면 다주택을 해소한 시점부터 재기산한다 돼 가지고 만약에 이 그림대로 하면 A는 빠지고 지금 B부터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그래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1가구 1주택 기간이 A 기간이 빠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다주택 기간을 제외한 A 기간과 B 기간 1주택 기간을 조합해서 적용하는 것이 법체계상이나 현장 양도소득에 관련한 부분들을 할 때 문제가 되냐 안 되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현장에서 적용이 가능하느냐.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익원 법체계 그것도 한번, 위원님 주신 것도 짚어 봐야 될 것 같고요. 1세대 1주택 비과세할 때 그때도 그러면 동일하게 적용할 거냐 그것도 결국은 보유기간 2년, 거주기간이 조정지역은 2년 이것을 채워야 되는데 이렇게 끊어졌으면 그것도 같이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이냐, 이게 또 쌍으로 연결돼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그렇지요.

전문위원 의견 한번 쥬 보세요.

○전문위원 정명호 저희가 이런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시를 한 거고요. 입법 조문화할지, 어떤 사례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검토가 필요한 거예요?

○전문위원 정명호 저희 입장에서는 1세대 1주택을 이렇게 보유한 기간으로 한다면 그 이전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도 감안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의견 제시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뒤에 배석한 국장, 검토의견 있으면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 박금철 실무적으로 만약에 이게 입법화됐을 때 집행이 가능하냐 이것은 물론 저희가 국세청하고도 협의를 해 봐야 되지만 훨씬 더, 과거의 1주택 기간이었던 것까지 다시 추적이 가능한지 이런 것까지를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복잡해질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국세청 한번 확인 좀 해 봐

주세요. 오늘 합의가 될 성질이 지금 아니라서, 위원님들께서 각자 의견을 많이 주셨고 여러 의견들이 지금 있어서 이것은 같이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태영호 국회의원의 발의안, 유동수 국회의원 발의안이 풀어 펼쳐져서 논의를 하기 위해서 가나다로 분리해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법안에 대해서 오늘 오전부터 지금까지 마무리한 겁니다.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지요?

○류성걸 위원 지금 소득세법 자료는 마무리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제 저희들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소득세법 중에 금융투자소득 과세대상 주식 등과 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 등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를 해 갖고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는 게 어떻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니면 다음에 이야기할 겁니까?

○소위원장 김영진 다음에…… 저번에 많이 좁혔기 때문에 진도를 나가고 그것은 한 번 더 어차피 논의를 해야 돼서 그렇게 진행하시면 좋겠는데요.

○류성걸 위원 그러면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예, 어차피 이것은 11월에 같이 해야 되니까.

○배준영 위원 이게 아주 관련된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기재위 그리고 조세소위는 처음이라서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기재부 차관님한테 한번 여쭙볼게요.

문재인 정부의 가장 아픈 부분이 부동산 정책이고 스물여섯 번이니 스물여덟 번이니 정책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진짜 궁금한 것은 정책 소비자들이 정책 공급자들이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하여튼 정책이 안 먹히고 부작용이 나오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정책을 실행할 때, 아까 존경하는 정일영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전지전능한 것은 아니지요. 전지전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어도 저희 위원들이 판단할 만한 어떤 객관적인 정도 수준의 자료는 있으면서 그게 A가 되든 B가 되든 C가 되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서 적어도 기재부 안에 그런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팀이 있는 것인지, 또 여론이라도, 정책적인 어떤 그런 것을 다 드러

내지 않고라도 좀 할 수 있는 게 있는 것이지, 그리고 행태경제학적으로 그런 것을 미리 예견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정책적인 수단이 있는지. 그런 실행할 수 있는 부서가 있습니까? 각 부서에서 그 현안에 대해서 다 그렇게 정하는 건가요?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계량적으로도 보는 팀들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런 부분은 말씀 주신 대로 결국에 시장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시장과 호흡하고 시장의 의견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여러 시장 전문가들이라든지 그런 쪽과 만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심지어는 유튜브 같은 데 나오는 얘기도 듣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그런 것을 보고 있고요.

통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부동산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것도 좀 보고 그것도 다주택자나 이런 식으로 여러 개로 쪼개서도 보고, 다양한 측면으로 보고 있는데 말씀 주신 대로 결국은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부분이 관건이고 그 부분을 좀 더 저희들이 잘 보려고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김수홍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수홍 위원** 보유기간하고 거주기간을 기산하는 시점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세대가 다른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기 때문에 아까 1주택 A가 포함이 된다 이렇게 말하기는 저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전문위원이 기재부에 얘기하지 말고 우리 법제실에 얘기해서 한번 이런 사례를 확인해 보고 거기의 유권해석을 받아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정부한테는, 시장에서 어떤 영향이 나타날지, 이게 효과가 어떻게 될지 이것은 우리가 참고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것을 정부가 판단하기는 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것을 결정을 하는데 가지고 있는 보유자가 이것을 매매를 할지 안 할지를 판단하지. 세금도 자기가 많이 내고 팔 사람도 있고 적게 내고 팔 사람도 있어서 저는 시장의 다변화를 다 고려할 수는 없고 정부가 입장을 내고 나서 우리 여야 위원들이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그게 여야 간에 쟁점이 된다면 그게 원내대표까지 갈지 당대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 수순을 밟아서 우리가 결정하면 된다고 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어차피 또 논의를 하실 거니까요, 그렇게 합시다.

○**류성걸 위원** 예.

○**소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1권은 이렇게 하고, 2권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순서대로 검토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명호** 법인세법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스펙(SPAC) 소멸합병이 가능하도록 법인세법을 개정하여 적격합병 과세이연을 허용하자는 것인데요.

지금 합병이 있고 적격합병이 있고 적격합병에 몇 가지 예외 조항을 해서 스펙 존속합병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스펙 존속합병이 되면 특례가 피합병법인 같은 경우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보고 합병법인은 합병매수차손익이 과세이연이 됩니다. 그래서 자산 처분 시 과세가 되는 게 현행 제도고요. 우측에 보시면 스펙 소멸합병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도입하자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기업인수목적회사—흔히 말하는 스펙입니다—스펙을 피합병법인으로 하는 합병에 대해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을 계속 영위하지 않더라도 적격합병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규정하여 스펙 소멸합병에 대한 과세이연 특례를 도입하자는 것인데요, 현행은 스펙 존속합병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논의가 된 이유는 뭐냐 하면 스펙 존속합병을 했을 때 비상장기업의 법인격이 소멸됨에 따라서 기존 법인격을 스펙 법인격으로 변경·재등록하기 위한 불필요한 업무가 발생하고, 그래서 영업상 차질이 발생하니까 정부는 스펙 존속합병 외에도 스펙 소멸합병도 허용하자는 취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스펙이라고 하는 기업인수를 전문적으로 하는 SPC 회사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스펙 존속합병 그래서 스펙이 피인수기업을 인수해 가지고 피인수기업이 없어지고 스펙화되는 그런 단계만 인정을 했는데 한국증권거래소에서 22년부터는 스펙 소멸 방식도,

스팩이 들어가고 기존의 피인수기업화되는 이런 구조를 새로 신설을 한다고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그런 방식도 지금 스팩 존속합병 시 부여했던 과세특례를 새롭게 도입되는 스팩 소멸합병에 대해서도 허용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김수흥 위원** 이 제도를 도입하면 스팩 존속이 많아집니까, 스팩 소멸이 많아집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아마 스팩 소멸이 많아진다는 것 같습니다.

○**김수흥 위원** 불편이 없어지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세제실장님께서.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법인의 합병이 이루어지면 주식이나 자산의 양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두 법인이 합쳐서 시너지를 내면서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인데 양도소득세 문제 때문에 합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세법상 적격합병이라는 제도를 두어서, 이 두 법인이 합병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계속 사업을 하는 계속 법인이다 이런 경우에는 적격합병이라는 제도를 두어서 양도소득세를 나중에 처분할 때 내도록 과세이연 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이 스팩이라는 것이 상장 절차를 좀 간소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SPC입니다. 그런데 이 SPC라는 것은 계속 무슨 실질적인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상장 절차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이게 최대 3년까지 존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적격합병을 인정하되 지금 적격합병의 요건을 조금 낮춰 주자는 건데요.

적격합병의 요건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페이지 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법 44조 2항 1호인데요,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과 합병이어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합병대가의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이 80% 이상이어야 되고 합병법인의 모회사의 주식의 가액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로서 피합병법인 주주 등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그 주식 등을 보유해야 되고, 그다음은 사업을 계속해야 되고, 그다음 4호는 고용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이런 요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팩은 상장 절차상의 제도이다 보

니까 1년 이상 사업 영위를 해야 된다는 이 요건이 현재 이 존속합병의 경우에 빠져 있습니다, 배제되어 있고. 두 번째, 그 사업을 계속해야 된다는 요건도 배제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 1페이지에 있는데요, 요건이. 세 번째, 계속 주식을 보유해야 된다 이 요건도 빼 주고 있는데 소멸합병 시에도 똑같이, 존속합병과 같이 이 요건들을 배제해 주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적격합병으로 인정해 줘서 상장 절차를 간소화시켜 주자 그런 취지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말씀해 주십시오.

○**류성걸 위원** 지금 결국은 상장을 쉽게 해 주자는 그런 취지면 꼭 이렇게 스팩을 활용해서 합병을 통해서 할 필요가 있겠나요? 오히려 유망한 기업을 직상장하는 방안을 생각하면 되지 않나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제도 같은데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 없이 유망한 중소기업에 예외를 뒀서 이러이러한 경우에 직상장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양도소득세라든지 세법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다 해결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상장을 한다는 얘기는 공개적으로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상장 기업이 상장이 된다는 것은? 결국은 여기에 상장이 되면 이 기업의 주식을 사고팔고 하는 사람들이 ‘이 기업은 굉장히 뭔가 안정적인 기업이다. 안전한 기업이다’라는 것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상장할 때는 심사를 굉장히 까다롭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측면 때문에 상장을 엄격하게 봐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들이 투자해도 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상장 심사를 잘해서 좋은 기업만 리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스팩이라고 해 가지고 상장을 막 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똑같은 상장 절차를 밟는데 IPO 할 때 자금을 모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자금을 모으는 절차만 미리 스팩이라는 이 기구를 통해서 자금을 모아 놓는 것뿐이고요.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외국에 있는 제도를 다 저희가 도입을 한 겁니다.

○**류성걸 위원** 결국은 스팩이라는 게 완전히 폐이퍼컴퍼니고 상장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써 활용하는 거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여러 가지 절차라든지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IPO를 하게 됐을 때의 책임, 그러니까 IPO 할 때 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하여튼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런 유망한 기업에 대해서 직상장해서 하는 방법들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사실은 적격합병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따라서 예외를 뒀서 전부 다 인정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기존에 있던 것을 직상장하는 요건을 조금 더 완화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그러니까……

○소위원장 김영진 김주영 위원님.

○류성걸 위원 아니, 답변을 한번 듣고요.

○소위원장 김영진 답변하시고 김주영 위원님.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그러니까 상장이라든지 직상장을 하더라도 공모 절차라든지 이런 절차들은 다 거쳐야 되고 또 상장 심사를 받는 데 오래 걸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차피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간간하게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단축시키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입니다, 이것이.

○김주영 위원 차관님, 페이퍼컴퍼니에는 근로자가 있나요? 여기 스펙이 페이퍼컴퍼니를 의미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 놔는데.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없다고 합니다.

○김주영 위원 전혀 없습니까? 아니, 왜냐하면 법인세법 44조 2항의 네 번째 보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라는 그런 조항이 있는데요. 여기 전문위원 검토해 놓은 것을 보면 승계한 사업의 지속의무를 면제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승계 지속의무를 면제했을 경우에 근로자가 있다고 하면 근로자들 고용이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순수하게 그냥 페이퍼컴퍼니입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페이퍼컴퍼니입니다.

○김주영 위원 전문위원 그렇게 보십니까?

○전문위원 정명호 예.

○소위원장 김영진 이 법 취지의 내용이 합병과 소멸 시에 기업의 여러 과정들을 용이하게, 편하게 해 주는 형태로 소멸 시의 규정들을 합병 최

초 시기와 함께 해 준다는 그런 취지로 아마 정부 측에서 현장의 여러 가지 얘기를 가지고 발의한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 특별하게 이의 없으면 같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도로 설계해서 진행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홍 위원 한 가지만……

○소위원장 김영진 예, 말씀해 주시지요.

○김수홍 위원 이게 신규 제도 도입인데 그동안 스펙 존속합병을 정부가 추진했던 게, 비상장 기업을 일반 투자자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스펙을 통해서 거기서 점검하고 이게 투자자들에게 충분히 알릴 수 있는 기회도 알려 주고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지금 이렇게 하게 되면 투자자들은 모르는 상태에서 비상장 기업이 자기들 돈만 벌려고 상장에 매달려 가지고 나중에 많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면 누가 책임집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스펙이라는 게 최대, 그러니까 이게 어떤 자금의 덩어리거든요. 자금의 덩어리인데 이게 3년 동안 상장을 못 하면 자동으로 청산이 되고 여기에 있는 돈은 그대로 투자자들에게 분배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이것은 대형 증권회사가 관리·운용하도록 그렇게 지금 금융위원회에서—관련 규정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수홍 위원 저는 투자자 보호가 안 될 것 같아요.

○박형수 위원 나도 하나 물어봅시다.

스펙 기업으로서 적격이나 아니냐 이것은 어디서, 예를 들어서 인가를 해 준다거나 그 요건을 심사한다거나 이런 기관은 있나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증권거래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형수 위원 증권거래소에서?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정일영 위원 저도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쭙볼게요.

이게 스펙 소멸합병 시 적격합병 과세이연 허용인데, 소멸합병은 내년 3월? 언제부터 시행되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내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정일영 위원 1월이에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예.

○정일영 위원 그러면 이런 게 1년에 몇 건이나

돼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스펙 신규 상장인 20년 같은 경우는 19건이……

○정일영 위원 19건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예.

○정일영 위원 그러면 소멸합병도 한 19건 되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소멸이 더…… 애로가, 지금 이쪽 존속이 애로가 있다고 그러니까 아마 소멸 쪽으로 더 많이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러면 과세이연은 언제까지 이연이 되는 거예요, 과세이연 허용인데?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과세이연은 주식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되는 겁니다.

○정일영 위원 처분하는 시점? 그러면 그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언제든지, 5년 10년, 하여튼 그때까지는 과세가 이연되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적격합병일 경우에는.

○정일영 위원 적격 할 때까지? 그러면 그 과세가 작년, 올해 기준으로 보면 과세 금액이 대충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그런데 이게 주식을 처분해야 나중에 잡힐 텐데……

○정일영 위원 아니, 물론 그렇지만 통상 작년이나 금년 이런 예들이 있을 테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담당 국장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 정정훈 소득법인세정책관입니다.

지금까지 스펙이 일어났던 것은 주로 소규모 합병에 관해서만 일어나고 있었고요. 그래서 스펙이 신규 상장된 것은 한 19건인데 매년 그게 합병을 통해 가지고 최종적인 상장까지 된 경우는 연간 한 10건에서 15건 정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에 대해서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요. 아마 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합병을 하지 않았다면, 그냥 직상장을 했거나 아니면 그냥 비상장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면 거기에는 주식이든 그 안에 있는 기계장치든 건물이든 실제로는 아무런 매도는 일어나지 않은 거거든요. 그냥 단지 우리 세법상으로 명의가 바뀌면 판 결로 본다면

는 규정 때문에 어쨌든 세액이 발생했고 그런데 그것을 과세를 하면 실질적으로 기업한테 부담이 되니까—상장이나 합병하는 데 있어 가지고—다시 진짜로 팔 때까지 과세를 이연해 준다는 거니까 그 부분이 실제로 금액도 크지는 않겠지만 그 금액이 굉장히 활성화돼 가지고 좀 커진다 하더라도 그게 저희들 세수손실 내지는 부족함 이런 쪽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게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이런 사례들이?

○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 정정훈 통계상으로 보면 조금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6년 17년 18년 다 한 20건 내외에서 15건 내외 정도는 있습니다.

○정일영 위원 주로 그러면 벤처, 바이오 이런 스타트업 기업들인가요?

○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 정정훈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주로 상장하고 있습니다.

○정일영 위원 코스닥, 그러니까요. 4차 산업 쪽이에요, 바이오나 유전자, 유전공학 이쪽에?

○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 정정훈 정확한 업종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래서 다른 부작용은 없습니까?

○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 정정훈 현재는 오히려 전반적으로 스펙을 통한 투자 수익률이 좀 괜찮은 편이고요. 특별히 투자자 보호 쪽에 문제가 생긴 적은 없었습니다.

○정일영 위원 차관님은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코스닥 시장에 상장돼 있기 때문이에요, 코스닥 시장에 지금 53개사가 상장돼 있다고 그러합니다.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걸 정규 제도권 내에 있기 때문에 그런 투자자 보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일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류성걸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소위원장 김영진 류성걸 간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류성걸 위원 지금 스펙 소멸합병 결국은 새로 도입을 하는데 원래는 상장된 기업이 살아 있고 합병되는 기업이 없어지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반대로 하는 거라는 말이지요. 그렇게 따지면 사실 ‘이것 이상하다, 들어오는 기업이 없어지고 살아 있는 기업이 살아야 되는데’ 그런 느낌을 받는데, 물론 페이퍼컴퍼니지만.

그래서 해외에서는 이런 예가 어떻습니까? 해외 사례, 국장님?

○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 정정훈 해외에서 처음으로 도입한 미국의 경우에도 우리나라가 처음 도입했듯이 스펙의 존속합병을 시작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스펙 존속합병 제도를 처음에 도입했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스펙이 단순히 합병의 경우에만 상장을 하는 게 아니고 합병이나 자산의 양수·도, 아니면 자회사로의 편입 이런 다양한 방식을 통해 가지고 스펙이 그 자금을 이용해서 중소 유망기업들이 상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저희 기재부가 판단한 것은 아니고 금융위하고 증권거래소가 이 스펙 제도를 운영하면서 우리한테는 좀 더 엄격하게 운영을 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미국과 똑같이 스펙 존속으로 도입하고 합병에 한해서만 허용하겠다는 제도가 만들어진 거고요.

그런데 이게 합병에 한해서만 만들어지다 보니까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합병당하는 기업의 이름이 사라지고 업력이 사라지는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그러면 이것을 인수나 아니면 자회사 이런 방식까지 터줄 거냐라고 판단을 했을 때 그것보다는 합병이라는 가장 기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방식은 유지하되 스펙 소멸합병을 허용하는 게 낫겠다. 그런데 스펙 소멸합병을 허용한다는 것은 곧 저희들이 적격합병으로 과세 측면에서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해 주지 않고서는 그 스펙 제도 자체만 도입해 가지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성걸 위원 왜냐하면 이것 처음 시작하는 것이고……

스펙 존속합병은 언제 처음 적격합병으로 인정해 줬지요? 스펙 존속합병의 과세특례는 언제 해 줬습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저희 자료에는 2010년부터 통계가 잡혀 있습니다.

○류성걸 위원 그러면 존속합병, 아까 제가 통계를 못 들었는데 몇 건 정도 된다고요?

○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 정정훈 9년에 신설이 되었고요, 10년부터 실적이 있는데……

○류성걸 위원 2009년에?

○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 정정훈 예, 10년 이후에 지금까지 스펙 자체가 상장이 된 게 총

193개.

○류성걸 위원 스펙이 193개.

○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 정정훈 그 스펙이 합병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인 사업을 하는 기업이 상장된 게 96개입니다.

○류성걸 위원 그래서 193개 중에 96개니까 반 정도 되는데 결국은 뭐냐 하면 관리도 잘 해야 될 거고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이게 이렇게 되면, 물론 IPO를 하기 때문에 심사는 굉장히 철저하게 해야 되겠지만 혹시나 안 되는 또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분야들, 예를 들어서 신성장동력산업이라든지 이렇게 되는 것을 위주로 하면 되는데 이게 전혀 대상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것은 열어놔 놓으면, 지금 우리 기업이 또는 우리 경제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신성장동력산업들인데 반도체라든지 또는 배터리라든지 아니면 백신 포함해 가지고, 국가전략산업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AI·드론 포함해 가지고, 그러니까 조그마한 기업들이라고 하더라도 기술력은 강하지만 자금력이 약하다든지 이렇게 되는 기업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따로 있겠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그런데 이게 일단 상장이 될지 여부 그런 것도 거래소에서 먼저 심사를 하니까요, 그 심사를 할 때 말씀 주신 대로 그런 전략적인 분야는 거래소가 예전에도 보면 사업 손실이 없어야 되는데 그런 분야는 사업 손실이 있어도 된다는지 약간 더 빨리 해 준다든지 그래서 그런 전략적인 분야는 하는 부분이 있고요. 결국은 스펙은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군데 중에서 스펙이 잘 골라서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안겨 주는 이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는 상장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증권거래소에서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상장 후보자들을 많이 잘 선별해서 올려 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류성걸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제도만 만들어 놔 놓고 우리가 단순히 스펙 소멸합병으로 해 가지고 개수만 많이 또는 실적만 많이 할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취지예요. 제도가 된다면 꼭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전체 취지에 그런 점 보완하는 것이 운용상에서, IPO 단계라든지 여기에서

올려서 상장 시기에 거르고 그 이후에 스펙 관련한 사항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전 단계에서 제가 보기에는 잘 걸러 주고 상장에 대한 것은 처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인 제도 보완 측면이라서 같이 동의하신 것으로 하고 추후에 의결 절차로 가겠습니다.

다음 사업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 신설 건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정명호 5페이지입니다.

사업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 신설 관련입니다.

하단의 현황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법에는 사업양수 시에 이월결손금 공제에 대하여 사업부문의 구분 등 제한이 없는바 현재 사업 양수법인의 종전 이월결손금은 양수한 사업부문의 소득금액에서도 공제가 가능해서 이를 악용한 조세회피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일부 조세회피 우려가 큰 특정 사업양수에 대해서—이 부분은 상단에 보시면 시행령에서 답을 예정인데요—특수관계인 간 양수·도이며 자산의 70% 더하기 순자산의 90% 이상 이전하는 경우에 양수법인의 기존 이월결손금을 양수법인의 기존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하도록 하고요, 이를 위해서 기존 사업과 양수한 사업의 회계를 구분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세 번째 줄 보시면, 현행법 제45조에서 적격합병 시에 이런 유사한 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양수의 실질은 합병과 비슷하므로 합병과 유사하게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을 두되 그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함으로써 특수관계인 간 사업 양도·양수를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발언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조세회피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버지 회사가 있고 아들 회사가 있는데 아버지 회사는 이월결손이 났고 아들 회사는 이익이 많이 나면 그 아들 회사의 이익이 많이 난 부분을 사업부문만 떼다가 아버지 회사에 양도를 해 놓고 양수를 받아 가지고 그걸 통해서 세금을 어떻게 보면 회피하는 그런 것들을 좀 차단하려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었을 때는 아버지 회사의

사업부문만큼만 결국은 세수감을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국세청에서 건의 온 부분을 저희들이 반영한 게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걸 위원 지금 결국은 합병이 아니고 사업부문의 어떤 특정한 사항만 옮겨가서,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에 큰 부분이 부실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것만 떼서 잘되는 B라는 기업에 양도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에 국세청에서 이런 건의가 왔다니까 실제로 이런 게 적발이나 아니면 그런 사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왜냐하면 당연히 법을 만들 때에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막아야 되는 것은 맞는데 제도적으로 막는 것은 좋은데 실제로 국세청에서 감사를 해 봤더니 아니면 실태 파악을 해 봤더니만 그런 기업이 상당히 많더라, 이런 사례가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아주 상당히 많은 건 아니고요, 이런 사례가 적발된 적이 몇 건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류성걸 위원 그래요, 몇 건이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 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사실 막아 놓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경우는 국세청이 세정이라는 차원에서 세무조사를 통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행정지도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쭙보는 거예요. 진짜 몇 건 가지고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그런데 이 법안의 취지는 양수하는 법인이 사업부문을 양수하는데 이것을 구분해서 경리를 하라는 뜻이거든요. 구분을 안 해 놓으니까 이게 막 섞여서 이월결손금을 저쪽의 이익 나는 데다 같이 없어 가지고 막 없애 버리고 이래 버리니까……

그런데 이것을 구분해서 경리를 하게 되면, 그래야 앞으로 국세청도 이 회사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이런 사업 양수·도가 일어났는지도 알 수 있고 세금도 매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모든 사람들한테 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특수관계, 그러니까 아버지 회사, 아들 회사 이런……

○류성걸 위원 70%, 90%?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그러니까 기계

하나 사 온 애들한테 구분경리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실질적인 사업부문을 인수하는 이런 것에 한정해서 구분경리시키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류성걸 위원 왜냐하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비용이 들 거예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그렇습니다.

○류성걸 위원 시간도 들 것이고 인력도 들 것이고 또 관련되는 노력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도 될 것을 이렇게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복잡하게 될 거예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금 그 말씀 때문에 여기에 저게 들어간 겁니다. ‘특수관계인 간의 양수·도다’ 그다음에 ‘자산의 70%, 순자산의 90% 이상 이전이다’ 이런 규정이 들어가면서 아무한테나 이것을 막 적용하면 당연히 안 되겠지요.

○소위원장 김영진 김주영 위원님.

○김주영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양수·양도를 부자 간에 했다 그러면 그게 그렇게 세금 혜택 보고 나중에 다시 또 분리하나요? 그런 사례들이 있나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그 사례가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것이야 뭐 경영을 하다 보면 필요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자산매각을 할 수도 있겠지요.

○소위원장 김영진 법 취지와 내용 그리고 특수관계인 간의 양수·도에 대한 조건들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도의 오용이나 아니면 구분경리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발의한 대로 합의하는 것으로 하고 추후 의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시라서요, 2시간 정도 했기 때문에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잠시, 공기도 좀 통하고……요새 코로나가 3000명이 넘어서 저희도 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정대로 20분 휴식하고 4시 20분에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했다가 4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명호 전문위원께서 소위자료 7페이지 3번 항목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법안 중에 잘 보시고 의견 주시고 아주 깊게 논의할 사항은 깊게 또 판단할 사항은 판단하면서 우리 소위가 법안심사에 조금 더 집중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호 7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접투자회사 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 변경입니다.

다음 8페이지 보시면 현황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법 제57조의2를 보시면 간접투자회사 및 투자신탁—펀드입니다—펀드가 국외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 외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 이 펀드가 국내납부 법인세액을 공제받거나 다음에 법인세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환급을 해 주고 그 이후에 해당 소득을 투자자에 배분 시에는 국내 세율로 원천징수하도록 해서 이중과세를 제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9조 4항 후단—이게 소득세법하고 법인세법 같이 있는데—규정을 신설해서 펀드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배당 지급 시에 국내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서 투자신탁의 외국납부세액과의 차이를 원천징수하고요. 다음에 법인세법 제57조 1항 후단을 신설해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투자자인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 외국납부세액 대상에 펀드의 외국납부세액을 포함하여 공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표입니다.

상단에 있는 부분이 원천징수가 가능한 경우고요, 하단 같은 경우는 원천징수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제적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것인데 현행 제도에 따르면 국외원천소득이 국내에서 비과세되어 이중과세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국고로 외국납부세액을 환급·지원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서 개정안과 같이 실제로 국내 과세되는 경우에만 외국납부세액을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펀드운용사가 외국납부

세액 및 환급 절차를 수행하는 예상환급 외국납부세액 계산, 신고·수정신고 등의 절차가 불필요해져서 운용사의 부담이 경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 개정안의 고려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펀드 판매사가 투자자별로 지급소득에 귀속되는 외국납부세액을 각각 산출해야 되기 때문에 판매사의 업무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개정안에 대해서 저희 수정의견은 11페이지 보시면 각 호를 신설해서 체계를 다듬는 내용이고, 내용상 변경이 있는 것은 아니고 이해하기 쉽게 조문을 다듬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이것은 국제적인 이중과세를 조정하거나 제거해 주는 것인데요, 기존에는 예를 들어서 국내 어떤 증권펀드가 해외 테슬라 주식을 투자한다 이렇게 되면 거기에 투자자들이 투자를 했는데 이 펀드가 결국 테슬라 주식을 투자해 갖고 거기서 배당소득이 나오면 먼저 미국에 일정 부분 배당소득세를 내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소득이 오면 그것을 원천징수하는 이런 구조인데요.

지금 현행은 일단 계산하기 편하게 미국에서 떼인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국세청이 환급을 해 주고 그다음에 전체를 통으로 봐서 거기서 제대로 원천징수를 하니까 2단계로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한 번 떼인 것을 집어넣어 주고 전체를 만들어서 거기서 원천징수하고,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선환급해 주는 것을 없애고 제대로 두 가지를 다 계산해서 원천징수를 떼는 것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펀드사들이 복잡해지는 것 아니냐 그러는데 그것은 시스템을 갖춰서 하면 큰 부담이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이러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고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실제로 국내에서 세금을 안 낸 부분이 있는데 환급을 해 주면, 그러니까 과다 환급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또 방지하는 효과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주신 조문 수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니다.

○류성걸 위원 금융투자협회나 아니면 실제로 펀드를 운영하는 업계의 의견을 한번 들어 보셨나요? 어떻습니까? 국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 정정훈 업계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어서 업계는 기존에 환급받는 것이 당연히 유리하기 때문에, 일단은 돈을 다시 돌려받으니까요. 당연히 유리하니까 바꾸는 것보다는 지금 현행대로 하는 것이 가급적이면 좋다는 의견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고친다 해 가지고 불가능하다 아니면 또 고치는 게 불합리하다고 자기들도 생각하지는 않고요. 이렇게 고치는 게 합리적이다, 그런데 조금 불합리하더라도 현행대로 하면 간편하고 좋기는 하다 이게 의견입니다.

○류성걸 위원 제가 보니까 이것은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환급을 해 준다는 이야기는 어쨌든 국세청 입장에서, 기재부도 마찬가지로 국고로 들어왔던 것을 환급을 해 주나요? 어떻게 됩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그렇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주는 겁니다. 먼저 주는 겁니다. 국세청에서 갖고 있는 돈을 먼저 주고……

○류성걸 위원 국세청에서 가지고 있는 돈을……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먼저 주고 그다음에 세율 차액만큼, 세율 이후에 원천징수하는 게 14%니까 14%를 떼 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류성걸 위원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냐 하면 제가 보니까 진짜 실무적인 그런 절차상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하고 또 이렇게 되면 시스템을 전부 다, 프로그램 이런 것을 전부 다 바꿔야 될 것 아니겠어요?

지금 준비는 다 됐나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 정정훈 시행 자체가 23년부터 하려 그러합니다.

○류성걸 위원 23년부터?

○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 정정훈 예.

○류성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세금 부담이 늘어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순전히 절차에 관련되는 사항이라서 업계하고 또 국세청하고 관계에서 문제가 없으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잘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왜 이렇게 또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괜히 복잡하게 되니까 그런 문제만 없다면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소위원장 김영진 추경호 위원님.

○추경호 위원 아닙니다. 저는 좋습니다. 빨리 진행합시다.

○소위원장 김영진 이것은 그러면 다 동의한 것으로 하고요, 업계 의견을 다음번 이것 최종 의결하기 전에 한번 청취하는 것, 전달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일영 위원 잠깐만 하나만 물을게요.

차관님, 이렇게 하면 세수가 늘어나요?

○소위원장 김영진 조세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세수가 동일한데요.

○정일영 위원 동일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간혹 케이스가 실제로 국민연금이나 이런 데는 해외투자, 원채 세금을 안 떼니까, 그 부분을 사실은 저희들이 환급을 해 준 게 되니까 그 부분만큼은 저희들이 국세를 제대로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요.

○정일영 위원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전문위원 4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호 14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의무 대상 범위 보완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사업 양수·도를 활용한 성실신고확인제 적용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사업자에서 전환한 법인으로부터 현물출자 및 사업양도를 통해 해당 사업을 인수하여 영위 중인 내국법인도 성실신고확인 적용대상에 포함하자는 부분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인으로 전환된 사업을 다시 법인에게 이전함으로써 조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양수법인에 대하여 성실신고확인제를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개인사업 하시다가

가 법인으로 전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셔야 되는데요 3년 동안은 그런 의무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개인사업 하시다가 법인 A로 바꾸셨다가 또 법인 A에서 법인 B로 바꾸셨을 때 그런 것 같은 경우도 같이 이어지기 때문에 3년 기간 동안에는 법인 B까지도 3년 내에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라, 지금까지 끊어져 있던 것을 붙이는 게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것으로 하고 추후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5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호 18페이지입니다.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특례 대상 정비 관련인데요.

개정안은 2023년부터 종전의 주식 양도세가 금융투자소득세로 통합됨에 따라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대상에서 주식등을 제외하려는 것입니다. 시행 시기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과 관련해서 2023년 1월 1일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신설에 따라 동 특례 대상을 정비할 필요는 있고요. 다만 특례 대상에서 주식등을 개정안처럼 제외하는 방안이 있고 비영리법인의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 신고특례를 별도로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비영리내국법인, 학술·문화 이런 업을 하시는 내국법인들 같은 경우는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는데요 그중에서 특례를 뒤서 양도소득은 수익에 대해서 법인세를 안 붙이고 양도소득은 양도소득 별도로 선택해서 그게 유리하다면 비영리내국법인은 그렇게 선택해서 하실 수 있게 해 놨는데요.

그중에서 항목들을 보면 주권상장법인 주식 중대주주 양도분, 비상장주식, 그래서 금융투자소득세가 2023년부터 신설이 되니까 양도소득이 아니라 금융투자소득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자, 지금은 여기서 양도소득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는, 조문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걸 위원 여기에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금융투자소득이 아닌 주식 등, 예를 들어서 부동산 과다법인인 경우에 빼 버리면 다 제외되는 것 아닙니까? 괜찮아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양도 정의 조문 말씀하시는 거지요?

○류성걸 위원 예.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그거랑 직접 상관이 없습니다.

○류성걸 위원 그러니까 괜찮은 거예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기획재정부소득법인세정책관 정정훈 18페이지 대상 자산에 보시면 세 번째는 제외가 되는, 삭제되는 데 네 번째에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이 있기 때문에……

○류성걸 위원 아, 들어 있네요.

예, 좋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안대로 동의하고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6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호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신설입니다.

법인세법에도 있고 소득세법에도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개정안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미제출 및 불성실 제출 가산세를 신설함으로써 해당비용 명세서의 성실한 제출을 유도하고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자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명세서의 성실한 제출을 위하여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법인이 제출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기업에 상당한 납세협력의무가 부과되는 면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업무용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용도 외에 사용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지금도 관련비용 같은 경우에 명세서 제출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제대

로 안 지켰을 때 지금까지는 가산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를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가산세를 신설하는 거고요.

그리고 전문위원 말씀 주신 것 중에 소규모 사업자들 부담되는 것 아니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도 증빙은 내부적으로 해 봐야 되고요. 여기서 요구하는 것은 증빙내역을 전부 다 내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총괄하는 명세표, 총괄표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부담이 그렇게까지 높지 않다는 것 하나 있고. 그다음에 부담과는 무관하게 이런 부분은 관리를 계속해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영 위원님.

○정일영 위원 한 가지 물어봐서 확인 좀 하려고 그러는데……

업무용승용차, 예를 들어서 우리 국민들 사이에 그런 얘기가 좀 있던데 사업하시는 분이 외제차를 업무용차로 사 가지고 개인차처럼 쓰는 거예요, 그렇지요? 주말에 어디 여행 갈 때도 쓰고 가족들도 쓰고 그런 경우가 많이들 있다고 그래요. 확인은 못 했지만 어쨌든 많이 있대.

그런데 현재 보면 운행일지인가 이런 것 기록, 제출하게 돼 있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정일영 위원 그게 어디예요? 세무서로 댈니까, 그런 걸?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그렇습니다.

○정일영 위원 여기서 얘기하는 관련비용 명세서라는 게 그런 거예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그런 것들 다 포함하는 겁니다.

○정일영 위원 운행일지 이런 것 다 포함한 것?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정일영 위원 그러면 세무서에서 그것을 확인을 요즘 하나요, 제대로?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원래는 신고 납부하는 대로 보는데 좀 이상하거나 할 때는 가서 보지요.

○정일영 위원 봐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정일영 위원 전국에 몇 대나 돼요, 이런 차가?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업무용승용차요?
 ○정일영 위원 예.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차량이 15만 대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정일영 위원 15만 대?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예.
 ○정일영 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더 되겠지요. 무슨 15만 대예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관련비용이 1500만 원 초과되는 게 15만 대 정도 됩니다.
 ○정일영 위원 1500만 원 초과되는 게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예.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그러니까 1500만 원까지는 명세서를 안 내도 되거든요.
 ○정일영 위원 1500만 원까지는 안 내도 돼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정일영 위원 운행비용이 1500만 원? 무슨 1500만 원이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그러니까 감가상각비나 다 있지 않습니까?
 ○정일영 위원 차량가액?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다 합쳐 갖고 연간 1500만 원까지는 안 내도 되고 1500만 원 이상만 내게 돼 있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러면 작은 기업이나 자영업 하는 분들 등등은 거의 안 내겠네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그런 분들은 빠지고요.
 ○정일영 위원 그냥 자기 차처럼 쓰는 거네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정일영 위원 어느 정도 회사 규모가 있는 데들만 제출한다는 뜻이고 거기에 대해서 불성실한 경우는 가산세를 하겠다. 제도 취지는 좋은 것 같아요, 바람직한 것 같고요. 그런데 다른 사항은 여기서 얘기할 사항이 아닌 것 같네.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유경준 위원님.
 ○유경준 위원 이것 좋은 제도로 기본적으로 찬성하는데 이것 가지고 안 될 것 같아서 지난번 국감 때 좀 더 강한 방법으로 국토부하고 협력해 가지고 차량번호판을 식별할 수 있게, 그러면 이게 비업무용으로 쓰이면 식별이 쉬울 것 아닙니까? 그 제안을 했는데 이것 정도 가지고 하면 여기 소기업에 과도한 부담도 있다고 하는데 이것

은 정말 크다고 안 보지만 좀 더 근원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해야 되고.

그리고 업무용차에 고액의 외제차가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굉장히 불편함과 불쾌감을 주고 있다 이 지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추가로 검토할 수 있으면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국토부랑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전용번호판 그 말씀이시지요?

○유경준 위원 예, 전용번호판이나 색깔이나 등등.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국토부랑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6항은 국정감사에서 논의했던 내용이라 해서 정리하는 법안인 것 같습니다.

동의하셨으므로 추후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7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호 23페이지입니다.

국외투자기구 실질귀속자 간주 요건 명확화인데요, 내용상 변화보다는 그간에 용어가 약간 불명확한 게 있어서 다듬는 건데요.

지금 법인세법 제93조의2하고 소득세법에도 제119조의2에 있는데 외국법인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외국법인을 국내원천소득 귀속자로 하고 예외적으로 국외투자기구 실질귀속자 간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국외투자기구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뒤쪽의 내용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보시면 우선은 가목 같은 경우에 해당 국외투자기구가 그 거주지국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납세의무가 OECD 모델에 따르면 납세의무가 있더라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여 과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하고 있는데 가목에서는 ‘납세의무 부담’이 포괄적 납세의무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실제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가 불분명한 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나목 같은 경우에는 국외투자기구가 실질귀속자가 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조세회피 의도가 없어야 한다, 약간 주관적인 부분이 있어서 실제 납세자 다툼의 소지가 일부 있는 부분이 있고요.

25페이지입니다.

다음 현행 제2호 같은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

는 거주자 요건을 갖춘 국외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조세조약에서 해당 기구를 특정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로 명시하는 경우에 실질귀속자로 간주하는 취지인데 현행 규정 같은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의 관계에 대한 언급이 없어 중복된 규정으로 오해할 소지도 있고 ‘실질귀속자’ 개념은 세법상 개념으로서 조세조약에서 사용하는 ‘수익적 소유자’의 의미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하단의 주에도 보시면 대법원에도 이런 판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안 제1호가목은 ‘조세조약에 따라 그 설립된 국가에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해당할 것’ 이렇게 해서 포괄적 납세의무임을 명확히 했고요.

그다음에 나목에서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조세조약이 정하는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안 제2호에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임을 명시하면서 실질귀속자가 아닌 수익적 소유자의 개념을 직접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이것은 아까랑 반대로 국외투자기구, 예를 들면 칼라일 펀드 같은 경우가 국내에서 어떤 원천소득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세금을 매길 때 보통은 칼라일 펀드의 실제 구성원들까지 다 파악을 해서 거기다 세금을 매겨야 되는데 어떤어떤 요건이 있으면 실질귀속자를 칼라일 펀드 그 자체로 기구에다가 매기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OECD 조세조약 모델이 있고 표준문안들이 있는데 지금 현행 있는 문안들을 표준문안에 맞게 조금 더 정교하게 부합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류성걸 위원 이것은 문구 잘 조정해서 문제없도록 하십시오.

○소위원장 김영진 국제조약에 맞게끔 해서 동의하는 것으로 알고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8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호 27페이지입니다.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자료 제출의무 신설입니다.

개정안은 연락사무소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선제적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란 외국 본사를 위해 광고, 선전, 시장조사, 정보수집 등 예비적·보조적 활동만을 수행하는 사무소로 외국법인이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사실상 국내사업장에 준하는 활동을 함으로써 조세를 회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법인세 과세 여부 및 방식에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는데요.

다음 28페이지 보시면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와의 조세조약 체결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만 국내에서 과세가 되고, 외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제91조제1항에 따라서 해당 사업장 귀속소득에 대하여는 종합과세가 되지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서 각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분리과세가 됩니다. 분리가 돼서 지금 개정안과 같이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자료를 제출하여 과세 당국이 이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면 외국법인이 연락사무소 등록 후 사실상 국내사업장에 준하는 활동을 함으로써 조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에서 연락사무소에 대한 설명, 범위 등을 법률에서 전혀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전체 위임하고 있어 수정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일단 외국법인이라도 국내에 고정 사업장이 있어야 현재 저희들이 과세를 할 수가 있는데요, 연락사무소도 사실은 이게 사실판단의 영역이고 어떻게 활동하느냐에 따라 고정 사업장과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판단하기 전 단계로 현황자료 정도 저희들이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그런 내용을 신설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께서 주신 말씀은, 조문 수정은 저희들이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체적으로 동의합니다.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9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호 30페이지 조문 정리 관련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안 제51조의2제1항 2호하고 부칙 5조 3항 부분인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맞는 용어 변경이고요.

안 112조의2 부분에 대해서는 납세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명칭에 맞게 용어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첫 번째 것은 자본시장법에서 정의가 용어가 좀 바뀌어 가지고요, 그 용어를 따라가서 같이 바꾸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조문 정리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 까 법인들이 개별 영수증 건건으로 해석을 하시는데 혼동이 있어서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그래서 총괄표만 내시면 된다 이렇게 명확하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조문 정리니까……

○류성걸 위원 한 가지만 이것 관련해서.

지금 용어 관련되는 사항은 당연히 다른 규정이 바뀌면 거기에 따라서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행정부 아니면 또 법제실에서 아니면 행정부에서는 법제처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 법령 명칭을 말할 때 꺾쇠를 붙이는 것하고 또 띄어쓰기를 안 하고 전체 한 단어로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전부 다 붙여 가지고 한 단어로 만들었다가 지금은 꺾쇠를 붙여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통일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위원 정명호 첫 번째, 꺾쇠 부분에 대해서는 한글 맞춤법에 법령 제명에 붙이도록 돼 있고요. 두 번째, 띄어쓰기 부분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법률 전체를 띄어쓰기를 안 하고 했었는데 법률안 한글화 작업하고 제명,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작업을 하면서 기본적으로는 띄어 쓰도록 그 부분이 변경됐습니다.

○류성걸 위원 그렇게 됐는데 제가 어디에, 자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검토보고서 어디에도 그것을 전부 다 붙여 가지고 한 것이 개정

안 어디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한번 찾아보시고요.

○전문위원 정명호 확인해 봐야겠지만 아마 현행 법 제명이 붙여쓰기로 돼 있을 때는 충실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대로 갖다가…… 저희가 임의로 띄어쓰기를 하는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류성걸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하지만 외부에서 볼 때도 일관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여러 가지 추후에 정리 이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했으므로 추후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이 상정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인데요, 이에 관련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0년 세법 개정 시에 부대의견으로 기획재정부가 상속세 과세체계 개선 방안을 검토하여 보고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지난 11월 12일 상속세 과세체계 개선 방안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기획재정부의 보고를 받고 안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부 측에서 부대의견 관련한 개선 방안 관련해서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받고 안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정부는 지난해 기획재정위원회 부대의견에 따라서……

○추경호 위원 자료……

○정일영 위원 자료라도 줘야지.

○소위원장 김영진 자료……

○유경준 위원 자료 안 줘요?

○소위원장 김영진 그냥……

○정일영 위원 말로?

○전문위원 정명호 자료 자체가 지금 정부입법하고는 내용이 관련이 없고 의원입법하고 관련되는 내용이라서 아마 이런……

○추경호 위원 아니,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연구용역 결과를 우선 보고를 하려고 하는데 그 보고서를 우리한테 줘라.

○전문위원 정명호 예, 지금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호 위원 그게 있어야 같이 보지.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부분만.

○소위원장 김영진 말씀을 주세요. 하고 조금 검토하시지요.

○추경호 위원 자료 보면서 하시지요.

○소위원장 김영진 죄송합니다. 이게 각 의원실에는 다 보내 드렸는데 이 자리에 없어서, 의원실에 사전에 다 배포했습니다.

○류성걸 위원 엑셀러레이터를 뺏아 가지고 속도가 갑자기 나기 시작하네.

○소위원장 김영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정부는 지난해 기획재정위원회 부대의견에 따라 상속세 관련 연구용역 및 상속세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검토 결과를 지난 11월 12일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관련 법안에 대한 조세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성심성의껏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간략하게 세제실장이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실장 김태주 지금 배포해 드린 상속세 주요 쟁점에 대한 검토의견에 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그동안의 경과를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주요 쟁점별 검토의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율과 과표 조정 문제는, 현행 지금 상속세는 10~50% 세율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과표는 1억 원 이하에서 30억 원 초과로 돼 있는데 검토 의견 저희 결론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과세체계하에서 직접적인 세율 조정 등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저희 입장이고요. 왜 신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 밑에 1·2·3으로 써 놔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까요, 아니면 나중에……

○류성걸 위원 다 설명을 하세요, 어차피 상속세를 해야 되는데.

○기획재정부제실장 김태주 첫 번째는 상속세 최고세율이 꽤 높은 편이기는 하지만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공제제도를 적극 운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이 하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 상속세라는 게 소득과 부의 재분배 측면에서 소득세의 보완적 성격을 또 가지고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소득세가 면세자 비율이 꽤 높은 수준이고 또 최고세율 적용 과표 구간에 해당하는 납세자가 극히 소수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세의 보완적인 성격을 가진 상속세의 조정은 굉장히 신중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측면이고요.

다음에 3페이지 보면 지금 상속세를 좀 완화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도 있지만 또 부의 집중 완화 측면에서 과세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 세부담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유산취득세 전환 이슈인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상속세를 유산세 방식으로 운용을 하고 있는데 외국의 상속세 부과하는 23개국 중에서 유산세로 부과하는 나라가 4개국이고 유산취득세로 부과하는 나라가 19개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게 어떠한지는 지적도 지난번 국감 때 여러 분이 주셨었는데요, 저희 검토의견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용역과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서 입법 추진 여부를 좀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되겠다라는 게 저희 검토의견입니다.

그 이유는 우선 이게 응능부담의 원칙 또 증여세 체계와의 일관성 이런 측면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는 반면에 또 이걸 유산취득세로 하게 되면 세부담이 전반적으로 좀 완화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부의 대물림에 대한 과세가 약화되고 또 조세회피 우려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꿀 경우에 상속세를 1조에서 끝 조까지 전부 다 바뀌어야 되고 이것에 맞는 해석이라든가 모든 체계를 다 바뀌어야 되는 엄청난 작업이기 때문에 아주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5페이지 가업상속공제하고 영농상속공제 이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업상속공제는 제조업, 건설업종 중심으로 해서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서 한도를 200억 원에서 500억 원 정도까지 공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영농상속공제는 15억 원 한도로 공제를

해 주고 있습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과세형평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경제 활성화라든가 투자·고용유인 효과 제고 측면에서 일부 제도보완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게 저희 의견입니다.

우선 가업상속공제 같은 경우에 공제한도를 1억 원에서 최대 500억 원까지 확대한 점을 고려해서 그동안 공제한도를 추가해서 확대하는 것은 좀 신중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후관리는 이게 2019년에 저희가 사후관리제도를 굉장히 많이 고쳤습니다. 그때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고치고 또 업종유지 의무도 소분류에서 중분류까지 넓혀 주고 했기 때문에 사후관리는 지난번에 많이 했으니 이번에는 사전 가업 요건은 합리화할 수 있겠다는 게 저희 의견입니다.

그래서 다음 6페이지 보시면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대상 기업을 현재 중소기업하고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 매출액 3000억 미만까지만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을 4000억 미만까지로 확대하는 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두 번째, 상속인의 사후관리 그것은 지난번에 19년에 많이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피상속인의 가업상속공제 업종유지 의무 완화를 지금 한 중분류 정도로 되고 있는데 대분류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영농상속공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제한도가 15억 원인데 이걸 20억 원까지는 그간의 물가상승률이라든가 등등 고려해서 가능하겠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연부연납 기간을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최대 5년까지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자도 받고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10년까지는 확대할 수 있다라는 게 기재부 의견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참조하셔서 상증법 논의 때 토론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경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준 위원 이것 발표하신 김에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는데, 이게 조세재정연구원에서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쓴 겁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그걸 참고해

서 쓴 겁니다.

○유경준 위원 참고해서 쓴 거예요? 참고해서 썼으면 여기 있는 게 조세재정연구원 의견이예요, 아니면……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이것은 기재부 의견입니다.

○유경준 위원 저희가 궁금한 것은 기재부 의견이라기보다도 조세재정연구원의 중립적인 연구 결과예요, 그 점이고.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좀 이상한 게 첫 번째가 세율 및 과표 조정 구간이라고 돼 있는데 직접 세율 조정은 신중할 거라고 해 놓고, 이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세율이 다단계인 것, 대부분 국가들이 단일세율인데 우리나라가 단일세율이 아니라는 것이 더 중요한 쟁점이나 이슈 중의 하나인데, 그 점은 분명히 조세재정연구원에서 검토를 했을 텐데 아예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그래서 그것을 검토시켜 놓고 이렇게 선별적으로 선택적으로 보고하면 검토를 왜 시켜요? 기재부 의견이라고 하지, 그냥.

그리고 과표 구간 부분은 결론이 뭐예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그러니까 조세재정연구원에서 상속세가 단일세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유경준 위원 그런 의견이 있었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그 의견은 제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단일세율이……

○유경준 위원 아니, ‘없었던 것……’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분명히 과표……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위원님, 지금 법인세율 말씀하시는 것 혹시 아니신가……

○유경준 위원 아니아니요, 상증세. 상증도 지금 이게 구간별로 다르지요, 그렇지요? 그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과표를 단일세율로 하라는 것은 학계의 상당한 의견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서 그래요. 조세재정연구원에서 그걸 빼놓을 리가 없어서 내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다른 나라들도 다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미국과 독일과 영국과 일본……

○유경준 위원 그러니까 분명히 정신이 있는 연구원이라 그러면 다단계로 되어 있는 것을 과표

세율을 단일화하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것 확인해 주세요, 먼저.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미국도 다단계로 되어 있고 독일, 영국, 일본 다 다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유경준 위원** 많은 국가들이 단일세율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것 확인해 주시고.

또 분명히 유산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상속세 부과 23개국 중에 유산세가 4개국, 유산취득세가 19개국이어서 이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고 한데 이것도 그냥 이유 없이 반대하는데 조세재정연구원에서 이렇게 이유 없이 그냥 반대했습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조세재정연구원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응능부담 원칙이나 증여세 체계와의 일관성 이런 걸 감안해서 필요성도 있으나……

○**유경준 위원** 필요성이 있으면……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세부담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다, 두 가지 얘기를 다 해 놓았습니다.

○**유경준 위원** 아니, 검토의견을 받아서 하라 하면, 학계 의견을 받아서 하라 하면 학계 의견에 충실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셔야지 그것을 기재부 의견하고 다르거나 안 맞는 것은 다 빼고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면 어떻게 참고를 해요, 이것을.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위원님, 이게 기획재정부 의견이고 용역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저희 입장을 만들기 위한 사전 검토를 위해서 맡기는 것이고요.

○**유경준 위원** 그러면 시간을 주고 왜 검토하라고 했겠습니까? 전문가나 정부출연연구소 의견을 듣고 그것을 참작해서 보완하라고 한 거지, 그러면 똑같은 의견을 뭐하러 해요. 그러면 시간을 왜 끌었어요?

○**소위원장 김영진** 추경호 위원님.

○**추경호 위원** 유경준 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 가지고 지금 하나하나 하기에는 상속세 틀을 전부 만질 때 이런 걸 기초로 해서 해야 되니까 일단은 기재부 의견은 알겠고.

유경준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연구용역은 조세연에서 한 것 아닙니까? 그 보고서를 우리한테 공유를 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하고 또 기재부 의견하고 참고해서 같이, 우리가 필요한 대로 보면 되니까, 참고하기 위해서.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이미 다 제출했다 그러는데요.

○**추경호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내용 보고 그 다음에 조세연구원하고 기재부 입장 같은지 또 일부 다르면 우리가 그 연구한 것 가지고 보면서 추가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법안……

○**류성걸 위원** 잠깐만, 저도 한 말씀……

설명 잘 들었고요. 보고서 보냈다고 하니까 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들도 많지만 제일 중요한 게 결국은 유산세로 할 건지 유산취득세로 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되면 틀을 전부 다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내용을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만 전체 개수로 봐서는 유산세가 4개국이고 유산취득세가 19개국이라는데 제도를 도입하고 난 뒤에 방식을 바꾼 나라가 23개국 중에서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애초에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바꾼 나라요?

○**류성걸 위원** 그렇지요, 아니면 반대로 유산취득세에서 유산세로 바꿨든지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바꾸었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류성걸 위원** 왜냐하면 우리 법체계가 법체계 전체는—여기 법 전문가도 계시고 한데—독일 대륙법계의 체계를 지금 기본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체계 자체를 바꿔 가지고 이익이 있다면 해야 되고 또 이익이 아니더라도 필요성이 있으면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나중에 한번, 실제로 현재 가지고 있는 체계가 물론 중요하지만 그 중간에 어떤 상황에 의해서 또 필요에 의해서 바꾼 그런 경우가 있는지를 정리를 한번 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호** 자료 38페이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인데요.

첫 번째,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규정의 연대납세의무 적용 제외 및 증여재산 합산배제인데요. 39페이지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에는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는데요.

2003년도에, 하단의 주에 보시면 ‘다른 자로부터’라는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그렇게 삭제한 이후에 ‘다른 자로부터’ 문구를 삭제하면 증여자 없이 과세할 수 있느냐 이게 쟁점이 됐고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지금 이 관련해서 이 개정 이후에 판결을 한 게 41페이지고요, 42페이지 상단이 대법원의 결론입니다.

대법원은 ‘현행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규정이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증여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해석함으로써 동 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증여자의 존재를 과세관청이 입증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지금 밑에 보시면 연대납세의무라는 것은 증여자가 일정한 경우 수증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 증여자를 전제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합산배제증여재산 같은 경우에도 증여자 및 원천을 구분하기 어려운 점 때문에 다른 증여재산과 합산하지 않고 건별로 과세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증여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와 누적합산과세에서 각각 배제함으로써 증여자를 특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이것은 재산이 갑자기 생겼는데 정황상 분명히 증여 같은데 지금 법 해석상으로는 그러면 증여자가 분명히 존재해야 된다, 그래야 증여를 매길 수 있다 그거냐, 아까 여기서처럼 ‘다른 자로부터’가 빠졌기 때문에 일단 증여라는 사실이 있으면 그것은 증여를 매길 수 있다 이런 다툼이 있어 가지고요, 지금 여기서 보면 그것 할 때 증여자가 존재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근거로 연대납세의무 적용, 합산배제증여재산 이 두 조항이 증여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명확히 뒷받침하는 조항이다. 그래서 법률상 그런 해석을 명확히 하기 위

해서 이 두 조항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갑자기 재산이 증식된 그 부분을 빼 버려서 그런 논란을 불식시키고 확실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를 매기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걸 위원 이게 그러면 대법원의 최종 판결하고 같은 취지가 되는 겁니까?

○기획재정부제실장 김태주 그게 아니고요. 증여추정 규정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가 집을 샀다 그러면 이것은 내가 증여받은 거다라고 추정을 해서 과세를 해야 되는데 국세청에서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대법원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국세청이 누구로부터 증여받았는지를 내가 입증해야 과세를 할 수 있다’ 지금 자꾸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그런데 대법원에서 ‘국세청이 내가 이걸 입증을 해라. 누구로부터 증여받았는지를 입증을 해라’라고 하는 근거가 이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 규정이 연대납세의무 조항에서 빠져 있고 합산배제증여재산에서 빠져 있는 것, 이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국세청한테 자꾸 입증책임을 지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제도 취지는 연령이나 나이나 재산이나 소득이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갑자기 무슨 재산이 불어났을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해서 과세하고자 하는 것인데 자꾸 증여자까지 입증을 하라고 하니깐, 법원에 가면 자꾸 깨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여기다 보완을 해서 증여추정 규정에 충실하고자 하는 그 취지의 개정입니다.

○류성걸 위원 제 이야기는 결국은 이렇게 하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바뀔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획재정부제실장 김태주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류성걸 위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대법원에서는 추정을 해 가지고 할 게 아니라 국세청, 그러니까 과세 당국이 입증을 해라, 그렇게 하면 되는데 추정해 가지고 과세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법을 만드는데 입법부에서 이것은 추정하는데 법에 의해 가지고 추정을 하도록 하는 그게 맞느냐 이런 이야기지요. 실제로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법에 의해서, 법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되지

만 실제로 그게 증여가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고 법에 규정이 됐다고 해 가지고 입증이 되나 이런 말입니다.

결국은 뭐냐 하면 대법원은 실제로 국세청, 과세 당국이 입증을 해 가지고 해라 하는데 그걸 회피하기 위해 가지고 법에다가 이런 규정을 넣어 가지고 했으니까 입증을 안 하더라도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이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간주가 됩니까? 이제까지는 사실 추정이었어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추정입니다.

○류성걸 위원 추정인데 이렇게 하면 간주가 돼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아니요, 추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증여를 받은 걸로 추정되는 사람이 이것 증여받은 게 아니라고 자기가 입증을 해서 내면 증여세에서 면제될 수 있는 겁니다.

○류성걸 위원 아니지요, 입증책임을 과세 당국이 져야 되는데 과세 당국이 이것을 증여라고 입증을 해야 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입증책임을 지금 납세자한테 미루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이 단순히 그냥 법을 이렇게 바꿔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법원과 그다음에 또 세정 당국과 우리 입법부가, 그러니까 행정부·입법부·사법부가 같은 취지를 어떻게 잘 해결할 건가를 봐야 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박형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형수 위원 대법원 판례의 취지는 증여라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을 과세 당국이 져야 된다 그게 기본이거든요, 형사책임에서 검사가 유죄의 입증책임을 져야 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 입증책임을 과세 당국이 안 지도록 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부터 근본적으로 고민을 해 봐야 되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함으로 해서 입증책임을 전환되겠는가라는 의문도 있어요. 이게 지금 여기에다가, 연대납세의무 이런 규정에서 여기 증여라고 되어 있는 걸로 봐 가지고 대법원에서 이걸 입증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거기다가 재산 취득자금의 증여추정 등을 넣자, 그러면 그 논리가 없어질 것 아니냐, 이게 맞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의문이 있고요.

그다음에 근본적으로 이 판례와 그다음에 지금 규정의 취지를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판례는, 법원은 증여라는 것에 대해 가

지고 불분명한 자금에 대해 가지고 과세 당국처럼 해석하지 않고 엄격하게 누구로부터 증여받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고 하느냐, 결국은 이것은 세금 문제이고 재산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봐야 된다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허물어뜨릴 만큼 과연 필요성이 있느냐라는 것부터 고민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추후에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류성걸 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뭐냐 하면 행정부가 입증책임을 입법부에 떠넘겨서 공범을 만들자 이런 이야기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좀 더 심도 있게 한번 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박형수 위원 공범까지는 아니더라도 너무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여기 추가된 게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부분 항목을 넣어서 대법원 판례에서 규정한 과세 당국의 입증책임 부분들이 이것으로 간주돼서 가느냐 아니냐에 대해서 세제실장이 간단하게 말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간단하게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요, 원래 2003년에 우리 상속·증여세 과세 체계가 완전포괄주의로 바뀝니다. 완전포괄주의로 바뀌면서 전에는 딱 규정에 있는 것만 했었는데 규정을 빠져나가서 자꾸 상속·증여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다 막기 위해서 완전포괄주의로 가면서 아까 39페이지의 재산 취득자금 증여추정 규정에서 ‘다른 자료부터’라는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 그러니까 증여자가 누구인지를 몰라도 추정해서 과세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바꿔 놓은 거거든요.

결국은 이 입법의 취지나 이런 것들이 입증책임 없이 추정해서 과세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보는데 대법원에서 이 규정이 미비가 되어 있다, 이 규정이 미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입증책임을 국세청에 있다고 자꾸 그런 식으로 판결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규정이 바뀌게 되면 대법원도 이 법의 취지라든가 이런 것을 맞춰서 판결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류성걸 위원 혹시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의 의견을 한번 들어 보셨습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아니요,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류성걸 위원** 그러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어떻게 판단합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그런데 판결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된다고 해서 법원에서 ‘너희가 이렇게 바꾸면 이렇게 된다’ 그 의견을……

○**류성걸 위원** 아니지요, 그것은 법원의 문제는 아니고 법원행정처에다가 이런 법 개정안을 만들어서 하는데 사전에 협의 또는 의견 청취를 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 박금철** 재산세 국장이 잠깐만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예, 국장님 얘기하세요.

○**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 박금철** 이것은 입증책임의 전환 문제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종전에는 과세관청이 입증을 하다가 납세자한테 입증을 하라 그러니까 입증책임의 전환 문제는 아니고, 원래 재산 취득자금의 증여 추정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직업이나 나이나 봤을 때 능력 없는 사람이 어떤 재산의 취득이 있었다 하는 것을 국세청이 입증을 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누구로부터 받았는지까지를 입증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현행 상증법 조문에서는 누구로부터라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의 입법 취지는 누구로부터라는 조항은 없어도 무능력자가, 무재력자가 재산을 취득했으면 증여로 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대법원에서는 이 현행 조항도 누구로부터 받아야 된다는 그 취지가 남아 있다라고 하면서 그 판시의 근거로 연대납세의무나 이런 것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상증법의 입법 취지를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 다른 자료부터 꼭 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시하기 위해서 대법원에서 판결의 근거로 났던 그 조항을 우리 입법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형수 위원** 그러면 입증책임의 전환까지는 아닌데 이것은 입증책임의 완화거든요. 증여자까지를 입증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입증 안 해도 되느냐, 입증책임을 완화시켜 주는 건데 이것이 결국은 마찬가지로입니다. 결국은 과세 당국이 증명해야 되는 부분을 완화시켜 줄 필요성이 있느냐

라는 것에 대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똑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고민하고 이 방식으로 그게 과연 가능한지도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 저기해서 관련 기관의 의견을 한번 확인하고요. 실제로 이것이 유효한 조항으로서 적용될 수 있는지 여기까지 두 가지 하고 다음번에 다시 한번 논의하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그것은 아마 협의를 할 때 법원행정처에 해서는 안 되고요, 그 판결 관련돼 가지고 법원행정처가 그렇게 할 수 없을 겁니다. 법제처하고 논의를 해서 협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맞습니다. 법제처의 의견을 한번 같이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다시……

○**류성걸 위원** 잠깐만요, 법안을 낼 때는 반드시 법제처의 심사가 필수입니다. 그리고 법제처는 이미 이것에 대해서 논의가 다 되어 가지고 문제 없다는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정부안으로 국무회의에서 의결돼서 대통령 결재받아서 재가받아서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서 의견이 문제가 아닙니다. 법원에서 판결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법제처 의견 다시 한번 들어 보시고요, 전문가 의견 한번 들어 보도록.

○**소위원장 김영진** 다시 한번 확인 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2번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 확대 관련해서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호** 44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 확대 관련 내용입니다.

이것은 두 건의 개정안이 있는데요. 정부안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직계비속인 상속인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직계비속의 사망에 따라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에 대해서 적용하자는 거고요.

김수홍 의원안은 그 배우자 범위에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여 적용하자는 내용입니다.

46페이지입니다.

현행 제23조의2에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대한 제도가 있는데요. 현행 10년 이상 동거분양 등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면 상속주택가액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공제 한도는 6억 원으로 한다는 내용이고요.

47페이지 보시면 동거주택 상속공제 제도 연혁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첫째, 부모를 봉양하는 직계비속을 우대하기 위한 취지를 고려할 때 직계비속이 부모를 동거 봉양한 경우와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부모를 동거 봉양한 경우를 동일하게 취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직계비속의 배우자에 사실혼 관계인자를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는 민법상 상속인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피상속인을 모시고 10년 동안 같이 사는 경우에 그리고 그 집을 상속받을 경우에 최대 6억 원 한도까지 공제를 받는 건데요. 같이 모시는 분이 누구냐, 모시고 같이 사는 분이 누구냐 해서 지금까지 직계비속까지 됐는데 이제 아들의 배우자(며느리)라든지 딸의 배우자(사위) 이런 분까지로 더 확대하자, 그래서 취지는 사실상 같이 봉양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는 저희들은 확대했으면 하는 거고요.

김수홍 위원님 주신 그 부분은 이런 부분까지 더 확대하면 좋겠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민법상 상속인 범위에 사실혼인 배우자는 아직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이번에는 배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의견을 드렸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홍 위원님.

○김수홍 위원 저도 전문위원 의견과 또 정부의 의견을 수용하면서요. 이렇게 우리 사회가 초고령사회가 되고 또 비혼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 제기를 했는데 위원님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해 주시면 수용하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사실상의 배우자까지 포함하는 부분은 우리 지금 법체계 자체가 전혀 이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손을 대야 돼서 이 부분은 좀 철회하는 게 맞지 않나……

○김수홍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의견을 수용하셨으니까요.

유경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준 위원 지금 그 설명에는 직계비속의 사망에 따라서 했는데 법안 내용에는 그냥 직계비속의 배우자로만 되어 있어 가지고 직계비속이 살아 있는 경우에도 배우자도 포함돼요? 사망한 경우에만 배우자……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상속은 사망하신 경우에만 하고 증여가……

○유경준 위원 아니, 지금 여기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적용하는데 직계비속이 사망한 경우에 해당돼요?

○기획재정부제제실장 김태주 그러니까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원래 상속인이 아닌데 직계비속이 사망을 하면 상속인이 되는 겁니다.

○유경준 위원 그러니까 항목에는 직계비속이 사망한 경우라는 말이 없어서 괜찮으나 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제제실장 김태주 예, 조문상 문제는 없습니다.

○유경준 위원 전문위원, 그래요?

○전문위원 정명호 예.

○유경준 위원 살아 있는 경우에 분쟁이 생기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제제실장 김태주 살아 있을 경우에는……

○박형수 위원 살아 있으면 배우자는 아예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유경준 위원 직계비속한테만 가는 거예요?

○박형수 위원 그렇지요, 직계비속한테만 가는 거지요.

○소위원장 김영진 이것은 이의가 없으므로 동의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3항 전문위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호 50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 시 과세 범위 합리화 관련입니다.

5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개인 간 거래에 대해서도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자는 것인데요.

이 부분은 현행 규정 먼저 말씀드리면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서는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있어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기준금액—시가의 30% 또는 3억 원입니다—이상인 경

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
되 개인과 법인 간 재산거래 시 대가가 법인세법
제52조 2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예외 규정이 있는데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개인 간 거래는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 시가평가 방법을
준용하도록 해서 그전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예외를 두는 이유는 법인세법
이나 다른 세법에서 정당한 거래로 인정하는 것
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도 정당한 거래로 인
정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2021년 2월 17일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
정했습니다. 개정을 하면서 167조 7항을 신설했
는데 신설 내용이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이런 규정을 도입해서 개인 간 상
장주식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가와 차이가 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소득세법상 상장주식의 시가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이 평가기준일 전후
2월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정하고 있었으
나 2021년 2월 17일부터는 법인세법과 같이 제삼
자 간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등이 적용되는 것
으로 변경이 되어서 개정안은 소득세법상 부당행
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2021년
2월 17일 이후 양수·양도한 경우에도 개정안을
적용하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타당하다고 보
이고요.

하단에 저희 수정의견은 뭐냐 하면 금융투자소
득세에 대해서도 개정안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
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주로 개인 간 주
고받을 때 시가보다 더 낮게 더 높게 하면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증여 아니냐 이렇게 해서 과세
를 하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시가가 도대체 어느
정도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법인세 같은 경
우는 별도로 정당한 평가라고 봐둔 부분이 있
어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법인세 것을 따르

다 이렇게 한 거고요.

그런데 소득세법 같은 경우는 지금 소득세랑
상증세랑 똑같이 때문에 굳이 그런 규정을 안 뒀
는데 소득세법 시행령이 바뀌니까 거기서도 법인세
와 마찬가지로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시
가 평가 그런 부분들은 그것을 따라 주겠다, 그
래서 정합성들을 맞추는 내용이 되겠고요.

전문위원께서 지금 주신 의견은 저희들이 수
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류성걸 위원 위원장님.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류성걸 위원 차관님, 그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지금
문제가 생긴 것 아니에요, 맞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예.

○류성걸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다른 것
할 때도 그런 것을 좀 느꼈는데 이게 보니까, 제
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심한 표현인지 모르겠
는데 가끔씩 보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그런 경
우가 있어요. 그래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하면
서 이런 문제가 생길지 몰랐습니까?

세제실장 답변하세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위원님, 박금철
국장이……

○류성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무
슨 사후 AS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지금 완전히
그런 거예요.

박금철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 박금철 제가 말
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소득세법 시행령을 먼저 고치기 이유는
상증법을 먼저 고치면 소득세법에서 뭐뭐뭐로 평
가하는 경우에는 상증법 적용을 안 한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 소득세법에 뭐뭐뭐로 평가한다
는 게 없는 상태에서 상증법을 먼저 고칠 수가
없어 가지고 소득세법을 먼저 고쳐야 되는데 시
가 평가에 관련된 소득세법이 시행령에 되어 있
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일 이상적인 상황으로 보
면 상증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을 동시에 같은 날
고치면 사실 이런 문제는 안 생깁니다, 이론적으
로 하면.

그런데 보면 원래 법률이 고쳐지고 시행령 작
업이 되어야 되는데 소득세법 시행령은 지난 2월

달에 시행령 작업이 돼 가지고 고쳐졌는데, 그래서 지금 내용적인 어떤 변화가 있다기보다는 그렇게 먼저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그런 규정이 고쳐졌기 때문에 그것을 상증법에서 인용을 할 수 있습니다. ‘아,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평가가 됐을 경우에는 상증법을 적용하지 않겠다’ 그래서 약간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류성걸 위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기부금 관련해서도 똑같은 취지의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국회가 무슨 AS 하는 데예요?

제가 오늘 좀 거친 말을 해서 죄송한데 지금 보면 내질러 놓고 처리하라는 거예요. 그것 예를 들어서 2월 17일 날 했으면 그때 우리 국회에다가 보고를 하고 ‘이런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되니까 개정안을 같이 내서 이렇게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컷 있다가 물론 9월 달에 저거했지만, 기본적인 생각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이것도 지금 내질러 놓고 우리보고 AS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위원님 주신 그 말씀 취지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아까 박 국장이 얘기한 대로 살짝 기술적으로 보면 이게 동시에 탁 가기가 쉽지 않은 측면도 좀 있어 가지고요.

○류성걸 위원 아니, 법안을 내놔야 될 것 아닙니까? 법안을 내 갖고 그때 이렇게 이런 부분도 있어서 그리고 우리 기재위가 열렸을 때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나중에 법안을 곧 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말씀이 나왔으니까 그런데 정부에서 정책을 발표하고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시행 안 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정부 정책을 못 믿겠다는 것 아닙니까? 내질러 놓고 하고 그리고 충분히 관련되는 것은 상임위하고 상의를 하고 보고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받고 이렇게 하면 국회에서도 ‘아, 이런 정도 되는구나’ 이렇게 하는데, 실컷 미리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기재부에서는 국회의 입법활동에 있어서 입법부가 뒤따라가는 아니면 당연히 해 주겠지…… 뭐, 그렇게 했지요. 이렇게 또 표현하면 여당 위원님들이 좀 그거하시겠지만 거대 여당이니까 당정 협의해 갖고 처리하겠다 이런

생각을 혹시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입법부와 또 행정부에서 해야 될 일하고 충분히 보고할 사항은 보고하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한 말씀 드리면 당정협의한 적이 없습니다.

○류성걸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해 놓고……

○소위원장 김영진 한 적 없습니다, 사실관계를 말씀드립니다. 저랑 협의한 적 없습니다.

(웃음소리)

그래서 지금 류성걸 간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법 시행령 개정 시에 시기 그리고 적용 속에서 계속 에러가 나오는 부분들을 예측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같이 발의하고 바로 바로 수정을 하고 입법부에 보고해서 즉시 수정해서 이렇게 이 간격에서 나오는 우려 이런 문제들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이후에 기재부에서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담당 국장님들 유념하셔서 관련 사안들을 잘 백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3항은 동의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4항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호 54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초과배당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규정 명확화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현행 제41조의2에서는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관련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기준과 관련해서 ‘법인이 배당등을 한 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인이 배당등을 한 날이 뭐냐 이게 명확하지 않은 면이 있어서 국세청은 이를 ‘법인이 배당금 또는 분배금을 실제로 지급한 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명확하게 하는 개정안이고요.

그다음에 신고기한 조정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초과배당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하는 시행령 내용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법에 규정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초과배당이라는 것이 아버지랑 아들이 있으면 주식을 배당할 때 아버지가 자기가 받을 것보다 덜 받고 아들한테 더 많이 줘서 사실상 증여를 하는 그런 형식인데요. 물론 의결은 거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

게 자체가 굉장히 특수하기 때문에, 특수관계자이기 때문에 초과배당에 대해서는 초과배당이익이라고 간주를 해서 저희들이 세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기는 시점을 법문을 보면 배당등을 한 날 그러니까 이게 의결 날을 얘기하는 건지 실제로 돈을 준 날을 얘기하는 건지 그게 불명확해서 지금 해석 처리하고 있는 것을 법문에 명확하게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시행령에 있는 부분을 법으로 끌고 와서 더 상향해서 명확하게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이것은 명확한 조문 정리라서 동의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5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호 위원 위원장님, 이것도 주의를 한번 줘야 되겠는데요.

전문위원 지적이 지금 57쪽의 제일 하단에 있는 부분이 원래 법에는 5월 31일로 돼 있었는데 시행령에서 괄호로 해서 이러이러한 경우는 6월 30일까지로 한다 해 놓고 그것을 다시 또 법으로 와서 그것을 명확히 한다고 다시 개정한다, 지금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이지요?

○전문위원 정명호 예.

○추경호 위원 어떻게 생각해요, 정부는?

왜 법에서 할 때 그렇게 하지 않고 시행령에서 자기 마음대로 또 탄력적으로 했다가 그것을 다시 법으로 끌고 와서 다시 치유한다고 법으로 하느냐, 이런 것이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다. 법을 할 때 미리 좀 정교하게 판단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시행령에서 잘못된 것……

지금 외형상으로 시행령에 있는 것을 다시 법으로 한다 이런 것이 언뜻 보면 바람직한 것 같은데 시행령에서 엉터리로 한 것을 가지고 지금 다시 치유하는 이런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아까 여러 차례 지적을 했는데 정부에서……

이런 부분은 사실은 우리 국회가 이런 것까지 일일이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전문성을 가진 여러분들이 제대로 보고 늘 치밀하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정부는 수없이 많은 입법예고나 관계 부처 협의, 현장 얘기를 다 듣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이런 사례가 생기면 안 된다, 앞으

로.

이것에 관해서는 차관이 한 말씀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김영진 부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호 위원 한 말씀 하세요, 차관님. 아니면 세제실장이 한 말씀 하시든지, 차관님은 늦게 와서 잘 모를지 모르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아쁘게 받아들이고 유념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호 5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익법인 전용계좌 미개설 가산세 부과기준 개선인데요.

개정안은 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 미신고 가산세를 해당 사업연도 전체의 공익사업 목적 관련 수입금액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는데 미신고 기간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미신고 기간에 차등을 두고 가산세를 부과하려는 것인데요, 타당한 입법으로 보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공익법인은 직접 공익목적 사업과 관련한 수입과 지출에 대해 전용계좌를 사용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3개월 내에 전용계좌를 개설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이 가산세를 부과하는 부과 기간이 지금은 그냥 회계연도 이렇게 해서 1년 치 전부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면 1년 3개월이다 그러면 2년 치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1년 3개월 치만 부과해서 그렇게 되면 오히려 가산세가 적어지기 때문에 공익법인이 더 조기에 신고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길 위원 저는 이의 없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동의 처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6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호 62페이지입니다.

재산세 과세대상 자료 통보 의무 대상에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63페이지에 보시면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관련 규정이 있어서 특별히 문제는

없지만 직접 주체를 명시해서 명확하게 하자는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의견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이것은 조문 정비 차원이고요, 그래서 명확히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7항 말씀해 주세요.

○전문위원 정명호 64페이지입니다.

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제출 의무 부여입니다.

82조에 규정된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과 관련하여 개정안은 금융투자업자로 하여금 양도 외의 방식으로 주식 등이 증권계좌를 통해 이체된 경우에 그 이체 내용을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인데요.

현행 증권거래법 제9조의2에는 금융투자업자로 하여금 증권계좌를 통하여 납세의무자가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 거래의 증권계좌 간 이체 내용 등을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양도 외의 방식으로 증권계좌 간 이체를 하는 경우에는 이체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있어 과세 당국이 증여세 세원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과세 당국으로 하여금 특수관계인이 계좌 간 이체를 통해 주식 등을 증여하는 경우에 대한 과세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증권거래를 하면서 계좌 간 이체를 하는데요. 보통은 양도이기 때문에 이체를 하는데 사실은 무상증여 같은 경우도 그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넘어가는 화면을 보면 ‘양도 거래 여부’ 그래서 ‘예, 아니요’가 있는데 ‘예’만 클릭을 하게 돼 있고 그러면 그 ‘예’가 클릭이 되면 그 정보만 국세청에 가게 돼 있는데요. ‘아니요’ 이런 부분도, 무상증여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과세 관청에서는 그런 자료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포함해 달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류성걸 위원 양도 외의 방식은 계좌 간 이체

예요? 뭐지요? 양도 이외의 방식으로 계좌 간 이체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무상으로……

○류성걸 위원 무상?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예, 무상증여.

○류성걸 위원 또 어떤 게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태주 주로 증여세 문제입니다. 증권거래세법에 의해서는 서로 사고파는 것 있지 않습니까? 양도 방식으로 한 것은 증권거래세법에 의해서 국세청장한테 자료를 주게 되어 있는데 증여와 관련된 자료제출 의무 규정은 없기 때문에 이게 누락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증여했을 때의 그 내용도 과세 관청에다 좀 줘라, 그래서 세원 확보를 해 보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류성걸 위원 좋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동의한 것으로 하고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부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호 부가가치세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6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신탁법상 위탁자 지위 이전에 대한 재화의 공급 간주 관련된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가 이전되는 경우 기존 위탁자가 새로운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공급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신탁재산 관련 과세를 합리화하자는 내용입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신탁재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원칙적으로 위탁자에서 수탁자—신탁회사입니다—로 변경되는바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것은 통상 대가를 주고받는 신탁재산의 실질적인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거래의 실질임에도 불구하고 명목상 신탁재산의 소유권 변동이 없으므로 법령상 부가가치세 과세가 가능한지 여부가 불명확한 면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위탁자의 지위가 이전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함으로써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입법 조치로 보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실질에 있어서 변동이 없는 부분을 보다 명확히 해서 과세 형평을 제고하는 그런 차원의 입법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안이 없기 때문에 동의 처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2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호** 69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선발급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특례 요건 완화입니다.

개정안은 동일 과세기간 내에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대가 수령이 이루어진 경우 선발급 세금계산서를 인정하던 것을 대가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 선발급 세금계산서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71페이지의 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은 6월 25일 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6월 27일 날 재화를 인도한 상태에서 대가 수령이 7월 1일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재발급할 필요가 있었는데요,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재발급을 불필요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원래 세금계산서는 공급되는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게 원칙인데 선발급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허용을 해 줘서 납세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걸 위원** 잠깐만요, 이게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다는 차원에서는 맞는데 이 기간을 얼마 정도 두는 것이지요? 지금 여기서는 예를 들면 한……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부가가치세가 1기, 2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1기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기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동일 과세기간 내입니다.

○**류성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동일 과세기간 내라고 하는데 지금 부가가치세가 뭐가 문제냐 하면 체납이 가장 많습니다. 그렇지요? 왜냐하면 부가가치세라는 것은 사실은 재화와 용역이 교환이라든지 매매라든지 이렇게 됐을 때 그때 이미

사실은 납세의무가 발생을 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자가 납부를 해야 되니까…… 사실은 매입자로부터 세금은 이미 받았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같이 해서 이 기간을 같은 납세 기간이라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소위원장 김영진** 담당 국장님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 박금철** 지금 제가 이해하기로는 아마 위원님 질문 자체는 대금의 수령 시기도 동일 과세기간으로 해야 된다면 그런 말씀이신 걸로 제가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현재 제도는 뭐냐 하면 현행 제도는 동일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가 선발급이 되고 재화가 공급이 되고 대금까지 수령이 돼야 이것을 인정해 주는데 지금 저희가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동일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가 발급이 되고 공급까지만 이루어지면 굳이 그다음 과세기간 내에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더라도 먼저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인정을 해 주겠다……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먼저 과세기간에 했었던 세금계산서를 취소를 하고 대금이 수령된 그다음 과세기간에 또 그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납세자 편의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류성걸 위원** 대가 수령이 안 되면요? 세금계산서는 발급을 했는데 문제가 생겨서……

세금계산서라는 것은 이미 해서 국세청에 이미 파일 업(file up)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영어로 해서 미안한데, 이미 국세청에 다 신고가 된 거예요, 전산으로.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그렇습니다.

○**류성걸 위원** 전산으로 됐는데 대가를 여기는 7월 1일이라고 했지만 대가가 언제 들어올지 불확실한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대가 수령이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류성걸 위원** 그래서 편의성을 강조하다 보면……

세금계산서 발급했다는 것은 어쨌든 서로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식의 예외를 두면 기간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 나중에 이것이 권리·의무와 채권·채무와 관련돼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나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대가 수령이 안 되면 이것은 허위 세금계산서가 됩니다. 그것은 이것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류성걸 위원** 그러니까 적용 대상이 아니라 결국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을 때 아니면 대가 수령을 했을 때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그래서 납세 편의를 위해서 같은 기간 내에만……

○**류성걸 위원** 그 납세 편의라는 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원칙하고의 경중이랄까 따지면 어느 것이 더 무겁고 어느 것이 더 가벼울까요?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국세 체납 중에서 부가가치세의 체납이 3분의 2 정도 돼요. 맞습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맞습니다.

○**류성걸 위원** 그 정도 돼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제일 많은 것으로……

○**류성걸 위원** 그래서 다른 것은 직접 납부를 하면서 또 납세 의무가 다 종결이 되는 것인데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매입자가 납부를 했다고, 본인은 전부 다 재화·용역의 가격에다가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해서 지급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급받은 사람이, 공급자가 말하자면 떼먹고 간다든지 또는 다른 상황이 돼 가지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특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야기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런 경우는 납세의 편의성을 위해서 다른 것을 잃어버릴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 박금철** 제가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부가세의 체납 문제는 많이 있는데도 이 제도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더 체납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설명드린 동일 과세기간 내에 공급시기가 도래하고 대금을 수령하라 이 조건은 선발급 세금계산서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발급이 아니고 그러면 여기서 예에 의하면 실제로 공급 시기가 왔으면 대금을 수령하지 않은 하든 원칙상 바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선발급 계산서에서는 거기에 대금 수령이라는 조건이 추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완화하자는 것이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물론 부가세 체납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닌데 이 개선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더 체납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다 이런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류성걸 위원** 이것을 조금 더 한번 보도록 합시다.

○**소위원장 김영진** 검토?

○**류성걸 위원** 예.

○**소위원장 김영진** 그래요, 이것은 한번 그 관련한 사안들 점검하고 실제로 현장에서 이 관련한 문제를 위원님이 제기한 문제가 어떤지 확인하고 다음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호** 7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저가로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시가 과세기준 보완 관련입니다.

개정안은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 무상·저가로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적용하던 것을 신탁관계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위탁자의 특수관계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하자는 내용입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조세부담을 부담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무상 또는 저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 대가가 아닌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2022년 1월 1일부터 신탁재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원칙적으로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되는바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대한 시가 과세 규정도 신탁회사와 신탁회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해서 적용되게 됩니다.

그러나 신탁관계에서 무상·저가 거래를 통한 조세탈루 유인은 신탁회사와 신탁회사의 특수관계인 외에도 신탁회사와 위탁자의 특수관계인 간에도 발생하는 것이나 현행 법률에 따르면 이에 대해서는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대한 시가 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못하게 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실질에 따라 세법을 해석하고 과세요건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실질과세 원칙에 보다 부합하는 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위탁자의 조세탈루 목적으로 신탁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개정안에 따르면 납세의무자인 수탁자가

위탁자와 공급하는 자 간의 특수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나 수탁자가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면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이 위탁자의 의지에 따라 위탁자의 특수관계인에게 공급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납세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등의 보완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위탁자의 특수관계인에게 공급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납세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대통령령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내년 1월부터는 신탁재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에서 수탁자(신탁회사)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는 시가로 하게 돼 있는데 여기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거냐 보면 신탁회사는 그냥 신탁회사와 관계된 특수관계인 정도로 하면 되는데 위탁자 같은 경우가 사실은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위탁자의 특수관계인이 생길 수 있어서 신탁회사가 위탁자의 특수관계인 여기까지 하는 것도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이렇게 범위를 명확하게 했어요.

전문위원님 지적하신 경우는 이렇게 되니까 수탁자(신탁회사)가 사실상 위탁자의 특수관계인까지 이렇게 확인하는 데는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수탁자가 아니라 위탁자가 납세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전환시키면 어떨까 보완 방안을 강구해 봐라 그러서서 이것은 한번 저희들이 신탁협회랑 협의를 해 봐서 그런 방안들이 있는지 보완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위탁자의 조세탈루 목적으로 신탁 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할 그런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수탁자에게 과도한 인적 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이 수탁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인적 정보 수집이 사실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위탁자와 수탁자를 속일 경우에 조사할 수 있거나 그런 권한이 없어서 위탁자와 공급받는 자

간의 특수관계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특수관계 사실이 신탁계약 해지 이후에 밝혀질 경우에 납세의무자인 수탁자가 부가가치세 추정액을 부담할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안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납세의무자인 수탁자가 위탁자와 거래 상대방의 특수관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제도 장치가 보완돼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그래서 조금 전에 차관이 답변드린 내용이 위탁자 지시로 수탁자가 위탁자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납세 의무자를 위탁자로 바꾸는 것을 시행령에다가 규정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주영 위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합의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4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호 76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일괄 공급된 토지·건물 등 가액의 안분계산 보완 관련입니다.

77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29조 9항에 따르면 토지·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 등을 고려한 안분계산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과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현행 규정은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한 경우—밑에 주 16입니다—사실상 재산적 가치가 미미한 철거 예정 건물 등의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30% 룰이 적용됨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이 공급가액으로 적용되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30% 룰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토지와 건물을 일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이것은 토지·건물 가액에 대한 안분계산법 적용 기준을 보다 좀 합리화하려는 거고요. 그래서 사업주가 구분한

가액이 다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 등 합리적인 사유가 있으면 기존의 안분계산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5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호 7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매입자발행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명확화입니다.

개정안은 매입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경우에 공급 계약의 해제·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가 포함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상거래 시 빈번하게 발생하는 계약의 해제·변동분에 대해서도 매출자가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려는 것으로 상거래 현실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취지를 보다 명확하게 구현함으로써 매입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사업자의 부도·폐업, 계약의 해제·변동의 경우 더 제한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수정의견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부도·폐업, 공급 계약의 해제·변경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이는 수정의견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발행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공급자가 미발행했을 경우 예외적으로 과세관청의 확인을 받아서 매입자가 발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발행이 가능한 사유를 지금 현재 공급자의 부도·폐업 이렇게 해 놔는데 사실은 부도·폐업이 아니더라도 공급자가 영업 중이더라도 상거래 시 빈번하게 발생하는 계약의 해제·변동 이런 사유를 더 추가하겠다 해서 납세 편의를 제고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문위원 말씀 주신 대로 그것 외에도 또 추가적으로 더 있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 부분은 대통령령에서 좀 답아라 그런 부분은 저

희들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추경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호 위원 좋다고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동의입니다.

그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상황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 한번 가정을 해서 구체적인 아이템이 아니어도 이러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게 혹시 전문위원이나……

○전문위원 정명호 현재 예상되는 것은 없고요, 그간에 국세청에서 현행 규정도 ‘등’을 엄격하게 해서 더 이상 없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여지를 열어 놓자는 차원입니다.

○추경호 위원 여지가, 저는 구체적인 사안은 아니더라도 어떤 상황 등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느냐.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그러니까 공급자가 일단 공급을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야 되는데 발행을 안 해 주는 케이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입자가 발행을 할 수 있는 케이스인데, 주로 공급자가 갑의 위치에 있거나 아니면 뭘 끊지 못하는 상황이 되거나 그런 경우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서 지금 보시면 부도·폐업 또는 공급 계약의 해제·변경 이런 등의 사유 정도가 있는데요.

지금 전문위원은 또 뭐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대통령에다 좀 넣어 봐라 그 얘기……

○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 박금철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면 주요 기재 사항이 실수로 잘못 기재됐을 경우에 그런 사례도 추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지를 두는 것도 일용 좋은 측면이 있는데 우리가 과다하게 자꾸 이래 놓으면 나중에 또 자의적인 적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엄격히 한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대통령령이라는 게 가급적 불확실한 상황,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건데, 기술적으로, 그런 부분에 관해서 혹시 싶어서 제가 질문해 본 거고,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좋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개정안과 전문위원의 의견을 포함하여 합의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정의견 포함입니다.

다음 6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호 83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표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입세금계산서 제도가 있는데요.

1호 같은 경우에는 세관장이 과세표준·세액을 결정·경정하기 전에 수입하는 자가 수정신고하는 경우 발급이요. 이걸 개정안 동일합니다.

그런데 2호 같은 경우에 세관장이 과세표준·세액을 결정·경정하는 경우 또는 수입하는 자가 세관공무원의 관세조사 등이 발생하여 과세표준·세액이 결정·경정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는 경우, 현행 원칙은 미발급입니다. 현행 원칙 미발급이고 하단의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발급하도록 돼 있는데요.

개정안 같은 경우에 2호에 해당되는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발급하되 예외적으로 미발급할 수 있는 조항을 3항에 신설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예외적 미발급 기준 중에도 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고발·통고처분 후 무죄취지의 불기소 처분이나 이런 처분의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당초 세관장이 결정·경정한 내용이나 수입하는 자가 수정신고한 내용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논의는 89페이지 표 위쪽에 보시면 2020년 하반기에 정부는 개정안과 유사하게 현행의 원칙적 미발급, 예외적 발급 구조를 원칙적 발급, 예외적 미발급으로 변경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였으나 이렇게 할 경우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가 증가할 수 있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어 논의가 보류된 바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92페이지입니다.

이 개정안은 첫째, 납세자가 실제 부담한 부가세 부분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실질과세 원칙에 보다 부합한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착오·경미한 과실·귀책사유가 없음과 같은 불명확한 개념에 대한 납세자의 입증 책임을 면하게 함으로써 법률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과세 관청의 권한 남용 가능성을 축소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 가산세 또는 형벌을 부과하는 데 더하여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을 통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중복제재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고의적인 조세포탈 행위, 상습적인 부정행위 등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수정수입계산서를 미발급함으로써 고의적인 과소신고 유인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고려할 사항입니다.

첫 번째, 수입단계에서 수입가격을 성실하게 신고할 유인이 감소하여 동 제도를 통한 성실신고 유도 효과가 다소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및 국내 시장질서 교란에 대한 세관 당국의 대응수단이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제출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다국적기업의 과세자료 미제출·거짓제출 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을 강화할 목적으로 과세자료 미제출·거짓제출에 대한 과태료 부과 후—이것은 현행입니다—미제출·거짓제출 행위에 대해 시정요구하고 시정요구 미이행에 대하여 추가 과태료—최대 2억 원입니다—를 부과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동 법률안이 입법화되는 경우 이러한 우려는 다소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익원 수입업자가 수입계산서를 신고했는데 세관장이 거기다 확실히 결정을 해 버리면 그다음에 봤더니 잘못 과소하게 신고했다 그래서 다시 경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한 번 세관장이 결정을 하면 원칙으로는 미발급이 원칙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납세자 편의 차원에서 원칙은 발급이고 대신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으면 발급을 안 해 준다, 범칙행위라든지 부당한 과소신고, 중대한 과실 이런 것들은 여전히 발급을 제한하는데 원칙은 풀어 주는 그런 게 되겠고요.

혹시라도 이러다가 다국적기업 같은 게 조세 회피하는 것 아니냐 하는데 지금도 제대로 하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범칙금 같은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제도를 통해서 강화하면 되지 않은가 하는 부분이고요.

대신 아까 전문위원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것 외에 관세법에 시정을 안 할 경우에는 지금 과태료가 1억 원 정도인데 거기다가 추가로 2억 원을 더 보태는 그런 강화조치도 보완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입법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관세청도 작년에는 반대했지만 올해는 그 두 가지를 다 병행하면서 보완했기 때문에 관세청도 동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

기 바랍니다.

○박형수 위원 이게 작년에 관세청 공무원이 나와서 얘기한 그 사안이지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맞습니다.

○박형수 위원 지금 관세청장이 그때 그 당시에 세제실장이었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

○박형수 위원 그래서 기재부는 이렇게 하고 관세청은 이걸 반대를 했었는데 세제실장이 지금 관세청 가니까 기재부 의견에 동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온 것 같은데, 구조가 뻐하잖아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내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위원님.

○박형수 위원 내용을 우리가 지난번에 논의를 할 때 이렇게 함으로써 무슨 실익이 있느냐, 세수에도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고……

아까 다국적기업 얘기가 나왔는데 다국적기업이 일단 그렇게 신고했다가 나중에 수정하는 것 다 혜택을 주면 뭐 하려고 그렇게 편의를 봐 주느냐 이런 얘기들을 지난번에 하면서 이 사안을 보류시켰는데 이번에 청장이 바뀌어 가지고 이렇게 슬쩍 오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하고 논의를 해서 관세청 얘기도 필요하면 다시 한번…… 그 당시에 관세청에서는 실무에서는 이것을 다 반대한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관세청장님 바뀌었다고 해 가지고 갑자기 실무진도 다 찬성할 리는 없을 거고 청장과 실무진 얘기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인해 보고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담당 국장 있어요?

이것 관련해서 간략하게 보고 한번 해 보세요.

○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 박금철 재산소비세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그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보완을 했는데 관세청하고 협의해서 사유를 더 추가한 게 예를 들자면 동일한 신고 오류를 반복하는 경우 이 경우에도 제외하는 것으로 같이 넣었고 아까 차관이 얘기했지만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서 관세법상의 과태료도 강화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소신고를 했을 경우에 제재는 가산세라든지 이런 벌칙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까 저희가 이런 판단이고, 자기가 낸 세금까지도

다시 돌려주지 않는 것은 조금 지나치지 않나 이런 게 저희 판단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지금 박형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관세청하고 한 번 더 확인하시고요. 의견을 받고 그렇게 변동된 사항 확인하고 또 과거와 현재 이 법률안이 수정된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한 이후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님. 한 번 더 들어 보고요.

○류성길 위원 예, 논의 더 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관세청으로부터 위원들도 직접 한번 얘기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차관님, 다음번 이 논의 때 관세청 담당 국장 잠시 배석해서 의견을 좀 주라고 하십시오, 왜냐하면 현장에서 이 업무를 처리하는 거니까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익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관세청 배석해서 의견 듣고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관세청 국장 배석하는 문제는 좀 더 논의를 해 보도록 합시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관세청장이, 이 법안에 찬성하던 사람이 관세청장으로 갔는데 국장이 와 가지고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 얘기를 더 들어 보는 게 좋을지는…… 찬성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관세청 직원들도 있을 테니까 균형 있게 들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그러면 간사 간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형수 위원 예.

○추경호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확인 관련해서 의사진행……

○소위원장 김영진 예, 위원님.

○추경호 위원 아까 항목 3번의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저가로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시가 과세기준 보완, 정부안 있었잖아요. 그래서 축하하면서 위탁자와 특수관계인의 확인 등 이 부분, 전문위원이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부분을 제시했지 않습니까, 75쪽에? 이 부분에 관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마무리할 때 대통령령에서 어떻게 규정할지를 전문위원도 보고 그게 치유될 수 있

는지를 같이 해서 법안을 최종 확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명호 예.

○소위원장 김영진 대통령령으로 하는 내용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요.

○추경호 위원 다음에 그것을 확인하고 저희들이 최종 하자 이 말씀입니다, 오늘이 아니고.

○소위원장 김영진 알겠습니다.

다음 7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명호 96페이지입니다.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조정, 적용기한 연장 관련되는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은 소규모 음식점에 대하여 적용되는 면세농산물등의 의제매입세액 우대공제율을 인상, 적용기한 연장 등을 통해 소규모 음식점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거나 식품제조업에 대하여 적용되는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인상함으로써 식품제조업에 대한 조세부담을 경감하려는 내용입니다.

101페이지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규모 음식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인상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로 인하여 음식점업 폐업이 증가하고 있고 평균 매출도 급감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소규모 개인음식점에 대해서 민생 안정 차원에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농림어업 분야에 면세유 등 각종 세제 혜택이 제공됨에 따라 농산물 등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제 부가가치세 부담은 매우 낮다는 점에서 현행 공제율도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실제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규모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음식점에 대한 우대공제율 적용기한 연장 관련입니다.

지속적인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의 장기화에 따라 음식점의 매출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계속 높게 유지하여 영세 음식점 사업자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됩니다.

다만 농림어업 분야에 각종 지원 및 세제상 혜택이 제공됨에 따라 농산물 등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제 부가가치세 부담은 매우 낮으므로

우대공제율이 실제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다음 105페이지입니다.

식품제조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인상 관련입니다.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인상하고 과자점업·도정업 등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공제율을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음식점업에 비해 낮은 공제율을 적용받고 있는 식품제조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음식점업과 식품제조업 간 과세형평성 문제를 완화하고 지속적인 최저임금 인상,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불황으로 인한 중소기업 제조업의 경영환경이 악화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통한 세정 지원으로 영세한 식품제조업체의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농림어업 분야에 면세유 등 각종 세제 혜택이 제공됨에 따라 농산물 등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제 부가가치세 부담은 매우 낮다는 점에서 현행 공제율도 식품제조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규모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라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조정인데요. 실제로 면세농산물은 면세가 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매입 처리가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일정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묻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의제해서 저희들이 빼 드리는 그런 것이어서 사실은 소상공인들 지원해 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적용기간 문제인데 적용기간 문제는 다 아시는 대로 코로나19로 경영 여건들이 굉장히 어려운 점들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2년 일몰인데 적용기간을 2년 더 연장하려고 합니다.

일부 소규모 음식점이라든지 식품제조업 이런 부분에 적용되는 공제율을 추가로 더 인상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의원님들께서 발의를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따져 보면 실제로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이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면세이기

때문에 실제로 다 발라내 보면 많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저희들이 해 드리는 이 부분을 보면, 실제 부담하시는 것과 지원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지원해 드리고 있고요. 지원 규모도 사실 그 규모 면으로 보면 전체 합쳐 보면 굉장히 큰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적용기간만 연장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호 위원 정부안 좋습니다.

○류성걸 위원 지금 어려운 음식업 포함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의원님들 안을 보면, 예컨대 김용환 의원안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과세표준 2억 원 이하인 경우에 110분 10, 지금 현재 109분의 9인데 이렇게 됐을 때 얼마 정도 차이가 나나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금액 차이 말씀이십니까?

○류성걸 위원 금액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음식점 한 개를 예로 든다면 매출액 얼마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왜냐하면 이게 100분의 10이면 지금 부가가치세 그대로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110분의 10이니까 그 차이는 조금 나는데 결국 109분의 9, 110분의 10 아니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100분의 10 이렇잖아요, 그렇지요? 얼마 정도 차이가 날까요? 그것 혹시 계산해 본 적 있나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김태주 예를 들자면 농산물 사 올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해 주기 때문에 1년에 농산물 구입하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다 그러면 러프하게 따져 보면 110분의 10이면 한 100만 원 정도가 될 것이고 109분의 9면 약 구십몇만 원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는 한 1000만 원어치 농산물 구입할 때 팔구만 원 차이 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류성걸 위원 그래서 오히려 여기에는 지금 안으로 안 돼 있는데…… 아, 여기 나오나요. 그것보다는 한도에 관련해서 사실은 더 관심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여기 한도 관련되는 사항은 없네요, 그렇지요? 이번에는 캡 관련되는 사항은, 실장님?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장 이주현 담당 과장 부가세과장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류성걸 위원 말씀하세요.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장 이주현 한도는 현재 시행령으로 조정하고 있고요. 시행령도 18년 하반기부터 저희가 공제 한도를 높여서, 5%p씩 올려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류성걸 위원 그러면 결국 한도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외식업계에 세율 관련해서도, 굉장히 공제율 관련해서도 그러는데 한도를 높여 달라 하는 이야기가 사실은 더, 그게 더 실질적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10분의 10하고 109분의 9하고 차이가 얼마 정도 되느냐 이런 것보다는 한도를 높여 줘서 실질적인 도움이……

그러면 다음에 지금 시행령에 되어 있는 한도 관련된 자료를 같이 논의,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전에 전체 위원님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국장님.

○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 박금철 지금 저희가 자료를 찾았는데요,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한도가 원래 연 매출액 2억 원 이하는 공제 한도가 50%입니다. 그런데 음식점 같은 경우는 한시적으로 65%까지 높여서 하고 있는데 이 제도를 지금 계속 연장을 해 오고 있습니다.

○류성걸 위원 그래서 그렇게 따져 보면 관심이 더 많은 부분은 시행령에 되어 있고 또 공제율은 지금 법령에 되어 있고, 중요성으로 따지면 아니면 또 관심 사항으로 따지면 그것도 어떤 기준을 정해서 범위 내에서 한다면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차관님?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그러니까 보통 세율이나 이런 것들은 법률에 명확히 하고 한도 같은 경우에는 시행령에 위임하고 이런 구조인데요. 한번 저희들이 말씀 주신 대로 그때 다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성걸 위원 예, 같이 논의하도록 합시다.

○소위원장 김영진 김수홍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홍 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식품제조업자에 대해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인상하는 것은 좀 부정적으로 써 놔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면 음식점업이나 영세업자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은 맞는데 식품제조업자까지 이렇게 공제율을 인상하는 것은 부정적인 의견인데.

전문위원, 제조업자들도 어려운 사람들도 많아

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정부안을 수용해서 그렇게 처리했으면 합니다.

○소위원장 김영진 정부안에 동의하시는 것이지요? 전체적으로 기한 2년 연장하는 정부안으로 동의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2시간 정도 넘게 해서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억원 1차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전문위원을 비롯한 국회 직원 및 보좌진 여러분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10시 반에 회의를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8분 산회)

○출석 위원(12인)

고 용 진	김 수 홍	김 영 진	김 주 영
류 성 결	박 형 수	배 준 영	용 혜 인
유 경 준	정 일 영	양 향 자	추 경 호

○청가 위원(1인)

박 홍 근

○출석 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정 명 호
---------	-------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기획재정부

제 1 차 관	이 억 원
세 제 실 장	김 태 주
조세총괄정책관	고 광 호
소득법인세정책관	정 정 훈
재산소비세정책관	박 금 철